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202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2022.1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2022. 11.



참고

- 본 자료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특히 물질의 고유번호(CAS No.)는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 내의 물질의 고유번호(CAS No.) 는 각 물질의 대표적인 고유번호이며, 그 외의 물질들이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강제적 효력을 갖지는 않으며, 해당 기업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검토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 검토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검토 후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한 사항은 해당 기업에서 법규 확인과 관할기관에 질의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된 매뉴얼이며, 해당 자료를 통해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고 예방에 기여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제도 개요	6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10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신고	42
	4. 부록	46
 I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1. 품목별 안전기준	 114
	2. 부록	201
 II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218
	2. 표시사항 작성 방법	220
	3. 표시사항 표시 위치	232
	4. 표시면적에 따른 표시사례	235
	5. 기타 표시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237

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제도 개요	6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10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신고	42
4. 부록	46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46
2. 신고 시 확인사항(주요 수정·보완 사항)	80
3. 제품의 효과·효능 신고	84
4. 수입요건확인번호 발급	94
5.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98
6.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100
7. 위해성평가 신청	105
8.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모바일 검증	109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제도 개요

1.1 법적 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제7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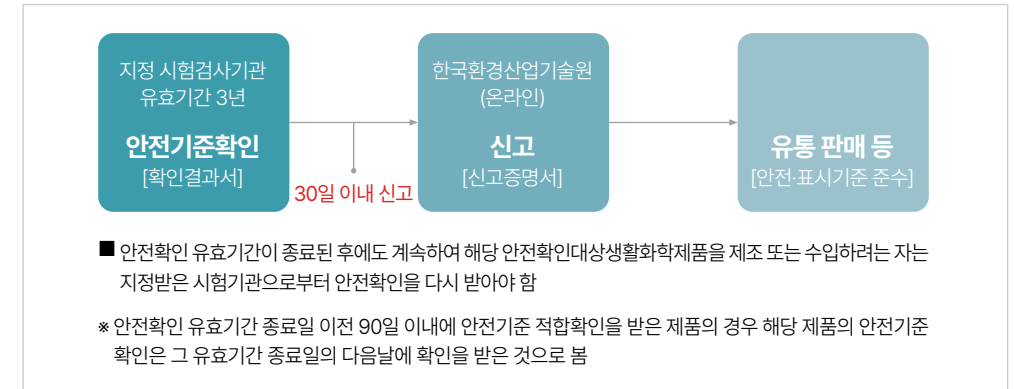
1.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 지정 품목 : 13분류 39품목(안전기준 미고시 7품목 포함)

분 류	품 목	비고	처리기관
세정제품	세정제 / 제거제	확인 및 신고	시험검사기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세탁제품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 방지제 / 윤활제 /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 문신용 염료	승인	국립환경과학원
살균제품	살균제 / 살조제		
구제제품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확인 및 신고	시험검사기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승인	국립환경과학원
기타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승인	국립환경과학원

* 인체에 직접 착용하거나 부착 또는 삽입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품목 용도 제외

1.3 대표제품과 파생제품 구분 방법



1.4 대표제품 및 파생제품

■ 대표제품은 안전확인 및 신고, 파생제품은 파생신고만 진행



파생제품 정의

정의(대표제품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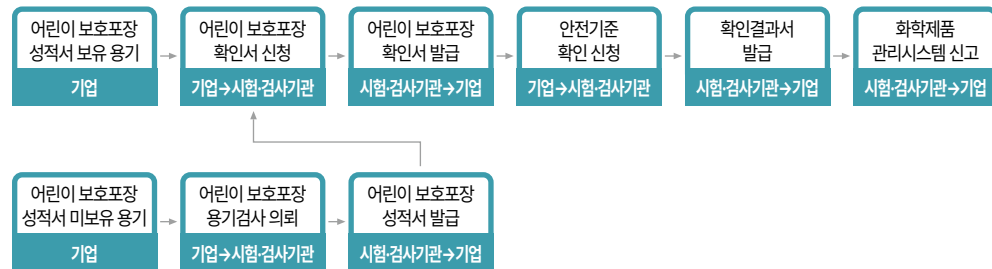
-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고시 제5조)에 변경이 없는 제품
-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음

주의

- 파생으로 신고된 제품은 대표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 부여됨
- 안전기준 등 위반 시 같은 신고번호가 부여된 제품은 모두 회수 등 행정조치
- 기업에서 파생제품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필요

1.5 어린이보호포장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및 신고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및 신고 절차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4]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제품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 방법
 - 어린이보호포장성적서 보유 용기 사용
 - : 시험·검사기관에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를 의뢰하여 발급 받은 후, 어린이보호포장용기가 적용된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서와 함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
 - 어린이보호포장성적서 미보유 용기 사용
 - : 시험·검사기관에 어린이보호포장 용기검사 의뢰, 어린이보호포장성적서 발급 후 시험·검사기관에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의뢰, 확인서 발급 후 어린이보호포장용기가 적용된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서와 함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됨
- 필수품목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 및 적용 제외기준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함

필수품목	적용물질기준		물질(총 함이 10% 이상, 동점도 20.5mm/s 이하)	적용 물질기준에 대한 적용 제외기준
액체형 자동차형 워셔액	물질	함량	물질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
액체형 자동차형 부동액	에틸렌글리콜	10% 이상	C3~C13 직쇄형 1차 알코올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물질)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순간접착제 (순간 접착력이 있는 미용접착제 포함)	메탄올	3% 이상	이소부틸 알코올 (isobutyl alcohol)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디클로로메탄	1% 이상	테르펜 알코올 (terpene alcohol)	개봉 후 내용물질 직접 노출되지 않은 용기
캡슐형 세탁제품	1,2-디클로로에탄	10% 이상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실제 중량 15kg 이상 제품
	살리실산메틸	5% 이상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 어려운 제품
	NaOH or KOH	2% 이상 (NaOH로세)	pH(액체제품)	
	메타크릴산	5% 이상	pH 2.0 이하, pH 11.5 이상 액체형 제품 (동점도 40°C에서 20.5mm²/s 이하인 경우)	
	개미산	5% 이상		
	차아염소산염	2% 이상		
	과산화수소	5% 이상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모든농도		
	모르폴린	5% 이상		
	아세토니트릴	500mg 이상		

1.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 표시광고 제한 문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 시 해당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아니 하도록 다음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표시금지문구

무독성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환경·자연 친화적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천연 ¹⁾ ,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추출 ²⁾ , 순수(Pure), 순(純) ³⁾
무해성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인체·동물 친화적	인체·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이와 유사한 표현	1) 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 제외 2) 자연에서 유래·추출한 물질명·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외 3) 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 * 법적 근거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
 -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 효과·효능 표시·광고

-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하여 표시·광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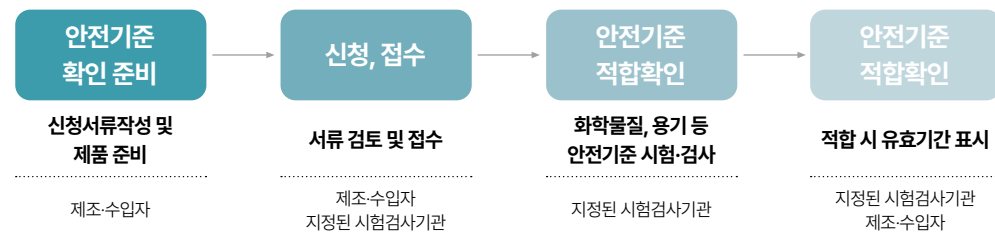
- * 근거 :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제1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대상품목 :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대상제품 :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는 전 제품
 - 신고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내 신고(변경신고) 절차를 통하여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 제출
 - 효과·효능 표시 예시 : 대장균(Escherichia coli ATCC 8739) 99.9% 살균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2.1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적합확인결과서를 신청·발급



* 안전기준 :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제출 제품 및 서류

필수 제출

- 동일한 완제품 4개(최소 용기까지는 완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약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해당 시 제출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신청서 및 어린이보호포장 성적서 각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KC 마크 사본
- 위탁계약서 또는 판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OEM, ODM일 경우)
- 신고증명서 사본(갱신의 경우)
- 기존 확인결과서 사본(갱신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청 제품의 범위

- ✓ 제조 공정이 마무리된 완제품. 이 경우 완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표시사항 생략 가능
- ✓ 소비자가 직접 제조하는 형태의 DIY용 제품. 원료제품의 둘 이상을 배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에 물질별 배합비율이 명시되어야 함.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만을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
- ✓ 재생용 잉크·토너의 경우에 국내 원료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납품하는 원료제품
- ✓ 안전기준 설정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이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유해성평가를 한 결과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음. 유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유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유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함

2.2 확인신청서 작성방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주요내용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방식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기타(제조방식 설명)
		• 신청인 정보작성 - 제조자 또는 수입자 정보 기입 ① 직접제조 방식: 제조자 정보 기입 ② OEM 방식: 위탁자 정보 기입 ③ ODM 방식: 제조자 정보 기입 • 수탁자 정보 기입 (직접제조는 작성 제외) - OEM 방식: 전체 항목 기입 - ODM 방식: 제조방식만 체크 • 제조·수입 - 국내제조일 경우 제조에 체크 * 원료기준이 아닌 제품제조기준 - 수입일 경우 수입에 체크 • 품목 - 고시에 나와 있는 35품목 중 해당 품목 • 제품명 - 해당제품에 부여하는 고유 명칭 • 제형, 용도 - 고시에 나와 있는 품목별 용도에서 선택 • 중량·용량·매수 - 용기를 제외한 내용물에 대한 중량 또는 용량 또는 매수 • 신고번호, 유효기간 - 신규일 경우 미작성 - 갱신일 경우 신고번호와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작성
신청 제품 정보	제조·수입	[] 제조 [] 수입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주의사항

- ✓ OEM 방식과 ODM 방식의 제품 제조시 신청주체가 달라지므로 주의
 - OEM 방식(주문자 상표부착 제조): 위탁자
 - ODM 방식(주문자 개발 제조): 제조자
- ✓ 품목, 제형, 용도는 고시에 나와있는 내용 선택

■ [참고] 품목

분 류	품 목	분 류	품 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	-

※ 품목별 적용범위는 매뉴얼 품목별 안전기준 참고

■ [참고] 제형

분 류	품 목	비고
분사형	분무기형	폼형 포함
	스프레이형	고압가스, 저압가스 등을 이용한 분사방식
	혼중형	
	연소형	
	연무형	
	필터형	
	보충형	원제품의 제형을 함께 기재
비분사형	기타	세부제형 표시
	액체형	
	에멀션형	페이스트형, 로션형, 젤형 포함
	폼형	
	고체형	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하멜트형	
	분말형	
	티슈형	
	캡슐형	
	카트리지형	
	펜형	
	붓형	
	팔찌형	
	패치형	
	함침물형	
	탱크형	
	보충형	원제품의 제형을 함께 기재
	기타	세부제형 표시

■ [참고] 품목별 용도

품 목	용 도		
세정제	일반용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배수관용, 건물바닥용, 구두용, 가구용, 악기용, 기타표면세정용 ¹⁾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²⁾	
	주 ¹⁾ 상세용도 기재 ²⁾ 자동차용 워셔액 제외		
제거제	일반용	얼룩제거용 ¹⁾ , 실리콘제거용, 점착제제거용, 가발점착제제거용, 타르·기름제거용, 혈흔제거용, 기타제거용 ²⁾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²⁾	
	주 ¹⁾ 섬유용 얼룩제거제는 세탁세제에 적용 ²⁾ 상세용도 기재		
세탁세제	섬유용, 가죽용, 홈드라이클리닝용, 신발용, 섬유 얼룩제거용		
표백제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섬유유연제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광택코팅제	일반용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금속용, 석재(시멘트)용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특수목적코팅제	일반용	발수용, 오염 방지용, 정전기방지용, 미끄럼방지용, 표면보호용, 김서림 방지용(유리용, 거울용, 렌즈용)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¹⁾	
	주 ¹⁾ 자동차용 워셔액(발수용)은 제외		
녹방지제	차량용 ¹⁾ ,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주 ¹⁾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 중 건설기계를 제외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말함		
윤활제*	차량용 ¹⁾ ,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주 ¹⁾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 중 건설기계를 제외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말함		
다림질보조제	의류용, 섬유용		
접착제	일반용, 순간·강력용		
	*용도별 사용대상: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섬유용, 금속용, 도자기용(세라믹, 타일), 석재용, 유리용, 종이용, 점토용, 석조물용(석고), 필름용		
접합제	틈새충진용, 이음매접합용, 홈집충진용		
방향제	일반용	실내공간용, 섬유용, 가죽용	
	자동차용	실내용	
탈취제	일반용	실내공간용, 물체용, 밀폐공간용 ¹⁾	
	자동차용	실내용	
	주 ¹⁾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물체염색제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가죽용		
물체도색제	일반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금속용, 유리용, 석재용(시멘트), 가죽용	제형 : 분사형(스프레이형)
	자동차용 ¹⁾	실내용, 외부용	
	주 ¹⁾ 자동차 부분 보수용에 한함		
자동차용 워셔액	일반용, 발수성용		제형 : 액체형
차량용 부동액	차량용(에틸렌글리콜형), 차량용(프로필렌글리콜형)		제형 : 액체형
인쇄용잉크·토너	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인주	사무용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문서수정용		
미용접착제	가발용, 체모용, 가속눈썹용, 쌍꺼풀용, 손톱·발톱용		
문신용염료	눈썹·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헤어라인용		
살균제	일반용	일반물체용 ¹⁾ , 배수관용, 곰팡이제거용, 밀폐공간용 ²⁾	
	특수목적용	어린이용품용 ³⁾ , 칫솔·혀크리너용	
	주 ¹⁾ 마스크용, 인체용 등을 제외한 일반물체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²⁾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살조제	³⁾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전용 제품에만 사용되는 소독제를 말함		
	어항용, 분수대용, 연못용, 수영장용		
기피제	쌀벌레용, 좀벌레용, 날벌레용 ¹⁾		
	주 ¹⁾ 깎따구용, 하루살이용 등 특정 날벌레 용도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음		
목재용 보존제	목재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초	공기청정기용, 에어컨용		제형 : 필터형
	발광용, 방향용		
습기제거제	실내공간용 ¹⁾ , 가구용, 수납공간용, 신발·섬유용		
	주 ¹⁾ 자동차용(실내용) 포함		
인공 눈 스프레이	행사용 ¹⁾		제형 : 분사형(스프레이형)
	주 ¹⁾ 특정 용도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음		
공연용 포그액	공연용(무대연출), 행사용		

■ 작성예시 : 국내제조(직접생산), 향초인 경우 → 신청인은 제조자 주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조은향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조향기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석고(02-123-1234)
(전자우편:1234@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02-123-1234)
(팩스번호:02-123-1235)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자우편:)
(팩스번호:)

제조방식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조·수입

[☒] 제조 [] 수입

품목
초

제품명
좋은향초(라벤더)

용도
방향용

제형
연소형

중량·용량·매수
100g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험·검사기관 귀하

■ 작성예시 : 국내제조(직접생산), 향초인 경우 → 신청인은 제조자 주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조은향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조향기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석고(02-123-1234)
(전자우편:1234@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02-123-1234)
(팩스번호:02-123-1235)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굿 향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987-65-43210

성명(대표자)
박향기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박석고
(전자우편:5678@naver.com)

소재지(사업장)
경기도 화성시 자안리 445

(전화번호:031-123-1234)
(팩스번호:031-123-1235)

제조방식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조·수입

[☒] 제조 [] 수입

품목
초

제품명
좋은향초(라벤더)

용도
방향용

제형
연소형

중량·용량·매수
100g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험·검사기관 귀하

■ 작성예시 : 국내제조(ODM 방식), 향초인 경우 → 신청인은 제조자 주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조은향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조향기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석고(02-123-1234)
(전자우편:1234@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02-123-1234)
(팩스번호:02-123-1235)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자우편:)
(팩스번호:)

제조방식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조·수입

[☒] 제조 [] 수입

품목
초

제품명
좋은향초(라벤더)

용도
방향용

제형
연소형

중량·용량·매수
100g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험·검사기관 귀하

■ 작성예시 : 수입, 향초인 경우 → 신청인은 수입자 주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조은향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조향기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석고(02-123-1234)
(전자우편:1234@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02-123-1234)
(팩스번호:02-123-1235)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자우편:)
(팩스번호:)

제조방식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조·수입

[] 제조 [☒] 수입

품목
초

제품명
좋은향초(라벤더)

용도
방향용

제형
연소형

중량·용량·매수
100g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미국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아메리카캔들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험·검사기관 귀하

2.3 제품정보서 작성방법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주요내용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제품 사진 < 앞 > < 뒤 >	•제품사진 - 제품의 앞면 및 뒷면 사진 *앞뒷면이 구분이 어려울시, 임의적으로 앞 뒷면을 정하여 사진 기입
제품 설명서 1. 제품의 특징 2. 사용 용도 - 주된 사용자 - 사용공간 또는 대상 - 부가기능 3. 사용방법 4. 주의사항(일반 or 사용시) 5. 기타사항	•제품의 특징 - 당제품의 특징을 작성 •제품의 특징 - 주사용자 : 해당제품을 사용할 대상 ex)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등 - 사용공간 또는 대상 : ex) 실내, 자동차 실내, 섬유 등등 - 부가기능 : 본래 기능외 부가적 기능 ex) 없음 •사용방법 - 소비자가 사용시 제품사용 방법 •주의사항(일반 또는 사용시) - 제품사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 •기타사항 - 위 사항외 제품 관련 정보가있을시 작성

주의사항

✓ 제품 설명서는 품목별, 제품특징별로 상이하므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가능한 위의 항목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고함. 또한 소비자정보 제공차원에서 알려야 하는 사항은 제품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함

✓ 사용용도 중 부가기능 작성 시

- 본 제품의 주 기능 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을 시 안전확인 추가 진행제

Ex.1) 주기능이 방향제, 부가기능에 탈취기능 표시 : 탈취제 추가 안전확인 진행

Ex.2) 주기능이 탈취제, 부가기능이 향균일 경우 : 살균제 추가 안전확인 진행

■ 작성예시 : 향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제품 사진	제품 설명서
	1. 제품의 특징 - 실내에 은은한 향 발산하면서, 아늑한 공간효과 2. 사용 용도 - 주된 사용자 : 성인 - 사용공간 또는 대상 : 실내용 - 부가기능 : 없음 3. 사용방법 - 심지에 불을 키고 사용 4. 주의사항(일반 or 사용시) -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화재우려가 있으니, 주변에 인화성물질 등이 없는 곳에서 사용 - 사용후 반드시 심지의 불을 끄시오 - 용기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시오 - 등 5. 기타사항 -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4 성분 및 배합비 작성방법

■ 안전기준 적합확인용 성분 및 배합비 주요 내용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① 구분	②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 배합비 (%)	④ 용도 (기능)	비고	• 최대함량 및 주요물질 - 최대함량물질 : 물(정제수)을 제외한 제품 내 최대함량물질 - 주요기능 : 주요기능발현 물질 ex) 향료일 경우, '향료' 기입 - 고유번호 : 해당 물질의 CAS No. 등 기입 - 배합비 : 제품 중 해당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정수로 표시하되, 주요기능 물질은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기입 가능 - 용도(기능) : 제품내 기능 표시
주요물질 (최대함량)						
주요물질 (주요기능)						
보존제						• 보존제(해당시) - 제품의 보존, 방부 등을 위해 사용된 물질 - 배합비 :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기입 가능 - 고유번호 및 용도는 최대함량 및 주요 물질 내용과 동일
함량제한 물질						• 함량제한물질(해당시) - 고시 [별표2]의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표3>과 <표4>에 명시된 물질 기입
어린이보호 포장적용기준물질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 물질(해당시) - 고시 [별표4]의 '어린이보호포장 관한 안전기준' 중 Ⅱ.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 관련 물질 기입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해당기업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의사항

- ✓ 보존제, 함량제한물질 및 어린이보호포장물질은 관련물질이 있을 경우 작성
- ✓ 향료 외 해당물질의 고유번호(CAS. No. 등)이 없을시 MSDS 등 자료제출로 대체 가능
- ✓ 주요기능물질과 보존제의 배합비는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작성 가능
- ✓ 어린이보호포장 관련 물질의 안전기준 이내 여부 반드시 확인
- ✓ 기 부적합받은 제품을 기존 시험기관이 아닌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시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제출

■ [참고] 품목별 용도

물질명	CAS. No.	분사형(mg/kg)	비분사형(mg/kg)
폼알데하이드	50-00-0	12 이하	25 이하
메탄올	67-56-1	2,000 이하	2,000 이하
글리옥살	107-22-2	30 이하	70 이하
3-요오드-2-프로핀일 부틸 카바민산(IPBC)	55406-53-6	8 이하	_ ¹⁾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17-81-7	1,600 이하	_ ¹⁾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60 이하	300 이하
4-메톡시벤질알코올*	105-13-5	100 이하	_ ¹⁾

주¹⁾ 함량 제한 없음 *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참고] 방향제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물질명	CAS. No.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프로필렌글리콜	57-55-6	_ ²⁾	47 이하	_ ²⁾	_ ²⁾
벤조산	65-85-0	3 이하	1 이하	_ ²⁾	_ ²⁾
2-프로판올	67-63-0	25 이하	12 이하	_ ²⁾	_ ²⁾
살리실산	69-72-7	88 이하	37 이하	_ ²⁾	_ ²⁾
벤질알코올	100-51-6	36 이하	17 이하	_ ²⁾	_ ²⁾
에틸렌글리콜	107-21-1	0.2 이하	0.2 이하	_ ²⁾	_ ²⁾
살리실산메틸	119-36-8	27 이하	13 이하	_ ²⁾	_ ²⁾
1,2-벤즈아이스티아졸-3(2H)-온(BIT)	2634-33-5	1.5 이하	0.7 이하	_ ²⁾	_ ²⁾
트리클로산	3380-34-5	26 이하	16 이하	_ ²⁾	_ ²⁾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7173-51-5	0.01 이하	0.005 이하	_ ²⁾	_ ²⁾
은	7440-22-4 etc	0.04 이하	0.02 이하	_ ²⁾	_ ²⁾
염화벤잘코늄류 ³⁾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0.06 이하	0.04 이하	_ ²⁾	_ ²⁾
피레트럼	8003-34-7	1 이하	0.7 이하	_ ²⁾	_ ²⁾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0.4 이하	0.12 이하	_ ²⁾	_ ²⁾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	57 이하	_ ²⁾	_ ²⁾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2 이하	1 이하	_ ²⁾	_ ²⁾
알파-피넨	80-56-8 7785-26-4 7785-70-8	7 이하	3 이하	39 이하	30 이하
다이페닐에테르	101-84-8	1 이하	0.6 이하	7 이하	6 이하
아세트산 비닐	108-05-4	5 이하	2 이하	26 이하	20 이하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 아세테이트	5413-60-5 2500-83-6 54830-99-8	6 이하	3 이하	35 이하	27 이하

주²⁾ 함량 제한 없음

³⁾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 [참고] 초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물질명	CAS. No.	발광용(mg/kg)	방향용(mg/kg)
납 ¹⁾	7439-92-1 etc	600 이하	600 이하
폼알데하이드	50-00-0	- ³⁾	12 이하
글리옥살	107-22-2	- ³⁾	30 이하
메탄올 ²⁾	67-56-1	- ³⁾	2,000 이하

주 ¹⁾ 십지 및 몸통의 총 함유량을 말함

²⁾ 액상 제품에 한함

³⁾ 함량 제한 없음

※ 그 외 품목의 함량제한물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참조

■ [참고] 어린이보호장 물질 적용 기준

- 제품 내 아래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물질	CAS. No.	함유 기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
에틸렌글리콜	107-21-1	10 % (w/w) 이상	-
메탄올	67-56-1	3 % (w/w) 이상	-
디클로로메탄	75-09-2	1 % (w/w) 이상	-
1,2-디클로로에탄	107-06-2	10 % (w/w) 이상	-
살리실산메틸	119-36-8	5 % (w/w) 이상	-
수산화나트륨 ¹⁾	1310-73-2	제품내NaOH로써, 2%(w/w)이상	-
수산화칼륨 ¹⁾	1310-58-3		-
메타크릴산	79-41-4	5 % (w/w) 이상	펜 마커와 같이 용기 내 흡수제로 쓰인 경우
개미산(포름산)	64-18-6	5 % (w/w) 이상	-
하이포(차아)염소산염	7681-52-9	2 % (w/w) 이상	-
	etc		-
과산화수소	7722-84-1	5 % (w/w) 이상	-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105-36-2	모든 농도	-
모르폴린	110-91-8	5 % (w/w) 이상	-
아세토니트릴 ²⁾	1975-05-8	500 mg 초과	-

주 ¹⁾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함유한 제품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염기 농도임

²⁾ 접착제 제거제에 함유된 경우에 한함

- 제품 내 함유된 다음 항목의 물질 총합이 10% 이상이고, 40 °C에서 동점도 20.5 mm²/s 이하인 경우

물질	CAS. No.	함유 기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1-propanol	10 % 이상 (w/w) 이상이고 40°C에서 동점도 20.5mm ² /s 이하	-
	1-butanol		-
	1-pentanol		-
	1-hexanol		-
	1-heptanol		-
	1-octanol		-
	1-nonanol		-
	1-decanol		-
	1-undecanol		-
	1-dodecanol		-
	1-tridecanol		-
이소부틸 알코올	78-83-1		-
테르펜 알코올	98-55-5		-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		-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		-
제품 내 최종 함유물이 pH 2.0 이하 또는 pH 11.5 이상의 액상제품이고, 40 °C에서 동점도 20.5 mm ² /s 이하인 경우			-

■ 작성예시 : 보존제 X, 함량제한물질 X, 어린이보호포장물질 X 인 경우

√ 품목 : 초(일반초), 성분 : 소이왁스(100%)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① 구분	②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 배합비 (%)	④ 용도 (기능)	비고
주요물질 (최대함량)	소이왁스	8016-70-4	100%	발광	
주요물질 (주요기능)	—	—	—	—	
보존제	—	—	—	—	
함량제한물질	—	—	—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물질	—	—	—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 작성예시 : 보존제 X, 함량제한물질 X, 어린이보호포장물질 X 인 경우

√ 품목 : 초(향초), 성분 : 소이왁스(90%), 향료(10%)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① 구분	②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 배합비 (%)	④ 용도 (기능)	비고
주요물질 (최대함량)	소이왁스	8016-70-4	90%	발향보조	
주요물질 (주요기능)	향료	-	10% (5%~15%)	향	
보존제	—	—	—	—	
함량제한물질	—	—	—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물질	—	—	—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 작성예시 : 보존제 X, 함량제한물질 X, 어린이보호포장물질 X 인 경우

√ 품목 : 방향제(석고방향제), 성분 : 석고(70%), 올리브리퀴드(5%), 정제수(20%), 향료(5%)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① 구분	②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 배합비 (%)	④ 용도 (기능)	비고
주요물질 (최대함량)	석고	10034-76-1	70%	발향보조	
주요물질 (주요기능)	향료	-	5% or (3%~8%)	향	
보존제	-	-	-	-	
함량제한물질	-	-	-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물질	-	-	-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 작성예시 : 보존제 X, 함량제한물질 X, 어린이보호포장물질 X 인 경우

√ 품목 : 방향제(디퓨저), 성분 : 디퓨저베이스(80%), 향료(20%)

※ 디퓨저베이스성분 : 에탄올(5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49%)

※ 제품 중 에탄올이 차지하는 함량 : 40.8% (51×0.8)

※ 제품 중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가 차지하는 함량 : 39.2% (49×0.8)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① 구분	②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 배합비 (%)	④ 용도 (기능)	비고
주요물질 (최대함량)	에탄올	64-17-5	40.8%	발향보조	
주요물질 (주요기능)	향료	-	20% (15%~25%)	향	
보존제	벤질벤조에이트	120-51-4	0.2%	보존제	살생물물질
함량제한물질	다이프로필렌글리콜 메틸에테르	34590-94-8	39.2 %	발향보조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물질	-	-	-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 작성예시 : 보존제 X, 함량제한물질 O, 어린이보호포장물질 O 인 경우

√ 품목 : 방향제(디퓨저), 제형 : 액체형, 성분 : 디퓨저베이스(80%), 향료(20%)

※ 디퓨저베이스성분 :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90%), C10~C13 Isoalkanes(6%), C10~C14 Isoalkanes(4%)

※ 향료 중 알파-피넨(0.1%) 함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① 구분	②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 배합비 (%)	④ 용도 (기능)	비고
주요물질 (최대함량)	다이프로필렌글리콜 메틸에테르	64-17-5	72%	발향보조	
주요물질 (주요기능)	향료	-	20% or (15%~25%)	향	
보존제	-	-	-	-	
함량제한물질	다이프로필렌글리콜 메틸에테르	34590-94-8	72 %	발향보조	최대물질과 동일
함량제한물질	알파-피넨	80-56-8	0.02 %	향	향료 성분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물질	C10~C13 Isoalkanes	68551-17-7	4.8 %	발향보조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물질	C10~C14 Isoalkanes	68551-18-7	3.2 %	발향보조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2.5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작성방법

■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주요내용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제출자	상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제출자 -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 품 정 보	품목		제품명		•품목, 제품명, 제형, 제조국(수입제품), 제조자(수입제품) -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원료물질 수, 원료납품자 수 - 원료물질 수: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수 - 원료납품자 수: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 수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사에 최대한 확인 후 작성 •함유금지물질 - 성분내역서, MSDS 등을 통해 함유금지 물질 확인 후 미함유시 해당 품목의 함유 금지물질 작성 •사용물질 - 성분내역서, MSDS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사용물질 확인 후 사용물질이 있는 경우 작성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 - 성분내역서, MSDS 등을 통해 어린이 보호포장 물질이 있는 경우 작성
	제조국명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자 (수입 제품의 경우)		
	원료물질 수		원료 납품자 수		
	함유금지물질(A)				
	사용물질(B)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C)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해당기업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의사항

√ 함유금지물질은 고시 [별표2]의 I. 공통기준 <표2>에 해당되는 물질, II. 품목별 안전기준<표2>에 명시된 물질 모두 기입

√ 사용물질은 고시 [별표2]의 II. 품목별 안전기준 <표4>에 해당되는 물질이 있는 경우 기입

√ 어린이보호포장 물질은 고시 [별표4]의 '어린이보호포장 관한 안전기준' 중 II.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에 해당되는 물질 기입

√ 해당물질리스트가 작성된 별지 사용 가능[예, 아니오 체크]

■ [참고] 함유금지물질(공통기준)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¹⁾	기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31961-54-3 57029-18-2 89697-78-9 etc	분사형	함유금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함유금지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etc	분사형	함유금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분사형	함유금지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함유금지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함유금지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함유금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함유금지

주¹⁾ 방향제는 모든 제형에 적용함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참고] 함유금지물질(방향제, 초)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방향제)	적용 제품(초)	검출허용한도 ¹⁾ (mg/kg)
벤젠	71-43-2	전 제형	방향용	5 이하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방향용	5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방향용	5 이하
붕소산 사나트륨염	1303-96-4 etc	전 제형	방향용	— ³⁾
1,4-디클로로벤젠	106-46-7	전 제형	방향용	— ³⁾

주³⁾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 한계 미만

※ 그 외 품목의 함유금지물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참조

■ [참고] 방향제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물질명	CAS. No.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프로필렌글리콜	57-55-6	— ¹⁾	47 이하	— ¹⁾	— ¹⁾
벤조산	65-85-0	3 이하	1 이하	— ¹⁾	— ¹⁾
2-프로판올	67-63-0	25 이하	12 이하	— ¹⁾	— ¹⁾
살리실산	69-72-7	88 이하	37 이하	— ¹⁾	— ¹⁾
벤질알코올	100-51-6	36 이하	17 이하	— ¹⁾	— ¹⁾
에틸렌글리콜	107-21-1	0.2 이하	0.2 이하	— ¹⁾	— ¹⁾
살리실산메틸	119-36-8	27 이하	13 이하	— ¹⁾	— ¹⁾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2634-33-5	1.5 이하	0.7 이하	— ¹⁾	— ¹⁾
트리클로산	3380-34-5	26 이하	16 이하	— ¹⁾	— ¹⁾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7173-51-5	0.01 이하	0.005 이하	— ¹⁾	— ¹⁾
은	14701-21-4 etc	0.04 이하	0.02 이하	— ¹⁾	— ¹⁾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1 이하	0.5 이하	— ¹⁾	— ¹⁾
피레트럼	8003-34-7	1 이하	0.7 이하	— ¹⁾	— ¹⁾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0.4 이하	0.12 이하	— ¹⁾	— ¹⁾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 ¹⁾	57 이하	— ¹⁾	— ¹⁾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2 이하	1 이하	— ¹⁾	— ¹⁾
알파-피넨	80-56-8 7785-70-8 7785-26-4	7 이하	3 이하	39 이하	30 이하
다이페닐에테르	101-84-8	1 이하	0.6 이하	7 이하	6 이하
아세트산 비닐	108-05-4	5 이하	2 이하	26 이하	20 이하
트라이사이클로세닐 아세테이트	5413-60-5 2500-83-6 54830-99-8	6 이하	3 이하	35 이하	27 이하

주¹⁾ 함량 제한 없음

²⁾ 염화벤잘코늄류(C12-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 그 외 품목의 함유금지물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참조

■ 작성예시 : 함유금지물질 X, 사용물질 X 인 경우

√ 품목 : 초(향초), 성분 : 소이왁스(90%), 향료(10%)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시행 2021.7.30>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약약서				
제출자	상호(명칭)	상폐한기분	사업자등록번호	333-33-33333
	성명(대표자)	조기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향기 (전자우편: 111@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 02-222-2222) (팩스번호: 02-333-3333)		
제품 정보	품목	초	제품명	날아갈듯 캔들
			제형	연소형
	제조국명 (수입제품의 경우)	—	제조자 (수입제품의 경우)	—
	원료물질 수	2	원료 납품자 수	2
	함유금지물질(A)	PHMG, PGH, PHMB, MIT, CMIT, 벤젠,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봉소산 사나트륨염, 1,4-디클로로벤젠		
	사용물질(B)	사용안함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C)	사용안함		
약약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별표 2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물질(A)’ 및 함량제한물질 중 ‘제 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용물질(B)’ 이외의 다른 물질,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중 기재한 물질(C)이 외의 다른 물질이 제품의 원료, 원료의 보존제, 제품의 제조 과정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함유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 니다. 만약,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예시 : 함유금지물질 X, 사용물질 O 인 경우

√ 품목 : 방향제(디퓨저), 성분 : 디퓨저베이스(80%), 향료(20%)

※ 디퓨저베이스성분 : 에탄올(5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49%)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시행 2021.7.30>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약약서				
제출자	상호(명칭)	상폐한기분	사업자등록번호	333-33-33333
	성명(대표자)	조기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향기 (전자우편: 111@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 02-222-2222) (팩스번호: 02-333-3333)		
제품 정보	품목	방향제	제품명	날아갈듯 디퓨저
			제형	액체형
	제조국명 (수입제품의 경우)	—	제조자 (수입제품의 경우)	—
	원료물질 수	2	원료 납품자 수	2
	함유금지물질(A)	PHMG, PGH, PHMB, MIT,CMIT, 벤젠,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봉소산 사나트륨염, 1,4-디클로로벤젠		
	사용물질(B)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C)	사용안함		
약약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별표 2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물질(A)’ 및 함량제한물질 중 ‘제 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용물질(B)’ 이외의 다른 물질,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중 기재한 물질(C)이 외의 다른 물질이 제품의 원료, 원료의 보존제, 제품의 제조 과정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함유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 니다. 만약,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예시 : 함량금지물질 X, 사용물질 X 인 경우([붙임] 서식 사용)

√ 품목 : 초(향초), 성분 : 소이왁스(90%), 향료(10%)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시행 2021.7.30>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약삭서

제출자	상호(명칭)	상쾌한기분	사업자등록번호	333-33-33333
	성명(대표자)	조기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항기 (전자우편: 111@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 02-222-2222) (팩스번호: 02-333-3333)		
제품 정보	품목	초	제품명	날아갈듯 캔들
			제형	연소형
	제조국명 (수입제품의 경우)	—	제조사 (수입제품의 경우)	—
	원료물질 수	2	원료 납품자 수	2
	함유금지물질(A)	불임자료 표시		
	사용물질(B)	불임자료 표시		
확약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별표 2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물질(A)’ 및 ‘함량제한물질’ 중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용물질(B)’ 이외의 다른 물질,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 중 ‘기재한 물질(C)’ 이외의 다른 물질이 제품의 원료, 원료의 보존제, 제품의 제조 과정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함유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물질 사용여부(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공통 함유금지물질(A)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분사형	☐ 예 ☒ 아니요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분사형	☐ 예 ☒ 아니요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콜로라이드(PHMB)	분사형	☐ 예 ☒ 아니요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분사형	☐ 예 ☒ 아니요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분사형	☐ 예 ☒ 아니요
6	염화벤잘코늄*	분사형	☐ 예 ☒ 아니요
7	아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분사형	☐ 예 ☒ 아니요
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전 제형	☐ 예 ☒ 아니요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초 함유금지물질(A)			
1	벤젠	방향용	☐ 예 ☒ 아니요
2	염화비닐	방향용	☐ 예 ☒ 아니요
3	트리클로로에틸렌	방향용	☐ 예 ☒ 아니요
4	붕소산 사나트륨염	방향용	☐ 예 ☒ 아니요
5	1,4-디클로로벤젠	방향용	☐ 예 ☒ 아니요
◆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C)			
1	에틸렌글리콜		☐ 예 ☒ 아니요
2	메탄올		☐ 예 ☒ 아니요
3	디클로로메탄		☐ 예 ☒ 아니요
4	1,2-디클로로에탄		☐ 예 ☒ 아니요
5	살리실산메틸		☐ 예 ☒ 아니요
6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 예 ☒ 아니요
7	메타크릴산		☐ 예 ☒ 아니요
8	개미산(포름산)		☐ 예 ☒ 아니요
9	하이포(차아)염소산염		☐ 예 ☒ 아니요
10	과산화수소		☐ 예 ☒ 아니요
11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 예 ☒ 아니요
12	모르폴린		☐ 예 ☒ 아니요
13	아세토니트릴		☐ 예 ☒ 아니요
14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1-propanol 1-butanol 1-pentanol 1-hexanol 1-heptanol 1-octanol 1-nonanol 1-decanol 1-undecanol 1-dodecanol 1-tridecanol	☐ 예 ☒ 아니요
15	이소부틸 알코올 (isobutyl alcohol)		☐ 예 ☒ 아니요
16	테르펜 알코올 (terpene alcohol)		☐ 예 ☒ 아니요
17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 예 ☒ 아니요
18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 예 ☒ 아니요
19	pH (액상제품)	2.0 초과 11.5 미만 (2.0 < pH < 11.5)	☒ 해당 ☐ 비해당(어린이보호포장 대상) ☐ 모름(시험필요)
	동점도 (액상제품) (pH “비해당”에 체크 시에만 작성)	40 °C에서 동점도 20.5 mm2/s 이하	☐ 예 (어린이보호포장대상) ☒ 아니요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당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물질 확인 시 위 CAS No.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원료 내 위 물질들이 혼합물로 존재 할 경우, 물질명과 CAS No.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예시 : 함유금지물질 X, 사용물질 O 인 경우([붙임] 서식 사용)

✓ 품목 : 방향제(디퓨저), 성분 : 디퓨저베이스(80%), 향료(20%)

※ 디퓨저베이스성분 : 에탄올(5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49%)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약삭서

제출자	상호(명칭)	상패한기분	사업자등록번호	333-33-33333
	성명(대표자)	조기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항기 (전자우편: 111@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 02-222-2222) (팩스번호: 02-333-3333)		
제품 정보	품목	방향제	제품명	날아갈듯 디퓨저
			제형	액체형
	제조국명 (수입제품의 경우)	-	제조자 (수입제품의 경우)	-
	원료물질 수	2	원료 납품자 수	2
	함유금지물질(A)	불임자료 표시		
	사용물질(B)	불임자료 표시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C)	불임자료 표시		
약삭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물질(A)과 사용물질 함량기준 에 따라 사용한 물질(B) 이외의 다른 물질이 제품의 원료, 원료의 보존제, 제품의 제조 과정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함유되거나 사용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물질 사용여부(방향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공통 함유금지물질(A)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전 제형	☐ 예 ☒ 아니요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전 제형	☐ 예 ☒ 아니요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전 제형	☐ 예 ☒ 아니요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전 제형	☐ 예 ☒ 아니요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전 제형	☐ 예 ☒ 아니요
6	염화벤잘코늄류 ¹⁾	분사형	☐ 예 ☒ 아니요
7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분사형	☐ 예 ☒ 아니요
8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전 제형	☐ 예 ☒ 아니요
주 ¹⁾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방향제 함유금지물질(A)			
1	벤젠	전 제형	☐ 예 ☒ 아니요
2	염화비닐	전 제형	☐ 예 ☒ 아니요
3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 예 ☒ 아니요
4	붕소산 사나트륨염	전 제형	☐ 예 ☒ 아니요
5	1,4-디클로로벤젠	전 제형	☐ 예 ☒ 아니요
◆ 방향제 사용물질 함량기준에 따라 사용한 물질(B)			
1	프로필렌글리콜		☐ 예 ☒ 아니요
2	벤조산		☐ 예 ☒ 아니요
3	이소프로필알코올		☐ 예 ☒ 아니요
4	살리실산		☐ 예 ☒ 아니요
5	벤질알코올		☐ 예 ☒ 아니요
6	에틸렌글리콜		☐ 예 ☒ 아니요
7	살리실산메틸		☐ 예 ☒ 아니요
8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		☐ 예 ☒ 아니요
9	트리클로산		☐ 예 ☒ 아니요
10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 예 ☒ 아니요
11	은		☐ 예 ☒ 아니요
12	염화벤잘코늄류 ²⁾		☐ 예 ☒ 아니요
13	피레트럼		☐ 예 ☒ 아니요
14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 예 ☒ 아니요
15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 예 ☐ 아니요
16	트리에탄올아민		☐ 예 ☒ 아니요
17	알파-피넨		☐ 예 ☒ 아니요
18	다이페닐 에테르		☐ 예 ☒ 아니요
19	아세트산 비닐		☐ 예 ☒ 아니요
20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 아세테이트		☐ 예 ☒ 아니요
주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C)			
1	에틸렌글리콜		☐ 예 ☒ 아니요
2	메탄올		☐ 예 ☒ 아니요
3	디클로로메탄		☐ 예 ☒ 아니요
4	1,2-디클로로에탄		☐ 예 ☒ 아니요
5	살리실산메틸		☐ 예 ☒ 아니요
6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 예 ☒ 아니요
7	메타크릴산		☐ 예 ☒ 아니요

8	개미산(포름산)	☐ 예 ☒ 아니요											
9	하이포(차아)염소산염	☐ 예 ☒ 아니요											
10	과산화수소	☐ 예 ☒ 아니요											
11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 예 ☒ 아니요											
12	모르폴린	☐ 예 ☒ 아니요											
13	아세트니트릴	☐ 예 ☒ 아니요											
14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table border="1"> <tr><td>1-propanol</td></tr> <tr><td>1-butanol</td></tr> <tr><td>1-pentanol</td></tr> <tr><td>1-hexanol</td></tr> <tr><td>1-heptanol</td></tr> <tr><td>1-octanol</td></tr> <tr><td>1-nonanol</td></tr> <tr><td>1-decanol</td></tr> <tr><td>1-undecanol</td></tr> <tr><td>1-dodecanol</td></tr> <tr><td>1-tridecanol</td></tr> </table> ☐ 예 ☒ 아니요	1-propanol	1-butanol	1-pentanol	1-hexanol	1-heptanol	1-octanol	1-nonanol	1-decanol	1-undecanol	1-dodecanol	1-tridecanol
1-propanol													
1-butanol													
1-pentanol													
1-hexanol													
1-heptanol													
1-octanol													
1-nonanol													
1-decanol													
1-undecanol													
1-dodecanol													
1-tridecanol													
15	이소부틸 알코올 (isobutyl alcohol)	☐ 예 ☒ 아니요											
16	테르펜 알코올 (terpene alcohol)	☐ 예 ☒ 아니요											
17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 예 ☒ 아니요											
18	C3~C13의 탄소를 구성된 탄화수소	☐ 예 ☒ 아니요											
19	pH (액상제품)	<table border="1"> <tr> <td>pH 2.0이하</td> <td>☐ 해당 ☒ 비해당(어린이보호포장 대상) ☐ 모름(시험필요)</td> </tr> <tr> <td>pH 11.5이상</td> <td>☐ 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 아니요</td> </tr> </table>	pH 2.0이하	☐ 해당 ☒ 비해당(어린이보호포장 대상) ☐ 모름(시험필요)	pH 11.5이상	☐ 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 아니요							
pH 2.0이하	☐ 해당 ☒ 비해당(어린이보호포장 대상) ☐ 모름(시험필요)												
pH 11.5이상	☐ 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 아니요												
	동점도 (액상제품)	40 °C에서 동점도 ☐ 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pH “예” 에 체크 시에만 작성)	20.5 mm ² /s 이하 ☒ 아니요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당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물질 확인 시 위 CAS No.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원료 내 위 물질들이 혼합물로 존재 할 경우, 물질명과 CAS No.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 표 자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6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 정보 작성 -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성명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 (사업장)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제품 정보	구분	[] 제조 [] 수입	품목	• 구분(제조,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 포장유형 및 방식(재봉합 가능 유무) - 어린이보호포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포장유형 및 방식(재봉합 가능 유무)			
어린이 보호 포장 안전 기준 확인 정보	제조 업체명		모델명	• 제조업체명, 모델명, 주소, 포장유형 및 방식 - 어린이보호포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 안전기준준수여부 확인 증명 - 어린이보호포장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형을 선택 후 기재된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 예비시험/본시험 선택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21-12호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사항 선택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포장유형 및 방식(재봉합 가능 유무)			
	안전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증명 (택1)	☐ 성적서(인증서) ☐ 시험결과보고서 ☐ 기타 _____	발행번호 발행일자	
		발행기관	검사기준	
	☐ 예비시험 ☐ 본시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70호를 따른 경우에 한함)			

어린이보호포장의 분류(참고)

✓ 어린이보호포장 유형 및 방식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내 부속서 4 에서 어린이보호포장 유형 및 방식을 규정
- 어린이보호포장 예시



■ 작성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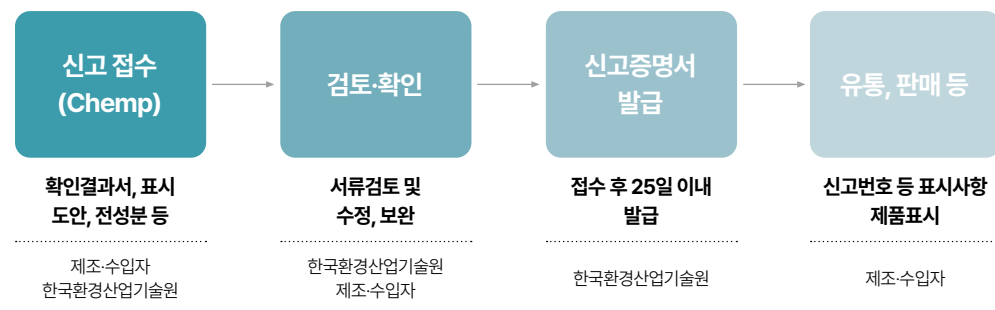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 겸용)				
제출자	상호(명칭)	상해한기분	사업자등록번호	333-33-33333
	성명 (대표자)	조기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항기 (전자우편: 111@naver.com)
	소재지 (사업장)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 02-222-2222) (팩스번호: 02-333-333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제품 정보	구분	[] 제조 [] 수입	품목	방향제
	제품명	날아갈듯 디퓨저		액체형
	제형	액체형		중량 용량 매수
	포장유형 및 방식(재봉합 가능 유무) 재밀폐가능 포장, 연속 나선형 밀폐장치: 임의 하향 회전식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확인 정보	제조업체명	튼튼유키	모델명	튼튼캡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팩스번호: 043-000-0000)			
	포장유형 및 방식(재봉합 가능 유무) 재밀폐가능 포장, 연속 나선형 밀폐장치: 임의 하향 회전식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증명 (택1)	[☒] 성적서(인증서) [] 시험결과보고서 [] 기타	발행번호 <i>해당시</i>	발행기관
			발행일자 2008.04.01	검사기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 예비시험 [] 본시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70호를 따른 경우에 한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험 · 검사기관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어린이보호포장의 제품설명서 1부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 성적서, 시험결과보고서 등) 1부			
신청확인 번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험 · 검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신고

3.1 신고절차

■ 안전기준 적합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기준적합확인결과 신고



※ 신고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30일(working day 기준)이내 신고

제출 제품 및 서류

주요 신고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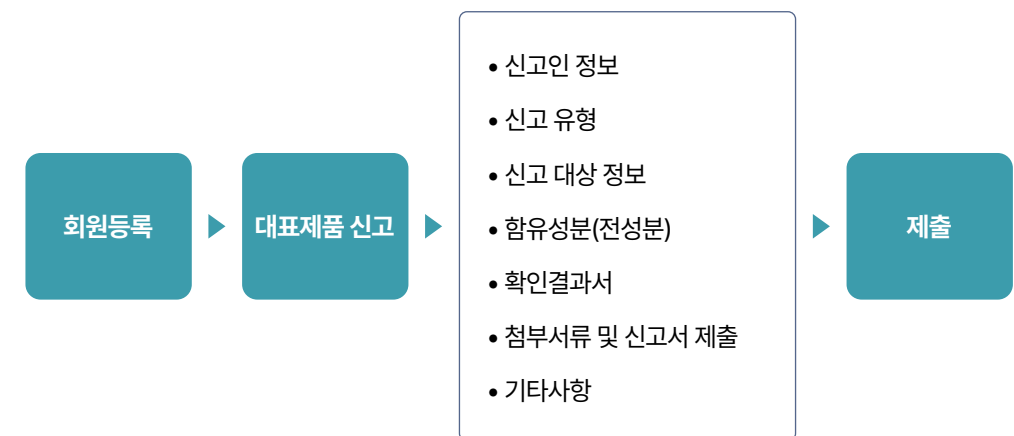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혼합물 등 CAS No. 없는 물질의 MSDS
- 안전기준 적합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제품 사진(앞면 및 표시사항이 있는 뒷면) 및 표시도안

해당 시 제출

- ODM 납품 증명서류
- 용기검사 성적서
- 용기재질 동일여부 확인서
- 제품의 효과·효능확인서, 입증자료 및 입증자료 자가점검표

3.2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내용

■ 안전기준 적합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www.chemp.me.go.kr)



구분	신고 내용
회원등록	기업등록, 일반회원 등록
신고인 정보	사업자등록증 기반
신고유형	제조와 수입구분, 제조는 직접제조, OEM, ODM, 기타 중 선택
신고대상정보	제품명, 분류·품목, 제형, 유통기한, 어는점, 액성, 중량 등, 표준사용량,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사용방법, 사용상주의사항, 응급처치
함유성분	혼합물질, 단일물질 등 전성분 입력 (CAS.No., MSDS, 배합비, 용도, 표시사항물질)
확인결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내용 입력
첨부서류 및 신고서	제품사진(표시도안 부착), 표시견본,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성분 및 배합비, ODM 납부 증명서류,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 결과(필요시), 용기재질 동일여부 확인서(필요시),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필요시)

3.3 파생제품 구분 방법

■ 파생제품 구분 절차



파생제품 정의

대표제품과 비교

-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고
- 제품명이 다르면서
-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

- 용도, 제형 및 제품명 확인
- 대표제품의 용도와 제형이 동일여부 및 제품명 확인

※ 예시

구분	대표제품	파생제품
용도	실내공간용, 자동차용(실내용)	동일여부 확인
제형	액체형	동일여부 확인
제품명	라벤더 디퓨저	다른지 여부 확인

- 안전기준 변경 확인(CAS. No.로 확인)
- 해당품목의 안전기준 물질, 대표제품 성분 및 파생제품 성분 정리 및 확인

파생제품 정의

- ✓ 보존용물질 및 보존제, 함량제한물질 등 물질 변경을 의미(→ 추가적인 안전확인 및 신고필요)
- ✓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의 함량이 안전기준 이내로 변경될 경우, 파생으로 신고 가능

■ 파생제품 예시

• 세정제

구분	대표제품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명	스타 세정제 골드	스타 세정제 실버	스타 세정제 나노	스타 세정제 파워
용도	일반용(오븐용)	일반용(오븐용)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오븐용)
제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제품내 사용물질	프로필렌글리콜 5%	프로필렌글리콜 10%	프로필렌글리콜 5%	메탄올
파생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불가능

• 방향제(디퓨저)

구분	대표제품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명	조은 디퓨저(라벤더)	조은 디퓨저(레몬)	조은 디퓨저(사과)	조은 디퓨저(포도)
용도	일반용(실내공간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제형	액체형	액체형	액체형	액체형
제품내 사용물질	프로필렌글리콜 5%	프로필렌글리콜 10%	프로필렌글리콜 5%	2-프로판올
파생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불가능

• 초

구분	대표제품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명	조은 캔들(라벤더)	조은 캔들(레몬)	조은 캔들(사과)	조은 캔들(포도)
용도	방향용	방향용	발광용	방향용
제형	연소형	연소형	연소형	연소형
제품내 사용물질	소이왁스 60%	소이왁스 70%	파라핀왁스 60%	파라핀왁스 70%
파생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가능

• 탈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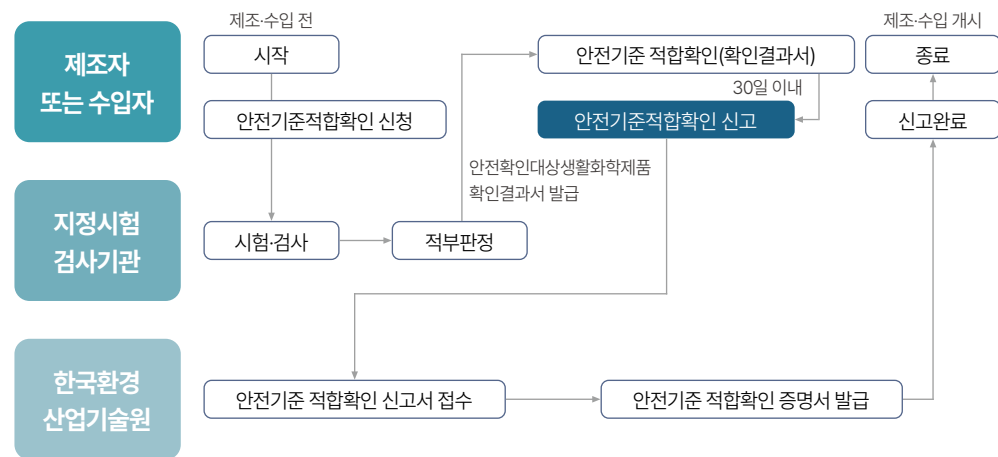
구분	대표제품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명	좋은 탈취제 골드	좋은 탈취제 브론즈	좋은 탈취제 실버	좋은 탈취제 에스
용도	일반용(실내공간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제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제품내 사용물질	프로필렌글리콜 5%	프로필렌글리콜 10%	프로필렌글리콜 5%	벤조산
파생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불가능

4. 부록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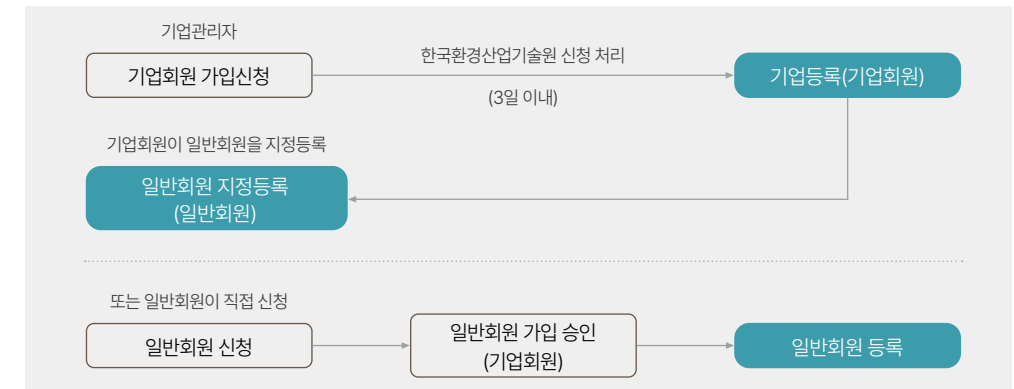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번호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제품시험분석실	02-2284-1660
2	FITI시험연구원	생활환경사업팀	043-711-8865, 8863
3	KOTITI시험연구원	생활화학제품 담당자	02-3451-7358, 7343, 7388
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화학분석센터	031-428-3818, 3848, 3857
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생활제품인증팀	02-2164-1412
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화학제품센터	02-2102-2681, 2664, 2504
7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바이오융합본부	031-538-9422, 9423, 9424

1.2 회원등록



-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에서 “기업등록”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기업의 대표성을 증명하는 기업회원은 기업관리자 본인의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단, 1인 기업인 경우 지역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의료보험 자격확인서, 대표이사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일반회원은 기업회원이 기업 내 실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일괄 등록하거나, 기업 내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일반회원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기업회원으로 등록된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회원 가입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원이 일반회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알림마당”에 “일반사용자 관리”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로그인	기업회원등록	기업 내 일반회원 등록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① 알림마당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제품신고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규제품 승인신청 변경승인/변경신고	기존살생물물질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물질등질 인정신청 적주동물 시험자료 부동의 확인 신청 선임해임신청		권라·의무 승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출입 업무 수입 요건확인번호 신청 수입요건 면제신청 자유판매증명	공지사항 미보완 제품공구 FAQ 자료실 시스템소개 수수료안내 법령정보 ② 일반사용자관리
	살생물제품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제품승인 특례신청 적주동물 시험자료 부동의 확인 신청			
	산업계지원 데이터캡분석 유해성시험자료 교육·실무가이드 지원사업			

- 일반회원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에서 “기업 내 일반회원 등록” 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1.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대표제품 신고

					로그인	기업회원등록	기업 내 일반회원 등록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①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알림마당
②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제품신고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규제품 승인신청 변경승인/변경신고	기존살생물물질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물질등질 인정신청 적주동물 시험자료 부동의 확인 신청 선임해임신청 살생물제품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제품승인 특례신청 적주동물 시험자료 부동의 확인 신청 산업계지원 데이터캡분석 유해성시험자료 교육·실무가이드 지원사업		권라·의무 승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출입 업무 수입 요건확인번호 신청 수입요건 면제신청 자유판매증명	공지사항 미보완 제품공구 FAQ 자료실 시스템소개 수수료안내 법령정보 일반사용자관리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를 위해서는 각 기업에 등록되어 업무를 부여받은 담당자(일반회원)로 로그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후, 메뉴에서 생활화학제품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 제품 신고 → 신고서 작성으로 접근합니다.

(1)신고인 정보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신청(대표제품)

HOME > 생활화학제품E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E > 제품 신고

•접수번호(접수일):

•신고번호(완료일):

•상태: 반려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파일제출신고

재신청하기

반려 사유 조회

목록

* 생활화학제품 신고시 관련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환경부고시 제2021-15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신고 요건 미흡으로 보완요청한 건에 대하여 기한 내 보완·제출 하지 않을 시 아래 절차에 따라 반려 처리됨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고시 다운로드

상세절차

신고인 정보

상호(명칭)	조은향기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조 향 기
담당자 성명	조 석 고	담당자 연락처	02-123-1234
담당자 이메일	1234@naver.com		
소재지(사업장) 주소	(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소재지 전화번호	02-123-1234	소재지 팩스번호	02-123-1235

■ 신고인 정보는 회원가입 시 기입했던 정보를 그대로 불러오며, 해당 정보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기업회원 정보 변경 절차를 통해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사업자등록증 기반으로 정보 입력합니다.

48

부록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49

(2) 신고 유형

신고 유형

확인결과서 불러오기

제조/수입

추가

☒ 제조
 ☐ 수입

☒ 직접생산
 ☐ OEM
 ☐ ODM
 ☐ 기타

제조방식

■ 신고 유형은 제조와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 (제조) 직접생산, OEM(주문자 상표부착 제조), ODM(주문자 개발 제조), 기타 중 해당 제조방식을 선택합니다(단, OEM, ODM은 추가 정보 입력 필요).
 - OEM(주문자 상표부착 제조) → 수탁자 정보 입력
 - ODM(제조사 개발 제조) → 위탁자(판매자) 정보 입력 → 첨부서류 중 ODM납품 증명서류 업로드
 - 기타 → 제조방식에 대한 설명 입력 → 첨부서류 중 입력사항 증빙 서류 업로드

신고 유형

확인결과서 불러오기

제조/수입

추가

☐ 제조
 ☒ 수입

제조국(수입인 경우)

작성방법

제조회사(수입인 경우)

- (수입) 해당 수입 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와 제조회사명을 입력합니다.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② 제품 표시도안에 기재된 제조회사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제조/수입 옆 추가 버튼을 누르면 제조방식에 대해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확인결과서 불러오기

•시험검사기관

=전체=

•제조수입

=전체=

•제품명

Q 조회

실제 확인결과서 내용과 상의한 경우 직접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총계시물 2건 (1/1)

발행번호	제품명	분류	품목	용도	세부용도	제형	상세제형	유효기간 시작일	유효기간 종료일	갱신	신고
HT21-00000	린넨 샤워(데이 클린코트)	방향탈취	방향제	자동차용	실내용	비분사형	액체형			저장	신고
HT21-00000	조은 디퓨저(라벤더)	방향탈취	방향제	일반용	실내용	비분사형	액체형			저장	신고

■ 신고 유형 옆 확인결과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된 확인결과서를 검색조건에 맞게 찾아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신고하고자 하는 확인결과서의 정보를 성적서 원본과 비교하여 확인하고 정보가 다른 부분은 수정·저장 후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 실제 성적서 정보와 상이한 부분은 직접 수정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유효기간은 직접 입력하여 저장하여야 합니다.

분류·품목·용도·세부용도

작성방법

*추가 버튼 클릭시 대표품목 선택 가능합니다.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일반용

실내용

추가 (필수)

대표품목

방향·탈취제품·방향제·일반용(실내용)

삭제

제형

작성방법

비분사형

액체형

추가 (필수)

방향·탈취제품·방향제·자동차용(실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정보

발행번호	시험·검사기관 이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HT21-0000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21-08-10 ~ 2024-08-0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pdf)	업로드	삭제

- 신청서를 적용하면 선택한 발행번호에 해당하는 분류, 품목과 확인결과서 정보가 자동 적용됩니다.

(3) 신고 대상 정보

대표/파생/변경 구분	대표제품		
제품명 작성방법	제품명 중복 확인		
분류·품목·용도·세부용도 작성방법	※추가 버튼 클릭시 대표품목 선택 가능합니다. 분류 선택 품목 선택 용도 선택 세부 용도 선택 추가(필수)		
제형 작성방법	구분 선택 분류 선택 추가(필수)		
제조 연월 작성방법	☒ 별도표기 선택 년 선택 월	유통기한 작성방법	☐ 해당없음 제조일로 부터 ☒ 개월 ☐ 년
어는점 (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 작성방법	선택	액성 (세정제품, 세탁제품) 작성방법	액성 선택
중량/용량/매수/크기 작성방법	선택		
표준사용량 작성방법	☒ 해당없음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작성방법	☐ 해당 ☒ 미해당		
사용방법 작성방법	☒ 해당없음 		
사용상 주의사항 작성방법			
주의 사항문구(필수)			
응급처치 작성방법			
응급처치 문구(필수)			

■ 제품명

- 신고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품명을 기입합니다.
- 제품명은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② 제품 표시도안의 제품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분류·품목

- 분류 선택 드롭다운박스를 활용하여 좌측에서부터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통해 품목을 추가합니다. 하나의 제품에 두 개 이상의 품목이 있을 경우, 다시 드롭다운박스 선택 및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대표품목 선택 시, 선택한 대표품목에 따라 신고번호가 변경되며, 파생제품 신청 시 동일한 품목을 대표 제품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제형

- 신고하고자 하는 제품 제형의 구분과 분류를 드롭다운박스를 통해 선택한 후, 세부 제형을 텍스트 박스에 기입해야 합니다. (예) 분사형-분무기형(폼형), 분사형-보충형(액체형), 비분사형-고체형(스틱형)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상에 여러 제형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제형을 '세부제형 입력' 란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참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I. 공통기준 → <표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 구분

■ 유통기한

- 신고하고자 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텍스트박스에 기입합니다.(단, 해당 없다면 해당없음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어는 점(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 어는 점을 텍스트박스에 기입한 후, 그 단위(예) °C, K, °F)를 드롭다운박스를 통해 선택합니다.

■ 액성(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 액성은 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소이온농도(pH)에 따른 액성을“원액(액성)”등의 방법으로 텍스트박스에 기입합니다(액성: 알칼리성, 약알칼리성, 중성, 약산성, 산성).
- ※ 참고 :「고시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II.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 9. 액성

■ 중량/용량/매수

- 제품의 중량/용량/매수를 텍스트박스에 기입한 후, 그 단위(예. g, mg, kg, L, ml, 개입, 매수)를 드롭 다운박스에서 선택합니다.
- ※ 참고 : 제품 내 성분 및 배합비가 동일한 제품에 한하여 중량/용량/매수를 범위로 신고 가능 (예시 : 10~500ml)

■ 표준사용량

- 제품의 표준사용량을 텍스트박스에 기입해 주세요.
- 희석해서 사용하는 농축제품의 경우에는 희석비율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를 선택합니다(기본값 = “미해당”).
 ※ 참고 : 고시 [별표 6]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사용방법(생략 가능)

- 제품의 사용방법을 글자*로만 텍스트박스에 기입합니다.
*입력 가능 최대 길이: 영문 4,000자, 한글 1,000자

■ 사용상 주의사항

- 자유롭게 입력하되 반드시 하나 이상의 문구는 입력하고, 글자* 로만 텍스트박스에 기입합니다.
 - * 입력 가능 최대 길이: 영문 4,000자, 한글 1,000자
-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는 반드시 고시에 표기된 문구를 그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입력 가능 최대 길이: 영문 4,000자, 한글 1,000자
 - * 참고
 -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II.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표1>
 - 제품별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II.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표2>

■ 응급처치

- 자유롭게 입력하되 반드시 하나 이상의 문구는 입력하고, 글자* 로만 텍스트박스에 기입합니다.
 - * 입력 가능 최대 길이: 영문 4,000자, 한글 1,000자
 - 필수 응급처치 문구는 반드시 고시에 표기된 문구를 그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입력 가능 최대 길이: 영문 4,000자, 한글 1,000자
- ※ 참고
- 제품별 필수 응급처치 문구: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II.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표3>
 - 제품별 권장 응급처치 문구: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II.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표4>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작성방법

• 방향·탈취제·방향제·일반용(실내공간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정보

발행번호	시험·검사기관 이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HT21-0000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2021-08-10 ~ 2024-08-0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pdf)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정보(발행번호, 시험·검사기관 이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유효기간)를 입력하고 첨부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 확인결과서 불러오기를 한 경우에는 추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화학물질 확인결과

- 화학물질 확인결과를 신고 대상 정보 내 선택한 품목에 따른 항목이 제공됩니다. 검사한 화학물질명과 단위, 확인기준*, 확인결과를 기입할 수 있으며, 판정사항(적합, 부적합, 해당없음)은 드롭다운박스를 통해 선택합니다.
* 각 품목별 적용 제형(분사형, 비분사형 등)에 따른 확인기준 구분 필요
- 또 다른 물질을 입력하고자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 화학물질 입력행이 생성되고 그 행에 추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고시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내 II. 품목별 안전기준의 3. 함량제한물질 중 ①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의 물질은 삭제할 수 없으며, ②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은 사용자가 추가 버튼을 통해 추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참고: 고시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II. 품목별 안전기준

(5) 함유성분(전성분)

함유성분(전성분)

작성방법

수입업체 직접 입력 여부		☒ 신고자 직접입력 ☐ 원 제조사 입력 * 수입업체 제조사가 성분비 공개를 거부 할 경우 수입제조사 입력을 선택하여 수입 제조사에게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CAS No.	물질명	배합비(100%)	용도(가능)	표시사항대상물질 (해당물질만 선택)	추가	
☐ 혼합물질 ☒ 단일물질 50-00-0 검색	포름알린	20	보존제 ☒	☒ 주요물질 ☐ 나노물질 ☐ 살생물물질	삭제	
☐ 혼합물질 ☒ 단일물질 7732-18-5 검색	물	70	용매제 ☒	☒ 주요물질 ☐ 나노물질 ☐ 살생물물질	삭제	
☒ 혼합물질 ☐ 단일물질 25321-14-6 검색	포름알린	20	계면활성제 ☒ 비이온계 ☒	☐ 주요물질 ☐ 나노물질 ☐ 살생물물질	삭제	

MSDS 또는 함유물질 정보

MSDS 서류.pdf

업로드

삭제

상세 물질 입력			
CAS No.	물질명	배합비의 최대함량(%)	추가
71-43-2 검색	벤젠	50	삭제
99-08-1 검색	m-나이트로톨루엔	50	삭제

☑ 위에서 기재한 성분 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혼합물질, 단일물질

- 취급 화학물질의 혼합물질과 단일물질 여부를 선택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 확인결과서 불로오기를 한 경우에는 추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혼합물질
 - 혼합물질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그 혼합물질을 이루는 상세 물질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생성됩니다. 각 상세물질은 입력란 우측의 검색 버튼을 사용하여 함유성분 검색 팝업창을 통해 물질을 검색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질을 이루는 추가 상세물질을 입력하기 위해 추가/삭제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

CAS No. 

51235-04-2

검색

CAS No.	51235-04-2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물질명	3-Cyclohexyl-6-(dimethylamino)-1-methyl-1.3.5-triazine-2.4-(1H,3H)-dione; Hexazinone
제품 표시 화학물질명 (다수의 물질명 존재시 1개의 물질명 한글로 입력) 작성방법	헥사지논 입력

CAS No.	KE No.	물질명	법에서 정하는 물질명
51235-04-2	KE-09234	3-Cyclohexyl-6-(dimethylamino)-1-methyl-1.3.5-triazine-2.4-(1H,3H)-dione; Hexazinone	

닫기

■ CAS No. 및 물질명

- 입력란 우측의 검색 버튼을 사용하여 함유성분 검색 팝업창을 통해 물질을 검색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CAS No.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고유번호 옆 드롭박스를 눌러 직접입력을 선택하면 CAS No.를 텍스트박스에 기입할 수 있으며, CAS No.가 없는 물질의 경우, CAS No. 없음 체크박스를 이용하여 물질명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물질명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물질명을 참고하여 제품 표시 화학물질명의 텍스트박스에 한글로 기입한 후 입력 버튼을 통해 CAS No.와 물질명을 입력합니다(단, 다수의 물질명 존재 시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는 1개의 물질명으로 입력).삭제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가 없는 물질 또는 혼합물질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국내외에서 인정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제품의 안전보건자료(SDS), 제품 또는 물질 제조자가 제공한 물질 정보 등 물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물질정보 자체가 생성·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해당 물질명 및 제조자 정보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 배합비

- 제품을 구성하는 각 혼합물질과 단일물질의 배합비 합은 100%를 맞춰야 합니다.

■ 용도(기능)

- 제품을 구성하는 각 물질의 용도(기능)를 드롭다운박스에서 선택합니다. 목록 중 해당하는 용도(기능)가 없을 경우, 기타(직접입력)를 선택하여 텍스트박스에 그 용도(기능)를 입력해주시요.

※참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II.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 계면활성제 : 제품에 계면활성제로 사용된 모든 물질은 물질명(계열*)로 표시

* 계열 : 음이온계, 비이온계, 양쪽성 이온계, 양이온계, 기타 등

- 보존제

- ① 고시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1. 공통기준 →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② 각 품목별 분사형 제품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의 안전기준

■ 표시사항대상물질

- 제품을 구성하는 각 물질이 표시사항대상물질(주요물질, 나노물질, 살생물질)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해당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복수 선택 가능)

※ 참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II.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 추가/삭제

- 물질의 CAS No, 물질명, 배합비, 용도(기능), 표시사항 대상물질을 입력하고 또 다른 물질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물질 입력행이 생성되고 그 행에 추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잘못 입력한 경우,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행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확인

- 첨부서류 중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 ☒ 위에서 기재한 성분 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해외 제조사가 함유성분(전성분)을 입력해야 할 경우(단, 신고유형은 수입)

☞ 함유성분(전성분) 작성방법	
수입업체 직접 입력 여부	☐ 신고자 직접입력 ☒ 원 제조사 입력 수입업체 제조사가 성분비 공개를 거부 할 경우 수입제조사 입력을 선택하여 수입 제조사에게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원 제조사 요청 메일 주소	입력요청

• 원제조사 메일 요청

- 함유성분(전성분)을 입력할 원 제조사의 이메일을 입력한 후, 입력요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때 작성하던 내용은 임시저장됩니다.

• 원제조사의 메일 수신 및 인증

☆ Request of Entering the information of ingredient(s)

2020.10.14 (수) 09:11

보낸사람 VIP CHEMP<chemp@keiti.re.kr> [메시지](#) | [약속초대](#)
받는사람

○ (Korean) 안녕하세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와 관련하여 첨부한 URL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전체 성분(물질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해당 혼합물질에 대한 MSDS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nglish) Hello, Please click on the URL address attached to report the safety check compliance register and enter the total component (material name) used for the product. If this is a mixture, please attach the MSDS for the mixture.
Thank you

[Enter the information of ingredient\(s\)](#)

KEITI evaluates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 biocides and the associated risks so that they can be safely used in daily lives

<http://www.keiti.re.kr/site/eng/main.do>

- 원제조사는 위와 같은 메일을 수신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고, 'Receive the certificate number' 를 클릭합니다.

☆ CHEMP email authentication number

2020.10.14 (수) 09:14

보낸사람 VIP CHEMP<chemp@keiti.re.kr> [메시지](#) | [약속초대](#)
 받는사람 <jyyoo@solutis.co.kr>

보안 목적으로 메일 내용이 일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미지/링크 표시하기](#)

email authentication number : 6y27o3

Thank you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알림마당

Enter the information of ingredient(s) (entire constituent)

6y27o3

Confirm the certificate number

Information

Company name (Business name)	테스트 기업1
Product name	디퓨저에이

- 원제조사는 메일로 인증번호를 받게되고,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Confirm the certificate number를 클릭합니다.

Ingredients(s) (entire constituent)

CAS No.	Substance name(s)	Mixing ratio	Purpose (function)	Chemical substance subject to label	Add
O mixtures O substance search			==select== v	☐ Active substance(s) ☐ Nano-material ☐ Biocide(s)	Delete
O mixtures O substance search			==select== v	☐ Active substance(s) ☐ Nano-material ☐ Biocide(s)	Delete
O mixtures O substance search			==select== v	☐ Active substance(s) ☐ Nano-material ☐ Biocide(s)	Delete
O mixtures O substance search			==select== v	☐ Active substance(s) ☐ Nano-material ☐ Biocide(s)	Delete
O mixtures O substance search			==select== v	☐ Active substance(s) ☐ Nano-material ☐ Biocide(s)	Delete

Save

• 원제조사의 함유성분(전성분) 입력 및 확인

- 함유성분(전성분) 내용을 입력한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6) 첨부서류 및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서 제출

첨부서류	
표시도안 견본 (첨부분서류 포함) (pdf, hwp) 작성방법 표시도안 미리보기 양식 다운로드 업로드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견본사진 (표시도안 미리보기 참조) (파일사이즈 3MB 이하) (gif, jpg, jpeg, png, zip) 작성방법	전면사진 업로드 후면사진 업로드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pdf)	업로드
기타첨부 서류 (pdf) 추가	

■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견본사진

- 제품의 사진은 전면사진과 후면사진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전체 형태 이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품 전면사진은 제품명이 나오게, 후면사진에는 부착된 표시 견본의 글씨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제품의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용기가 구성품으로 있는 경우는 그 용기도 포함하여 1차 포장 제품과 2차 포장 제품의 사진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된 견본사진에는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제품 설명서, 보조 태그 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의 크기는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면의 면적 200 cm² 이상 : 8 포인트 이상
 - 표시면의 면적 200 cm² 미만 : 6 포인트 이상
- 첨부할 수 있는 제품사진 파일의 최대크기는 파일별로 각 3MB입니다
(파일 크기 제한은 제품사진에만 존재)

※ 참고

-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고시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I. 공통 표시방법

■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표시 도안 견본

1.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2. 표시면의 면적이 50cm²~100cm²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3. 표시면의 면적이 50cm² 미만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 표시도안 미리보기를 참고하여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제품에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이 사용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따른 신호어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질이 산도조절제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

* 그 함량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유독물질의 지정고시」또는 환경부 고시「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표시 도안 견본을 한글파일, 이미지 또는 PDF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고시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II.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 고시 [별표 6 부록 1] 그림기호 표시방법 예시
- 고시 [별표 6 부록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도안 예시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시험기관에 제출하였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을 PDF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기업 대표자의 서명 또는 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여러 파일을 첨부해야 할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다수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ODM 납품 증명서류

- 신고 유형이 제조이면서 ODM(주문자 개발 제조)인 경우는 ODM 납품 증빙서류를 PDF나 zip 압축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주문자별로 제품명, 납품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주문자별 제품명, 사진 등 제품정보 이외에 동일한 ODM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문자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납품 계약서 사본 등 포함)를 첨부합니다.

* 참고

- 고시 [별표 7]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제출 제품·서류의 작성범위 및 방법 → <표2> 신고 제출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 제품 겉면, 포장 형태별 표시면적 측정 방법

- 신고 제품의 용기 및 포장형태를 고려하여 유사한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방법을 참고하여 계산하여야 함
-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 결과를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업로드하여야 함

붙임 2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 결과(예시)

상호명	접수번호	제품명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번호	구분	중량 / 용량 등	용기 / 포장 형태	측정치수 (cm)	표시 면적 (cm ²)	표시도안 견본 적용 여부
1	'제품 용기' 인지 '포장상자' 인지 표기	신고 제품의 중량(용량)을 각각 기재	제품 용기 및 포장상자의 형태를 기재(P46~P48 참조)	원통형 구조 : 높이, 둘레 길이 측정표기 각형 구조 :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표기	최종 면적 표기	표시도안 견본 1안, 2안, 3안 중 부착할 표시도안 견본을 선택하여 표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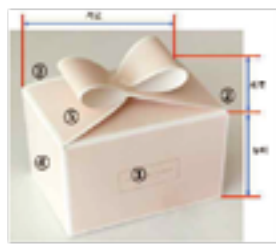
신고 제품에 대한 용기 및 포장상자에 대한 표시 면적 계산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상 호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표시면적 계산 방법

번호	포장형태	표시면적 계산	비고
①	원통형 제품용기의 표시면적 (cm ²)	= 높이 X 둘레길이 • (높이) 바닥면부터 용기 마개를 끼우기 위해 굴곡이 지는 부분 전까지 • (둘레길이) 줄자를 이용하여 용기의 둘레를 측정	
②	납작한 원통형 용기의 표시면적 (cm ²)	= 높이 X 둘레길이 • (높이) 바닥면부터 용기 마개를 끼우기 위해 굴곡이 지는 부분 전까지(cm) • (둘레길이) 줄자를 이용하여 용기의 둘레를 측정(cm)	

번호	포장형태	표시면적 계산	비고
③	납작한 유선형 용기의 표시면적 (cm ²)	$= (\text{가로} \times \text{세로}) \times 2$ ※ 용기 안쪽에 직사각형을 그려 가로(cm)와 세로(cm)를 측정하되, 앞면과 뒷면의 표시면적을 합산하여야 함	
④	손잡이형 용기의 표시면적 (cm ²)	$= \text{높이} \times \text{둘레길이}$ (높이) 라벨부착 표시선의 높이(cm) (둘레길이) 줄자를 이용하여 용기의 둘레를 측정(cm)	
⑤	구 모양의 용기 표시면적	※ 표시면적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Tag를 이용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토록 함	
⑥	사각 제품용기의 표시면적 (cm ²)	$= (\text{가로} \times \text{세로}) \times 4$ ※ 측정 단위는 cm 임	
⑦	납작한 정사각형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cm ²)	$= [(\text{가로} \times \text{세로}) + [(\text{가로} \times \text{높이}) \times 4]]$ ※ 측정 단위는 cm 임	

번호	포장형태	표시면적 계산	비고
⑧	납작한 직사각형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cm ²)	$= [(\text{가로} \times \text{세로}) + [(\text{가로} \times \text{높이}) \times 2] + [(\text{세로} \times \text{높이}) \times 2]]$ ※ 측정 단위는 cm 임	
⑨	선물용 직사각형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cm ²)	※ 윗면(⑤)은 모양으로 인해 표시면적에서 제외하고, 전면(①)과 뒷면(③)의 면적이 같고, 양 측면(②, ④)의 면적이 같으므로 4개면(①, ②, ③, ④)의 표시면적을 계산 (측정단위는 cm 임) $= [(\text{가로} \times \text{높이}) \times 2] + [(\text{세로} \times \text{높이}) \times 2]$	
⑩	손잡이가 있는 선물용 직사각형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cm ²)	※ 포장상자의 전면과 뒷면의 표시면적을 측정 (측정단위는 cm 임) $= (\text{가로} \times \text{세로}) \times 2$	

■ 용기 재질 동일 여부 확인서

- 여러 개의 중량 또는 용량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각 중량 또는 용량 등의 제품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고시 별표 3에 따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용기 재질이 상이한 경우 : 용기 재질이 상이한 추가 제품에 대하여 확인결과서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고시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의뢰 신청 후,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업로드하여야 함
 - 용기 재질이 동일한 경우 : 확인결과서를 받은 제품용기 재질과 추가한 중량·용량·매수·크기 재질이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여야 함
- ※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 받침대나 포장에 해당하지 않는 거치대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용기 재질 동일 여부 확인서 제출 불필요

붙임 3

□중량 / □용량 / □매수 / □크기 추가 용기 재질 동일 여부 확인서

상호명	접수번호	제품명	확인결과서 외 추가된 중량/용량/매수/크기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번호	구분	몸체 재질	뚜껑(덮개) 재질	실링제 재질
1	추가된 중량/용량/ 매수/크기를 각각 표기	LDPE, HDPE, PP, PET, PVC, PU, PS 등의 재질 중 어느 하나를 표기	LDPE, HDPE, PP, PET, PVC, PU, PS 등의 재질 중 어느 하나를 표기	NBR, HNBR, EPDM, SBR, CM, 등의 재질 중 어느 하나를 표기 (실링제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번호	구분	몸체 재질	뚜껑(덮개) 재질	실링제 재질
1	추가된 중량/용량/ 매수/크기를 각각 표기	LDPE, HDPE, PP, PET, PVC, PU, PS 등의 재질 중 어느 하나를 표기	LDPE, HDPE, PP, PET, PVC, PU, PS 등의 재질 중 어느 하나를 표기	NBR, HNBR, EPDM, SBR, CM, 등의 재질 중 어느 하나를 표기 (실링제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2				
3				
4				
5				
6				
7				
8				
9				
⋮				

○ 확인결과서 상의 용기 재질과 □중량 / □용량 / □매수 / □크기 추가 제품의 용기 재질은 상기 작성 내역과 같으며, 작성 내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상 호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3

□중량 / □용량 / □매수 / □크기 추가 용기 재질 동일 여부 확인서

상호명	접수번호	제품명	확인결과서 외 추가된 용량	작성자
테스트기업	A-200515-0000	123qqq_테스트	50mL, 75mL, 150mL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구분	몸체 재질	뚜껑(덮개) 재질	실링제 재질
확인결과서를 받은 제품의 용기 재질	LDPE	PP	silicone

번호	구분	몸체 재질	뚜껑(덮개) 재질	실링제 재질
1	50 mL	LDPE	PP	silicone
2	75 mL	LDPE	PP	silicone
3	150 mL	LDPE	PP	silicone

○ 확인결과서 상의 용기 재질과 □중량 / ■용량 / □매수 / □크기 추가 제품의 용기 재질은 상기 작성 내역과 같으며, 작성 내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상 호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표시도안 미리보기

대

중

소

안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대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번호 : 0000-00-0000

품목	방향제	제품명	조은 디퓨저(라벤더)
용도	일반용(실내공간용)	제형	액체형
제조 연월	별도표기	유통기한	해당없음
어는점		중량·용량·매수·크기	100mL
액성		표준사용량	
제조사, 주소, 연락처	조은항기, (08503)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02-123-1234		

사용 물질

주요물질	디퓨저베이스(에탄올 등), 향료(아세트산 벤질 등)
보존제	프로페인
알레르기물질	리날로올, 리모넨
계면활성제	아주까리 기름, 수소첨가, 에톡실레이티드(기타)
기타물질	리모넨, 프로페인

사용방법

제품의 내용물을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시오.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용기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시오.
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억지로 벗기지 마시오.
사용하기 전에 표시사항을 확인하시오.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화제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의 내용물을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시오.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용기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시오.
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억지로 벗기지 마시오.
사용하기 전에 표시사항을 확인하시오.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화제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오.

응급처치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오.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시오.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중

안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 0000-00-0000

품목	방향제	제품명	조은 디퓨저(라벤더)
주요물질	디퓨저베이스(에탄올 등), 향료(아세트산 벤질 등)	제조사, 연락처	조은항기, 02-123-1234

소

품목 :

방향제

제품명 :

조은 디퓨저(라벤더)

신고번호 :

0000-00-0000

- 신고 내용 입력과 첨부파일 업로드까지 마친 후, 하단의 표시도안 미리보기를 통하여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표시견본의 표시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

KEIT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제출

- 항목 입력 중 임시저장 버튼을 사용하여 중간중간 저장할 수 있으며, 항목들을 모두 입력하면 모두 다 입력되었는지 적합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항목이 입력되면 제출 버튼을 사용하여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를 수행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7) 기타사항

■ 수정·보완 요청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유선 연결은 평일 10시부터 ~ 17시(점심시간 제외)로 운영 되오니 그 외 시간에는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HOME > 생활화학제품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분류품목

분류 선택

품목 선택

•접수일자

•제품구분

=전체=

•상태

=전체=

•검색어

사업자번호

=전체=

조회

신고서 작성

•총계시물 18건(1/2)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5일 이내

No.		제품구분	상태	품목	제품명	상호	담당자	접수일자	남은 처리기간	파생제품
1	대표	수정보완요청	방향제	조은 디퓨저	조은항기	조석고	2021-03-24	17일	파생신고	

-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에 미비점이 있으면 수정·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수정·보완이 요청되면 신고인에게 수정·보완이 요청되었음을 알리는 메일이 송부되며, 기업사용자 화면에 수정·보완 요청받은 신고서가 있음이 보여집니다.

4

부록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71

■ 수정·보완 요청 완료

수정보완

파생제품신고

목록

* **신고유형**: 담당자의 수정보완 요청 사항입니다. (빨간색, 적색)
 * 생활화학제품 신고시 관련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환경부고시 제2021-15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신고 요건 미흡으로 보완요청한 건에 대하여 기한 내 보완·제출 하지 않을 시 아래 절차에 따라 반려 처리됨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고시 다운로드

상세절차

📄 신고인 정보

상호(명칭)	조은항기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조항기
담당자 성명	조석고	담당자 연락처	02-123-1234
담당자 이메일	1234@naver.com		
소재지(사업장) 주소	(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소재지 전화번호	02-123-1234	소재지 팩스번호	02-123-1235

📄 신고유형

제조/수입	제조
제조방식	직접생산
신고유형 수정보완사유	제품 설계 및 배합의 모든 권한은 조은항기에 있으나, 타사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받아 제품을 판매함도 동시에 있음에 따라, 직접생산과 함께 OEM 제조방식도 추가해주시고, 제품 생산을 수탁받은 수탁자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완

파생제품신고

목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로부터 수정·보완이 요청되면, 기업담당자는 수정·보완해야 할 항목을 확인하고 신청서 상단의 수정보완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항목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신청서 상단의 수정보완요청 사유 조회를 통해 자세한 요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담당자는 신청서 아래의 임시저장 버튼 및 수정보완 제출 버튼을 사용하여 임시저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에게 수정보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보완 제출 버튼을 클릭할 때 작성 내용에 대한 정합성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1.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파생제품 신고

■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의 정의

- 대표제품 :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
- 파생제품 :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안전기준 물질이 변경이 없는 제품
- 단, 용량만 변경 되는 제품의 경우 대표제품 변경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변경제품으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 파생제품 신고절차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유선 연결은 **평일 10시부터 ~ 17시(점심시간 제외)**로 운영 되오니 그 외 시간에는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HOME > 생활화학제품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분류품목

분류 선택

•품목 선택

•접수일자

•제품구분

=전체=

•상태

=전체=

•검색어

사업자번호

=전체=

Q 조회

신고서 작성

•총계시물 18건(1/2)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5일 이내

No.		제품구분	상태	품목	제품명	상호	담당자	접수일자	남은 처리기간	파생제품
1		대표	증명서 발급완료	방향제	조은 디퓨저	조은항기	조석고	2021-01-13		파생신고

- 파생제품 신고를 위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제품신고 메뉴로 접근합니다. 파생제품 신고는 대표제품이 신고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파생제품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파생제품 신고 화면이 발생합니다. 이때, 대표제품의 신고번호를 비롯한 대표제품의 모든 정보가 기본값으로 연동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파생제품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방법은 대표제품과 동일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파생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 파생제품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고시 [별표 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이 적합함을 확인한 시험성적서 사본 제출
 - 대표제품 검사 시 제출한 배합비 관련 서류[별지 제2호 서식] 첨부

- 신고사항에는 변경 내용을 글자*로만 텍스트박스에 기입합니다.

* 입력 가능 최대 길이 : 영문 4,000자, 한글 1,000자

- 파생제품의 신고인 정보 변경 시, 기업정보를 먼저 변경하고 대표제품 변경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파생제품 신청은 반려됩니다.)
- 파생제품 신고 반려 시, 재신청 버튼을 통해 기존 파생신고를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1.5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증명서(예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신고인	상호(명칭) (주)나날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성명(대표자) 홍 길 동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010-121-3250 조석고 (전자우편 : hakm@nanalam.com)
	소재지(사업장) (037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0 110동 (전화번호 : 02-1002-1002) (팩스번호 : 02-1001-1001)	
신고 제품	제조·수입 [☒] 제조 [☐] 수입	품목
	제품명 센터리아섬유유연제 대표제품 #21 수정보완#1	용도 섬유용
	제형 액체형	중량·용량·매수 10 L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효과·효능(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 하려는 경우)	기타 신고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21 년 07 월 01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갱신 신고

■ 대표제품 갱신 신고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유선 연결은 **평일 10시부터 ~ 17시(점심시간 제외)**로 운영 되오니 그 외 시간에는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HOME > 생활화학제품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분류품목 분류 선택 ☒ 품목 선택 ☒ •접수일자

•제품구분 =전체= ☒ •상태 =전체= ☒

•검색어 사업자번호 ☒ =전체= ☒

•총계시물 18건(1/2) 대표제품 갱신을 위한 선택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5일 이내

No.	☐	제품구분	상태	품목	제품명	상호	담당자	접수일자	남은 처리기간	파생제품
1	☐	파생	증명서 발급완료	세탁세제	누룽지 맛 사탕 100KG	테스트명 회사2	조석고	2019-03-03		
2	☒	대표	증명서 발급완료	세탁세제	누룽지 맛 사탕	테스트명 회사2	조석고	2019-03-03		파생신고

- 대표제품 갱신을 위하여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내에 기존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을 받아 새로운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내의 대표제품 증명서 발급완료 건을 선택합니다.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신청 (대표제품) HOME > 생활화학제품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 제품신고

·접수번호(접수일): XXXXXXXXXXXX ·신고번호(완료일): XXXXXXXXXXXX ·상태: 증명서 발급완료

·담당자: 기술원 업무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02-XXXX-XXXX

* 생활화학제품 신고시 관련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환경부고시 제2021-15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신고 요건 미흡으로 보완요청한건에 대하여 기한 내 보완·제출 하지 않을 시 아래 절차에 따라 반려 처리됨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계속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세탁제품-세탁세제-가죽용-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정보

발행번호	시험·검사기관 이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XXXXXXXXXXXX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03-01 ~ 2022-02-2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신고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pdf (10898 byte)	

-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시 “대표갱신신고”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HOME > 생활화학제품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신청 (대표제품)

·접수번호(접수일): XXXXXXXXXXXX ·신고번호(완료일): XXXXXXXXXXXX ·상태: 증명서 발급완료

·담당자: 기술원 업무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02-XXXX-XXXX

3

* 생활화학제품 신고시 관련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환경부고시 제2021-15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신고 요건 미흡으로 보완요청한건에 대하여 기한 내 보완·제출 하지 않을 시 아래 절차에 따라 반려 처리됨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세탁제품-세탁세제-가죽용-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정보

발행번호	시험·검사기관 이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12345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2-01-01 ~ 2024-12-3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pdf)	신고대상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pdf(10898 byte)	

☒ 신고사항

신고사항

시험성적서 만료로 인한 갱신신고

2

- 새로 발급받은 확인결과서의 발행번호, 시험·검사기관 이름, 유효기간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확인결과서를 업로드 합니다.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없을 시 생략) 제출합니다.

■ 파생제품 갱신 신고

- 파생제품 갱신 신고는 대표제품 갱신 완료 후 진행합니다.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유선 연결은 **평일 10시부터 ~ 17시(점심시간 제외)**로 운영 되오니 그 외 시간에는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HOME > 생활화학제품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분류품목 ☐ 분류 선택 ☒ 품목 선택 ☒ •접수일자

•제품구분 =전체= ☒ •상태 =전체= ☒

•검색어 사업자번호 ☒ =전체= ☒

•총계시물 18건(1/2) 파생제품 갱신을 위한 선택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5일 이내

No.	☐	제품구분	상태	품목	제품명	상호	담당자	접수일자	남은 처리기간	파생제품
1	3		증명서 발급완료	세탁세제	누룽지 맛 사탕	테스트명 회사2	김공이	2022-01-12		
2	2	대표갱신	증명서 발급완료	세탁세제	누룽지 맛 사탕 100KG	테스트명 회사2	김공이	2019-03-03		
3	1	대표	증명서 발급완료	세탁세제	누룽지 맛 사탕	테스트명 회사2	김공이	2019-03-03		파생신고

-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90일 이내의 파생제품을 선택합니다.

HOME > 생활화학제품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 제품신고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신청 (대표제품)

·접수번호(접수일) : XXXXXXXXXXXX ·신고번호(완료일) : AB22-03-0001 (2022-01-12) ·상태 : 증명서 발급완료

·담당자 : 기술원_업무_이상원 ·담당자 연락처 : 0222841865

* 생활화학제품 신고서 관련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환경부고시 제2021-15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신고 요건 미흡으로 보완요청한건에 대하여 기한 내 보완·제출 하지 않을 시 아래 절차에 따라 반려 처리됨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계속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세탁제품-세탁세제-가죽용-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정보

발행번호	시험·검사기관 이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XXXXXXXXXXXX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03-01 ~ 2022-02-2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신고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pdf (10898 byte)	

-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시 “파생갱신신고”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HOME > 생활화학제품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신청 (대표제품)

·접수번호(접수일) : A-220112-0007(2022-01-12) ·신고번호(완료일) : ·상태 : 증명서 발급완료

·담당자 : 기술원_업무_이상원 ·담당자 연락처 : 0222841865

2

* 생활화학제품 신고서 관련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환경부고시 제2021-15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0년 6월 5일 이전에 시험분석기관에 확인결과서를 접수하셨을 경우, 관련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환경부고시 제 2019-45호-공지사항 참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신고 요건 미흡으로 보완요청한건에 대하여 기한 내 보완·제출 하지 않을 시 아래 절차에 따라 반려 처리됨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세탁제품-세탁세제-가죽용-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정보

발행번호	시험·검사기관 이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123456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2-01-01 ~ 2024-12-3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pdf)	신고대상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pdf(10898 byte)	
	삭제	

- 대표제품에 입력한 갱신 확인결과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2 신고 시 확인사항 (주요 수정·보완사항)

구분	확인사항
공통	■ Chemp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확인 - 공지사항 44번 : 「화학제품관리시스템-표시사항 작성 안내」 동영상 - 공지사항 43번 : 「화학제품관리시스템-해외제조사 성분입력」 동영상 - 공지사항 34번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청 업무 매뉴얼 - 공지사항 11번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작성 예시」 동영상
	■ 전성분을 꼭 확인하여 작성 전성분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을 경우, 법 제58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 파생으로 신고할 경우 모든제품이 동일한 신고번호를 사용하게 되므로, 향후 안전성조사 등 사후관리에서 하나의 제품이 부적합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전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가 진행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고하십시오. ※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은 제품(대표제품)과 비교 -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붙일 견본은 기준에 맞는 사항을 모두 표시하고 문구가 정확히 들어 있어야 하며, 제품 출고시에도 이 문구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에 대한 법적책임은 신고자 및 사업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유형	■ 직접제조, OEM, ODM 인지 확인 ■ 국문 기재가 원칙 영문명 기재를 원할 경우 국문명(영문명)으로 기재할 것 (참고) 표시도안견본에는 영문활자의 크기가 국문활자의 크기보다 작을 것
제품명	■ 국문 기재가 원칙이므로, 영문명 기재를 원할 경우 국문명(영문명)으로 기재 (예시) 바이크클린(BIKE CLEAN) O, BIKE CLEAN(바이크클린) X, (참고) 표시도안 견본에는 영문활자의 크기가 국문활자의 크기보다 작을 것 시험결과서의 제품명과 동일하게 기재

구분	확인사항
분류-품목	■ 확인결과서와 동일하게 모든 품목을 선택/추가 입력 ※ 한 개의 제품에 2개의 신고번호가 생길 수 없습니다. ■ 확인결과서를 참고하여, 세부제형을 표기해주십시오. ■ 다품목 제품인 경우 대표품목을 필수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대표품목에 따라 신고번호가 부여되며, 파생제품 신청 시 동일한 품목을 대표제품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형	■ 확인결과서의 제형과 동일하게 입력 (예시) 초 : 분사형-기타-연소형
유통기한	■ 표시도안 견본과 일치여부 확인
어는점	■ 어는점은 물과의 혼합비율과 혼합비율에 따른 어는점으로 표시 (표 또는 그래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 가능)
액성	■ 원액의 액성을 입력하고, 표준사용량이 있을 경우, 표준사용량에 따른 액성을 추가로 입력 (참고) 액성에 표준사용량의 액성이 표시된 경우, “표준사용량” 표시 ■ pH 범위에 맞는 액성을 입력
중량/용량/매수	■ 확인결과서의 단위와 동일하게 입력 ■ 동일한 함유성분으로 추가 용량이 있는 경우, 추가기재 (예시) 10,20,30,40 등으로 침표(.)로 구분하여 나열식 또는 10~40 등으로 범위 기재
표준사용량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 ■ 희석해서 사용하는 농축제품의 경우, 희석비율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표시 ■ 액성에 표준사용량의 액성이 표시된 경우, “표준사용량” 표시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여부	■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확인(고시 [별표4]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참고) 제7조(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별표 6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구분	확인사항
사용방법	■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여는 방법'에 대한 문구를 기재하고 눈에 띄게 표시 (필요시 닫는방법 포함). (참고) 고시 [별표6]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확인
사용상 주의사항	■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 후 해당시 반드시 고시에서 표기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참고) 고시 [별표6]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참고 ■ 그림기호를 사용시 해당 관련 문구를 시스템에 기재(그림기호 사용시, 표시도안에는 관련 문구 생략 가능) (참고) 고시 [별표6]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참고 ■ 표시도안 견본과 일치여부 확인
응급처치	■ 필수 응급처치사항을 확인 후 해당시 반드시 고시에서 표기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참고) 고시 [별표6]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참고 ■ 그림기호를 사용시 해당 관련 문구를 시스템에 기재(그림기호 사용시, 표시도안에는 관련 문구 생략 가능) (참고) 고시 [별표6]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참고 ■ 표시도안 견본과 일치여부 확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확인결과서의 발행번호와 일치하게 입력 ■ 검사를 받지 않은 물질에 관해서 확인결과 및 판정에 '해당없음' 입력 ■ 확인결과서의 일부가 아닌 전체 페이지 업로드
함유성분 (전성분)	■ 표시도안 중 사용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국문명으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형광증백제, 기타물질 (참고) 고시 [별표6]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참고 ■ 초의 심지의 성분도 기재 필요 - 배합비는 0으로, 용도(기능)은 기타(직접입력)를 선택 후 심지로 기재 - CAS 번호가 없는 심지인 경우에는 증빙자료 업로드 - MSDS 자료 또는 함유성분 및 구매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URL 제출시 캡처본 함께 명기 ■ 혼합물질 입력방법 - 혼합물질 선택 → 검색 클릭 → 팝업창 상단의 고유번호 직접입력 선택 → CAS No.없음 선택 → 제품에 표시할 이름 입력(예) 향료 (대표물질명 등) → MSDS 업로드 - MSDS를 참고하여 전성분 CAS No. 및 물질명, 배합비 입력 * 배합비가 범위로 기재되어있을 경우 최대값 입력

구분	확인사항
함유성분 (전성분)	■ 주요물질 체크 확인(표시사항대상물질) 첨부서류 중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에 기재된 주요물질(최대함량 및 주요 기능)과 일치 여부 ■ 정제수(또는 물)의 카스번호 입력 * 정제수(또는 물) 카스번호 : 7732-18-5 ■ 혼합물질 향료의 경우, 향료(대표물질명 등)로 기입 * 대표물질은 최대 배합비 물질을 뜻함
표시도안 견본	■ 아래 항목을 눈에 띄는 방법(밑줄 굵기/활자 굵게/글자색 변경 등)으로 표시 * ① 신고번호 ② 품목 ③ 사용상 주의사항 중 필수 문구에 한함 ④ 응급처치 중 필수 문구에 한함 ■ 계면활성제의 경우, 물질명(계열)을 함께 표기 ■ 해당없는 표시항목은 삭제 ■ 그림기호를 사용시 저작권 표시 * 저작권표시 : © A.I.S.E. ■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명(영문명) 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 ■ 사용하는 표시도안만 업로드하여 주십시오 ■ 파생제품 또는 대표제품 변경 도안 작성 시 대표제품의 신고번호를 꼭 기재하여야 함 (0000으로 기재하지 않음)
표시도안이 제품에 부착된 견본사진	■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 부착 (참고) 고시 [별표6]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참고 ■ 표시도안 견본 수정시, 수정된 표시도안 견본이 부착된 제품사진을 첨부 - 표시도안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촬영 - 고시 상, 용기의 바닥면은 표시면에 포함되지 않음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직인 또는 서명이 기재 필수 ■ 시험검사기관에 제출된 성분 및 배합비 제출 *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2]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참고, 재작성
기타 첨부서류	■ ODM 서류에 제품명을 명시 ■ 추가 첨부서류 존재시 업로드(알러지리스트, 용기재질동일확인서, 제품명 변경 확인서 등)
효과·효능	■ 효과·효능 확인서의 결과란에 입력한 내용을 동일하게 입력

3 제품의 효과·효능 신고

■ 효과·효능의 관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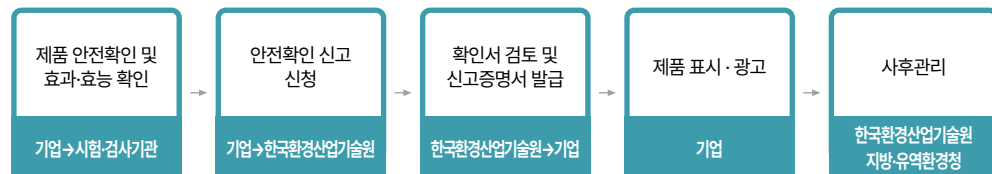
-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신고대상 품목 및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
 - 대상품목 :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대상제품 :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는 전 제품
- ※ 예시) '비브리오균(Vibrio species) 99.9% 살균' 등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모두 해당. 항균 처리된 제품 등 살생물처리제품은 제외

■ 법적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34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제34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효과·효능의 관리 절차

- 신고대상제품의 효과·효능 표시·광고 관리 절차 개요



※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 한함

- 신고 신청
 - 신고서 제출 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 및 입증자료(인증서, 성적서) 제출
- 신고증명검토 및 발급
 - 확인서와 효과·효능 입증자료의 정보 동일여부 검토 후 안전확인제품 신고증명서발급
- 제품 표시·광고
 -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광고
- 사후관리
 - 불법제품 신고 또는 안전성 조사 등으로 제품의 표시·광고 및 신고내용 동일여부 검토

■ 효과·효능 광고 표기 시 유의사항

- 효과·효능에 대한 광고 내용은 chemp에서 제품 신고 시 앞·뒷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게 광고문구를 표기하여 첨부하여야 함
- 신고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표시·광고 시 '표적생물체, 표적생물체 감소율(또는 로그값), 살균(또는 항균 등)'을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에 기재 하여야 함
 - 표시 예시 : 대장균(*Escherichia coli* ATCC 8739) 99.9% 살균

■ [참고] 표적생물체 예시 및 표적생물체의 % 감소율과 로그 저감값

- 표적생물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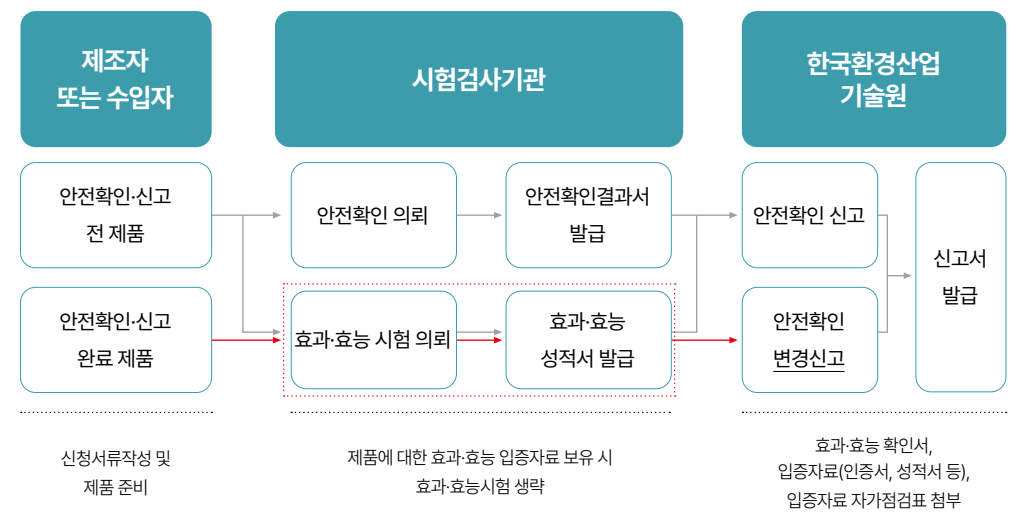
분류	표적생물체	
	학명	군주보관기관 및 군주번호 (생략가능)
Bacteria (세균)	<i>Escherichia coli</i> (대장균)	ATCC 10536, ATCC 8739, K12 NCTC 10538, NCIMB 8545, CIP53.126, NBRC 3972, KCTC 2571
	<i>Pseudomonas aeruginosa</i> (녹농균)	ATCC 15442, ATCC 9027, NCIMB 8626, CIP 82.118, NBRC 13275 또는 KCTC 2513
	<i>Staphylococcus aureus</i> (황색포도상구균)	ATCC 6538, NCIMB 9518, CIP 4.83, NRRC 13276 또는 KCTC 3881
	<i>Enterococcus hirae</i>	ATCC 10541
	<i>Enterococcus faecium</i>	ATCC 6057, Teltow 11
	<i>Salmonella typhimurium</i> (살모넬라균)	ATCC 13311
	<i>Lactobacillus brevis</i>	DSM 6235
	<i>Enterobacter cloacae</i> (엔테로박터균)	DSM 6234
	<i>Proteus vulgaris</i> (프로테우스균)	ATCC 13315
	<i>Streptococcus uberis</i>	ATCC 19436
Yeast (효모)	<i>Candida albicans</i> (칸디다균)	ATCC 10231
	<i>Saccharomyces cerevisiae</i>	ATCC 9763, DSM 70487
Fungal spore(진균)	<i>Aspergillus brasiliensis</i>	ATCC 16404
Virus (바이러스)	<i>Adenovirus type 5 strain Adenoid 75</i>	ATCC VR-5
	<i>Murine Parvovirus strain Crawford</i>	ATCC VR-1346
	<i>Bovine Enterovirus Type 1, ECBO - Virus</i>	ATCC VR-248
	<i>Polio virus type 1 LSc-2ab(Picornavirus)</i>	
Enveloped virus (외피바이러스)	<i>Murine Norovirus, strain S99 Berlin</i>	
	<i>MVA = Modified Vaccinia virus Ankara</i>	ATCC VR-1508
Bacteriophage (박테리오파지)	<i>Bacteriophage P001</i>	DMS 4262
	<i>Bacteriophage P008</i>	DMS 10567
	<i>Bacteriophage MS2</i>	DSM 13767, ATCC 15597-B1
	<i>Bacteriophage PRD1</i>	DSM 19107
Mycobacteria (항산균)	<i>Bacteriophage PhiX174 (ΦX174)</i>	ATCC 13706-B1
	<i>Mycobacterium terrae</i>	ATCC 15755
	<i>Mycobacterium avium</i>	ATCC 15769
Bacterial spore (세균 아포)	<i>Bacillus cereus</i>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ATCC 12826
	<i>Bacillus subtilis</i>	ATCC 6633
	<i>Clostridium sporogenes</i>	ATCC 7955
	<i>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i>	ATCC 12980
Endoparasite (내부기생체)	<i>Oocysts of Eimeria tenella strain Houghton</i>	

- 표적생물체의 % 감소율과 로그 저감값

표적생물체의 % 감소율	로그 저감값
99 % 살균/항균	2 로그 저감
99.9 % 살균/항균	3 로그 저감
99.99 % 살균/항균	4 로그 저감
99.999 % 살균/항균	5 로그 저감
[참고] 로그 저감값의 감소율로 환산 : % 감소율 = 100 - (100/10 ^{로그저감값})	

■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 신고 절차

• 효과·효능 확인·신고 절차



효과·효능 시험기관 인정 범위

✓ 해당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한 기관

- 개별법에 근거 및 설립된 시험기관 :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해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 국가기술표준원의 KOLAS 인정시험기관 검색서비스에 등재된 기관
- 국내외 대학 또는 관련 전문 시험기관 : 제조 및 영업부서 등 다른 부서와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사업자와 독립된 시험기관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어 영업상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 시험비용이 과대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효과·효능의 입증 대상

√ 효과·효능을 내는 '살생물물질(주성분)'이 아닌 해당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기준으로 진행

예) 차아염소산 물질 자체의 살균력 (X)

차아염소산이 들어간 ○○살균제의 살균력(0)

√ 효과·효능의 표시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에 적용하며,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시험성적서(인증서), 시험결과보고서 등 입증자료

√ (유사 제품의 입증)효과·효능이 입증된 제품과 '품목(용도, 제형, 효과·효능 발생물질(주성분) 종류 및 배합비'가 모두 동일(이하, 유사 제품)한 경우, 확인서 제출 시 기존 입증자료 활용이 가능함

※ 생물물질 배합비의 경우 제품유사성기준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 있는 경우 유사제품으로 모두 인정함
(살생물물질의 배합비는 '제품의 유사성 인정 기준'을 준용하여 범위 적용)

■ [참고] 살생물물질 배합비에 따른 제품 유사성 기준

제품 내 주요기능 <u>살생물물질</u> (주성분)의 배합비		유사 인정대상 제품 내 주요기능 살생물물질(주성분)의 배합비 증감 허용 범위	
		하한	상한
2.5% 이하	불균질한 제제 (예, 입상)	배합비의 75% 이상	배합비의 125% 이하
	균질한 제제 (예, 에멀션, 농축액)	배합비의 85% 이상	배합비의 115% 이하
2.5% 초과~10% 이하		배합비의 90% 이상	배합비의 110% 이하
10% 초과~25% 이하		배합비의 94% 이상	배합비의 106% 이하
25% 초과~50% 이하		배합비의 95% 이상	배합비의 105% 이하
50% 초과		배합비의 절대값 2.5를 뺀 값 이상	배합비의 절대값 2.5를 더한 값 이하

예) 사례별 적용 기준

구분 - 제품 정보	확인서 제출여부	입증자료
A제품(기준) - 살균제(일반물체용), 액체형, 과산화수소 0.2%	제출 O ¹⁾	A제품 시험성적서
B제품 - 살균제(일반물체용), 액체형, 과산화수소 0.2%	제출 O ¹⁾	A제품 시험성적서 활용 가능
C제품 - 살균제(일반물체용), 액체형, 과산화수소 0.18% ²⁾	제출 O ¹⁾	A제품 시험성적서 활용 가능
D제품 - 살균제(일반물체용), 액체형, 과산화수소 0.1%	제출 O	D제품 시험성적서
E제품 - 살조제(어항용), 액체형, 과산화수소 0.2%	제출 O	E제품 시험성적서

주1) 확인서를 각 제품별로 제출 또는 1장의 확인서에 대상제품 모두 기재(택 1)

2) 제품의 유사성 인정 기준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배합비 증감 허용 범위 이내
→ 과산화수소 0.18%는 0.2%의 90%로 증감 허용 범위(85% 이상) 이내임

■ 효과·효능 확인서 작성 방법

작성항목

신청인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방법

- 신청인 정보 작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혹은 제품 신고서와 동일하게 작성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제품
정보

제품명			품목	
제형			용도	
제품 내 살생물 물질 정보	물질명	CAS 번호	배합비(%)	제품 내 용도
안전기준적합확인신청제품의 효과·효능은 아래의 효과·효능 정보와 동일하며, 제품 내 살생물물질 이외의 다른 물질들이 제품의 효과·효능을 저해하지 않음을 확인함 []				

• 제품명, 제형, 품목, 용도

- 제품명은 살균시험 성적서 등에 시료명 기재
- 품목, 제형, 용도는 살균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제품 내 살생물물질 정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배합비에 있는 살생물물질의 정보 기재, 배합비(%)는 전체제품 기준으로 살생물물질의 배합비 기재

• 효과 · 효능에 대한 확인

- 확인란 체크

제품의
효과
효능
정보

제품명			품목	
제형			용도	
제품 내 살생물 물질 정보	물질명	CAS 번호	배합비(%)	제품 내 용도
효과· 효능 입증 (택1)	[] 성적서(인증서) [] 시험결과보고서 [] 기타 _____			
	발행번호 해당시		시험기관	
	시험일자		시험방법 (예시)ASTM E 2149	
	결과 (시험생물종/ 결과치)	대장균(Escherichia coli) 99.9% 살균		

• 제품명, 품목, 제형, 용도

- 제품명은 살균시험성적서 등의 시료명 기재
- 품목, 제형, 용도는 살균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제품 내 살생물물질 정보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제품 내 살생물물질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성 인정 허용범위에 해당되어야 함

• 효과 · 효능 입증

-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형을 선택 후 기재된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입증자료 내 제공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확인서 확약에 따라 직접 기재하는 경우도 인정)
- 시험 결과는 시험생물종과 결과치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

■ 효과·효능 확인서 작성예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						
신청인	상호(명칭)	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성명 (대표자)	홍길동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홍길동 (전자우편: abc@abcd.com)	
	소재지 (사업장)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전화번호: 00-000-0000) (전자우편: 00-000-0000)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제품 정보	구분	☒ 제조 ☐ 수입	품목	살균제		
	제품명	000 살균제		용도	일반용(일반물체용)	
	제형	분무기형		중량·용량·매수	200 mL	
	제품 내 살생물물질 정보	물질명	CAS 번호	배합비(%)	제품 내 용도	
		에탄올	64-17-5	70	살균	
안전기준적합확인신청제품의 효과·효능은 아래의 효과·효능 정보와 동일하며, 제품 내 살생물물질 이외의 다른 물질 들이 제품의 효과효능을 저해하지 않음을 확인함 [V]						
제품의 효과·효능 정보	제품명	000 살균제		품목	살균제	
	제형	분무기형		용도	일반용(일반물체용)	
	제품 내 살생물물질 정보	물질명	CAS 번호	배합비(%)	제품 내 용도	
		에탄올	64-17-5	70	살균	
	효과·효능 입증(택1)	☒ 성적서(인증서) ☐ 시험결과보고서 ☐ 기타 _____				
		발행번호 A1234		시험기관 000 시험기관, 000 대학교 등		
		시험일자 2021.00.00		시험방법 ASTM E 2149 등		
결과 (시험생물종/ 결과치)		대장균(<i>Escherichia coli</i> ATCC 8739) 99.9% 살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알리기 위해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며, 위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1 년 00 월 00 일 신청인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설명서 1부 3. 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 성적서, 시험결과보고서 등) 1부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 효과·효능 자가점검표 작성 예시

- '입증자료'와 '입증자료 자가점검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효과·효능 입증자료 자가점검표					
상호(명칭)	가나다	성명(대표자)	홍길동	제조/수입 구분	제조
품목/용도	살균제, 일반용(일반물체용)	제품명	000 살균제	제형	분무기형
입증자료 자가점검표					
시험기관 정보(기관명) *필수		☒ 예	☐ 아니오		
시험기관의 요건 적합 여부 *필수		☒ 예	☐ 아니오		
연구자 정보(연구책임자 및 시험수행자)		☒ 예	☐ 아니오		
시험명 및 연구수행의 목적		☒ 예	☐ 아니오		
시험의뢰자 *필수		☒ 예	☐ 아니오		
성적서발행일		☒ 예	☐ 아니오		
시험물질(제품명) *필수		☒ 예	☐ 아니오		
시험결과요약		☒ 예	☐ 아니오		
생물종 *필수	시험생물종 정보	☒ 예	☐ 아니오		
	배양조건	☒ 예	☐ 아니오		
시험수행조건 *필수	시험법 정보	☒ 예	☐ 아니오		
	시험물질정보	☒ 예	☐ 아니오		
	세포독성 (해당시)	☒ 예	☐ 아니오		
	시험물질의 처리농도	☒ 예	☐ 아니오		
시험결과	대조군, 시험군의 결과	☒ 예	☐ 아니오		
	최소 3반복 시험결과	☒ 예	☐ 아니오		
결론 *필수	시험생물종 감소효과	☒ 예	☐ 아니오		
사진		☒ 예	☐ 아니오		
참고문헌(해당시)		☐ 예	☐ 아니오		
* 필수 기재사항에 '아니오' 체크시 사유 작성					

주의사항

- ✓ 확인서 내 '신청제품 정보'와 '효과·효능 정보' 중 '제품명, 품목, 용도, 제형, 제품 내 살생물질의 정보'는 동일해야 함 (아래 그림 참조). 단, 제품명의 경우 일치하지 않아도(제품명≠시료명) 인정되나 해당 항목은 모두 기재하여야 함
- * '신청제품 정보' 및 '효과·효능 정보'가 다른 경우 동일제품(유사제품)이 아니므로 제출 불가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					
신청인	상호(명칭)	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성명 (대표자)	홍길동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홍길동 000-00-00000 (전자우편: abc@abcd.com)	
	소재지 (사업장)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전화번호: 00-000-0000) (전자우편: 00-000-0000)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청제품 정보	제품명	000 살균제	품목	살균제	
	제형	분무기형	용도	일반용(일반물체용)	
	제품 내 살생물질 정보	물질명	CAS 번호	배합비(%)	제품 내 용도
		에탄올	64-17-5	70	살균
안전기준적합확인신청제품의 효과·효능은 아래의 효과·효능 정보와 동일하며, 제품 내 살생물질 이외의 다른 물질들이 제품의 효과·효능을 저해하지 않음을 확인함 [✓]					
제품의 효과·효능 정보	제품명	000 살균제	품목	살균제	
	제형	분무기형	용도	일반용(일반물체용)	
	제품 내 살생물질 정보	물질명	CAS 번호	배합비(%)	제품 내 용도
		에탄올	64-17-5	70	살균
	효과·효능 입증(택1)	[] 성적서(인증서) [] 시험결과보고서 [] 기타			
발행번호 해당시		시험기관			
시험일자		시험방법 (예시) ASTM E 2149			

■ 효과·효능 확인서 제출 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www.chemp.me.go.kr)을 통한 신고(변경신고 포함) 시 각 제품별로 '제품의 효과·효능확인서' 제출

(신고방법은 매뉴얼 00 p 참조)

효과·효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 하려는 경우만 해당 (대상품목: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해당없음
효과·효능 첨부서류 추가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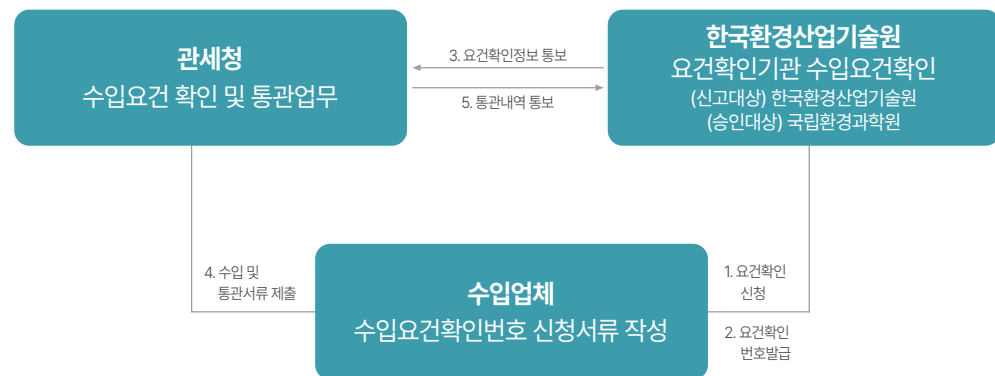
- ✓ 제품의 효과·효능확인서와 함께 입증자료 자가점검표도 함께 첨부
- ✓ 신고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확인서의 '효과·효능 정보(결과)'와 같으므로 제품 광고로 표기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
- ✓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제품의 효과·효능과 동일하게 표시·광고
예) 살모넬라균(*Staphylococcus aureus* ATCC 13311) 99.9 % 살균

4 수입요건확인번호 발급

■ 법적근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환경부예규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해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국내 반입 전 ‘수입요건확인번호’ 발급 후 통관이 가능

■ 생활화학제품 수입통관 절차



- 신고, 승인이 완료된 제품은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전자민원’ 기능을 활용하여 ‘수입 요건확인번호’ 발급 후 수입통관 절차 진행

■ 생활화학제품 수입통관 절차

신청제품 정보	
제품명	
종류	확인·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또는 확인신고번호 ①	
유효기간 ②	
수입량(단위)	=선택하세요= ☒ *연간 수입예정 총 수량 입력
HSK No.	검색 HSK No. 다운로드
제조국명	
제회사명	
제조사 소재지 (승인제품에 한함)	 *제조사 소재지는 구글지도에서 검색 가능 한 우편번호 작성 ▶ 직접 검색(구글 사이트→검색창 주소입력 및 검색→지도에서 확인)해보신 후 우편 번호 포함 된 실주소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 → 전자민원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 → 신청 제품 클릭 후 수입요건 확인번호 정보 작성 (신청인 정보, 제품명, 종류, 승인 또는 확인신고번호, 유효기간, 제조국명, 제조회사명은 자동으로 입력)
* 유효기간이 유효한 신고번호, 승인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목록에서 자동 조회 됨
- 수입요건확인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며 발급이 완료 된 후 사용가능 함
- 수량은 연간 수입 계획량을 최대로 작성하되, 대표제품과 파생제품 수입요건확인 번호 신청시 각각 입력
- HSK 번호는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확인(예시:방향제 제품의 HS.CODE는 3307.41-0000)
- 제조사가 다국적 공장 운영 시에는 제조사 본사 주소를 기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서 발급 및 잔량 확인 방법

- (소요 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
* 공휴일, 수정보완 기간은 제외됨
- (유효 기간) 수입요건확인번호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단,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유효기간이 종료 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만료 될 수 있음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급
- (수입요건확인서 확인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 → 전자민원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 → 처리여부 ‘Y’ 상태 제품 클릭 → 증명서 출력(수입요건확인서 화면에서 수입요건확인번호 확인)
- (잔량 확인 방법)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수입요건승인내역 → 발급 완료 된 수입요건확인번호로 ‘요건승인번호’ 검색창 입력 → 승인수량, 통관수량, 잔량수량 등 확인 가능

■ 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번호 재발급

- 수량, HSK 등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신청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 → 전자민원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 → 처리여부 ‘Y’ 상태 중 재발급 신청 제품 클릭 → 재발급 → 재발급사유 입력 → 수정 정보 입력 후 재발급 제출

■ 수입요건 면제신청

- 면제확인 신청사유(① 확인·신고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 시제품, ② 연구·실험용, ③ 전시·박람회 출품용, ④ 전량 수출용 제품)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요건 면제신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비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 2조 정의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표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 → 전자민원 → 수입요건 면제신청 → 신청 클릭 후 면제확인 대상제품, 생활화학제품 사용계획서 정보 작성 (신청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

- **제조업자** : 제품 제조국으로 정보 입력 (판매국X)
- **대상제품** : 한 가지 제품만 신청. 다른 제품인 경우 제품명, 수량, 사용장소, 사용계획서 구분하여 개별 신청
- **사용장소** : 면제확인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장소명, 상세주소 작성(전량 수출제품인 경우에는 000 보관 후 00국 수출)

☞ 제조업자	
제조업자	* 제조국명 =선택하세요= v * 회사명
☞ 대상제품	
대상제품	* 제품명 * 안전기준상태품목구분 분류선택 ☒ 품목선택 ☒ 용도선택 ☒ 세부 용도 선택 ☒ * 수량 =선택하세요= v * 금액 원
* 사용장소	
* 면제내용	* 안전기준상태품목구분 선택시 면제내용은 자동 선택됩니다.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면제확인 신청사유	☐ '화학제품안전법, 관계 조항에 따른 확인·신고,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 기업,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실험·개발용으로 사용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 ☐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제품라벨 (견본, 연구용 제품 등 문구)	☐ 부착 ☐ 미부착 * 제품라벨 미부착 시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사용계획서	
* 수입일정	calendar
* 사용기간	calendar ~ calendar
* 내용 (면제확인대상제품 소진시까지 사용계획 등 작성)	
* 사용 후 남은 잔량 처리방법 (면제확인 신청사유 목적 외 사용불가)	☐ 전량 폐기

- 면제확인 신청사유: 한 가지 사유만 선택. 면제확인 신청사유가 상이 한 경우 사용장소, 수량, 사용계획서 구분하여 개별 신청
- 면제확인 신청사유가 전량 수출인 경우 국내보관소, 수출국가, 수출일정 추가 작성

☞ 첨부 서류	
증빙자료	업로드 * 첨부 서류는 선택사항
제품 목록	

- 첨부서류 : 선택사항이며, 추가 증빙자료 제출하는 경우 업로드

☞ 생활화학제품 사용계획서	
* 수입일정	calendar
* 사용기간	calendar ~ calendar
전량 수출을 목적인 제품에 한해 추가 작성	* 국내보관소
	* 수출국가 =선택하세요= v
	* 수출 일정 calendar ~ calendar
* 내용 (면제확인대상제품 소진시까지 사용계획 등 작성)	

■ 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 발급

- (소요 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
* 공휴일, 수정보완 기간은 제외됨
-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 확인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 → 전자민원 → 수입요건 면제신청 → '증명서 발급' 상태 제품 클릭 → 수입요건면제확인결과서 클릭

5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 자유판매증명서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영문증명서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영문서류임

■ 발급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법 제 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한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자유판매증명서신청

자유판매증명 신청

HOME > 자유판매증명 > 자유판매증명 > 신청

접수번호(접수일):

신고번호(완료일):

상태: 반려

담당자(연락처):

임시저장

제출

목록

신청인

상호(명칭)	조은항기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조항기
담당자 성명	조석고	담당자 연락처	02 - 123 - 1234
담당자 이메일	1234 @ naver.com		
소재지(사업장) 주소	(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소재지 전화번호	02 - 111 - 1111	소재지 팩스번호	02 - 111 - 1111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 → 전자민원 → 자유판매증명신청 클릭 후 아래 화면의 정보 작성 (신청인, 신청제품정보는 자동으로 입력 됨)

신청 사항

제품명	한글명 영문명	발급구분
신청대상선택	영문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품목/유형	한글명 영문명	신고번호/승인번호
	영문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유효기간 만료일		
제조회사명	한글명 영문명	
	제조회사명을 입력하세요 영문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제조사 주소	한글명 영문명	제조사 우편번호
	제조사 주소를 입력하세요 포털(네이버 등)에서 한글 주소를 변환하시어, 변환된 영문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 '신청대상선택'을 클릭하여 신고가 완료된 제품중 자유판매증명서발급을 희망하는 제품의 제품명을 선택.(제품명, 발급구분, 품목/유형, 신고번호/승인번호, 유효기간만료일은 자동으로 입력됨)
- 제조회사명 : 한글명, 영문명 기입
- 제조사 주소 : 한글명 영문명 기입. 영문 주소는 포털사이트에서 한글주소를 변환하여 변환된 영문 주소를 그대로 입력

□ 제조회사명과 동일

수출업체명	한글명 영문명	수출업체명을 입력하세요. 영문명을 입력하세요.
품목/유형	한글명 영문명	수출업체명을 입력하세요. 수출업체 수소를 영문으로 입력하세요
수입업체명 (영문명)	수입업체명을 영문으로 입력하세요.	수입국
수입업체 주소 (영문명)	수입업체 주소를 영문으로 입력하세요.	=선택=
제조사 주소	수입업체 요구사항 파일이 첨부되었을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 수출업체 정보 : 제조회사 정보와 다를 경우 직접 입력하고, 동일한 경우 '제조회사명과 동일' 체크
- 수입업체 정보 : 수입업체명과 수입업체 주소를 영어로 직접 입력하고 수입국은 화살표 클릭 후 선택. '비고'는 수입업체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파일이 첨부되면 활성화 됨

첨부 서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업로드
수입업체 요구사항		업로드
기타첨부 서류	추가 선택	업로드

임시저장

제출

목록

- 신고 완료된 신고증명서 화면에서 신고 증명서를 출력하여 파일을 저장 한 후 신고증명서를 첨부
- 수입업체요구사항(선택사항): '비고(Remark)'에 수입업체로부터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요구받았을 경우 혹은 기타첨부해야할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한 파일을 첨부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제출'을 클릭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됨 (단, 수정보완요청기간은 제외)

6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 승계 통보 절차

-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인) → 민원 접수(기술원) → 변경신고 수리(기술원) → 승계제품* 변경신고(신청인) → 변경신고 수리(기술원)

*수입인 경우에는 파생제품 각각 승계 필요

■ 제출 서류

- 안생품 확인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 * 승계인 :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 회사
 - * 여러 제품을 승계하신 경우도 신고번호·승인번호를 추가하여 작성
- 양도양수 계약서
 - * 공증 제출 시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지 않음
- 인감증명서(양도양수 계약서에 인감 날인 시) 각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양수 계약서에 서명 시) 각 1부(양수자, 양도자)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각 1부(양수자, 양도자)
 -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등록증 각 1부 추가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제품별 각 1부)
 -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출력

■ 신청 절차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 → 전자민원 → 권리·의무승계 클릭 후 아래 화면의 정보 작성

최종제출

반려사유

임시저장

삭제

목록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승인일자 :

승계인(받는자)

* 승계인 정보는 신고번호 입력 시 자동 적용되며 신청인은 볼 수 없음

상호(명칭)	XXXX	사업자등록번호	XXXX
성명(대표자)	XXXX	국적 또는 소속국가	XXXX
소재지	XXXX		
전화번호	XXXX	팩스번호	XXXX

피승계인(주는자)

상호(명칭)	XXXX	사업자등록번호	XXXX
성명(대표자)	XXXX	국적 또는 소속국가	XXXX
소재지	XXXX		
전화번호	XXXX	팩스번호	XXXX

승계정보

승계구분	☒ 상속 ☐ 양도·양수 ☐ 합병
승계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고번호 검색	검색
검색결과	추가

신고번호		삭제
		삭제
		삭제

첨부서류

권리·의무승계통보서		파일첨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품별 각 1부)		파일첨부
양도양수 계약서		파일첨부
[양도양수인] 인감증명서 or 개인서명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or 사업자등록증(개인)		파일첨부

부록 6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4

101

■ 권리·의무 승계 통보서 작성 예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0.12.3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V]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살생물물질 승인 · 변경승인 []

살생물제품 승인 · 변경승인 []

권리 · 의무 승계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일
승계인 (받는 자)	상호(명칭) 조은향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조향기 (생년월일) '60.1.1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대한민국	
	소재지(사업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자우편 : 02-123-1234) (팩스번호 : 02-123-123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번호 AA00-00-0000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해당 없음			
피승계인 (주는 자)	상호(명칭) (주)박대표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222-22-22222	
	성명(대표자) 박대표 (생년월일) '61.1.1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대한민국	
	소재지(사업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B동 222-22		
(전자우편 : 02-3333-3333) (팩스번호 : 02-4444-4444)			
승계구분	[] 상속	[x] 양도·양수	[] 합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21 년 0 월 0 일
통보인 조향기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 승인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물질승인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보인 조향기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결제	➔	통보
통보인				처리기관 : 환경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예시

※ 아래 양식은 참고용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00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00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양도·양수대상)

(1) 아래표의 물질 또는 제품의 모든 법적 권리 및 의무

제품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번호	비고
000000	AA00-00-0000	

(2) 제조·검사(시험)설비 일체(선택사항 : 제조업자인 경우에 한함)

제 2 조(양도·양수 의무) “갑”은 제1조의 양도·양수대상품을 “을”에게 양도 체결 이후, 위의 물질 또는 제품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 및 의무를 “을”에 양도하며, “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변경사항을 즉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을 지불한다.

제 3 조(사후관리) “을”은 “갑”의 제1조의 양도·양수대상품에 대하여 A/S 및 리콜 등 제반적인 법적 의무를 책임을 진다.

제 4 조(기타) 위와 같이 계약·체결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0 년 00 월 00 일

“갑” 상 호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대표자) : (인)

“을” 상 호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대표자) : (인)

7 위해성 평가 신청

■ 법적 근거

-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위해성평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제5조제3항 및 품목별 안전기준

관련 근거

고시 제5조(안전기준)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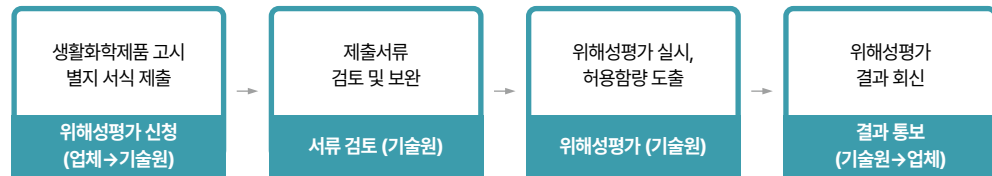
- 안전기준 설정시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이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 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 위해성평가 신청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안전기준 설정 시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연번	대상 구분	상세내용
1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고시 내 품목별 안전기준 <표4> 사용가능 주성분 이외의 물질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2	지속방출형 제품 (밀폐공간용)	안전기준 설정 시 반영되지 않은 제형으로, 기존 시험방법으로 안전기준을 적용 할 수 없는 제품 (예: 신발장용 이산화염소 스틱)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로 <표2> 방출량 제한물질 이외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
4	마스크용 방향제	마스크에 뿌리거나 부착하여 방향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5	기타	그 외 별도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

■ 위해성평가 절차



<위해성평가 신청에 따른 업무 절차>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메일(center@keitir.re.kr)을 통해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 ① 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설정시 반영되지 않은 제형·용도 등의 제품 또는 시험방법이 없는 물질 사용시 : [별지 제6호 서식] 위해성평가 신청서 제출
 - ② 방출량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시 : [별지 제9호 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제출

위해성평가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

√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 작성에 따른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설명서(제품용도, 사용방법, 작용원리, 제품사진 등)
- 노출 시나리오(사용자, 노출대상, 노출빈도, 교체주기 등)
- 물리·화학적 특성자료
-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만성 또는 아만성 흡입독성자료 등 독성정보)
- 방출량 테스트 결과 성적서(이산화염소 지속방출제품,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등에 해당)
- 기타 안전성 입증에 위해 필요한 자료

■ 위해성평가 신청서[별지 제6호 또는 제 9호 서식] 작성예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위해성평가 신청서				
제출자	상호(명칭)	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성명 (대표자)	홍길동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홍길동 010-000-0000 (전자우편: abc@abcd.com)
	소재지 (사업장)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전화번호: 00-000-0000) (전자우편: 00-000-0000)		
제품 정보	품목	살균제	제품명	000 살균제
	용도	일반용(일반물체용)	제형	분무기형
	제조국명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사 (수입제품의 경우)	
물질 정보	물질명	CAS 번호	배합비(%)	제품내 용도
	에탄올	64-17-5	70	살균
	물	7732-18-5	30	용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5조 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당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대표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모바일 검증

4

부록 8)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모바일 검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9호 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제출자	상호(명칭)	(주) 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성명 (대표자)	홍길동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홍길동 010-000-0000 (전자우편: abc@abcd.com)
	소재지 (사업장)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전화번호: 00-000-0000) (전자우편: 00-000-0000)		
제품 정보	제품명	000 필터	용도	공기청정기용
	제조업체명	(주)가나다	제조업체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제조국명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자 (수입제품의 경우)	
물질 정보	물질명	CAS 번호	사용량(mg/kg)	① 방출량(mg)
	은	7440-22-4	10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에 따라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당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대표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법적 근거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인쇄된 문서의 위·변조 여부 검증

■ 검증 방법

- ① 모바일 앱 설치 → ② 증명서 검증 → ③ 문서의 원본정보 확인



Android : Google 플레이스토어 접속



iOS : Apple 앱스토어 접속

▶ OS별 스토어 접속 후 “마크애니” 검색

▶ “MaSmartDectector(Markany)” App 다운로드 설치 및 실행

검증 APP 검색



검색 창 “마크애니” 검색 및 다운

검증 APP 실행



“바코드 검증” 실행

문서 촬영 실행



출력된 증명서 촬영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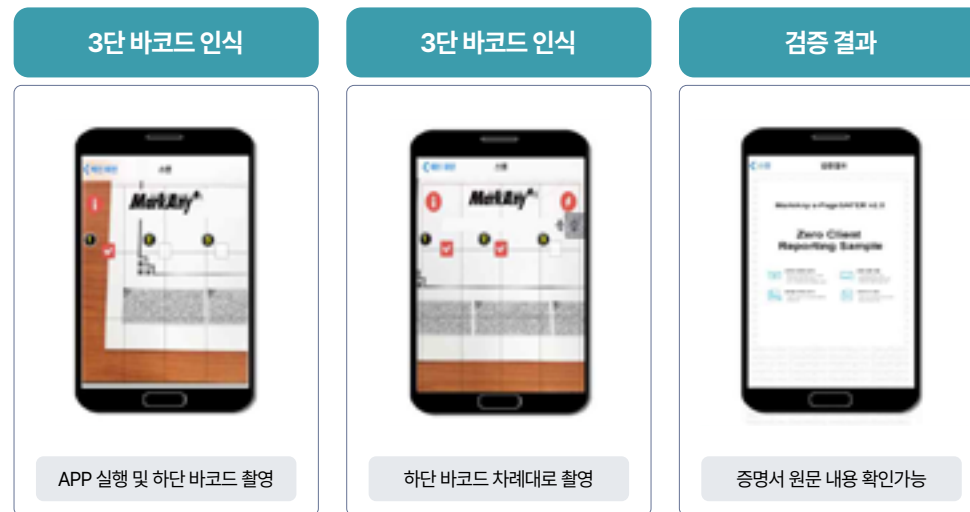
<모바일 검증 프로그램 실행화면>

■ 검증 방법

- ① 모바일 앱 설치 → ② 증명서 검증 → ③ 문서의 원본정보 확인

다음은 모바일 검증 프로세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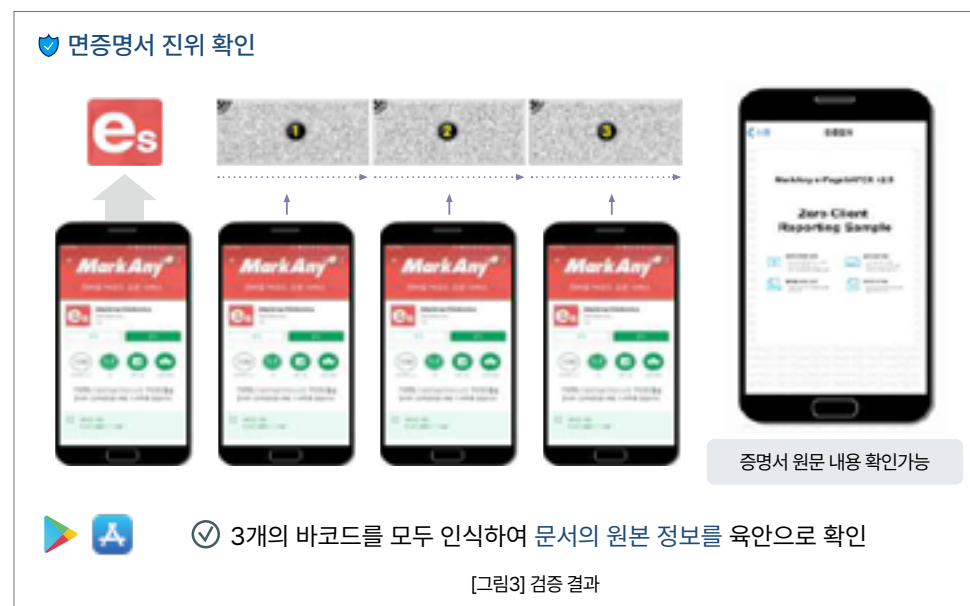
▶ [앱 실행] - [바코드검증] - [증명서 바코드 촬영] 순서로 진행 합니다.



[그림 2] 스마트폰을 통한 검증 과정

- ① 모바일 앱 설치 → ② 증명서 검증 → ③ 문서의 원본정보 확인

검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육안으로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1. 세정제	114	18. 자동차용 부동액	161
2. 제거제	118	19. 인쇄용 잉크·토너	165
3. 세탁세제	121	20. 인주	167
4. 표백제	123	21.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169
5. 섬유유연제	125	22. 미용 접착제	170
6. 광택 코팅제	128	23. 문신용 염료	173
7. 특수목적코팅제	132	24. 살균제	177
8. 녹 방지제	135	25. 살조제	181
9. 윤활제	138	26. 기피제	183
10. 다림질보조제	141	27. 목재용 보존제	186
11. 접착제	142	28.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188
12. 접합제	145	29. 초	190
13. 방향제	147	30. 습기제거제	192
14. 탈취제	150	31. 인공 눈 스프레이	194
15. 물체 염색제	153	32. 공연용 포그액	196
16. 물체 도색제	156	33. 용기 또는 포장, 중량	198
17. 자동차용 워셔액	158	34. 어린이보호포장	199

1 품목별 안전기준

1.1 세정제(Cleaner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행균 과정 등을 거치는 제품으로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

- 1)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품(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 2)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세척제, 행균보조제 등)
-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영유아용, 목욕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 4) 인체에 직접 부착 또는 삽입, 접촉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세정제(가발용 세정제, 생리컵 세정제 등)
- 5)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아닌 병원 내 의료행위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세정제(의료기기 세정제 등)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비소	7440-38-2 etc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4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5	디클로로메탄	75-09-2	전 제형	_ ¹⁾
6	납	7439-92-1 etc	전 제형	1 이하
7	브롬화에틸	74-96-4	전 제형	_ ¹⁾
8	노닐페놀류	-	전 제형	_ ¹⁾
9	미세플라스틱 ²⁾	-	전 제형	_ ¹⁾
10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_ ¹⁾
11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_ ¹⁾
12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_ ¹⁾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_ ¹⁾
14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_ ¹⁾
15	염화벤잘코늄류 ³⁾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_ ¹⁾
16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_ ¹⁾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_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²⁾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³⁾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mg/kg)			
			일반용 ¹⁾		자동차용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1	폼알데하이드	50-00-0	60 이하 ²⁾	60 이하 ²⁾	60 이하 ²⁾	170 이하 ²⁾
2	벤젠	71-43-2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90 이하
3	염산 또는 황산 ²⁾	7647-01-0 7664-93-9	HCl로써 0.04%(w/w) 미만	HCl로써 10%(w/w)미만	HCl로써 0.04%(w/w) 미만	HCl로써 2%(w/w)미만
4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³⁾	1310-73-2 1310-58-3	NaOH로써 5%(w/w)미만	NaOH로써 5%(w/w)미만	NaOH로써 5%(w/w)미만	NaOH로써 5%(w/w)미만
5	1,2-디클로로프로판*	78-87-5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80 이하
6	1-메톡시-2-프로판올*	1589-47-5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4,400 이하
7	산화세륨*	1306-38-3 etc	Ce로써 160 이하	Ce로써 15 이하	Ce로써 15 이하	_ ⁴⁾

*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함

주¹⁾ 자동차용 전용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²⁾ 염산 또는 황산을 함유한 세정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³⁾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세정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⁴⁾ 함량 제한 없음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w/w)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¹⁾	자동차용 (외부용)	일반용 ¹⁾	자동차용 (외부용)
1	프로필렌글리콜	57-55-6	35 이하	- ⁴⁾	30 이하	- ⁴⁾
2	개미산	64-18-6	0.5 이하	50 이하	1 이하	10 이하
3	메탄올	67-56-1	2 이하	35 이하	- ⁴⁾	- ⁴⁾
4	2-프로판올	67-63-0	10 이하	- ⁴⁾	20 이하	- ⁴⁾
5	아세톤	67-64-1	10 이하	10 이하	- ⁴⁾	- ⁴⁾
6	나프탈렌	91-20-3	0.2 이하	10 이하	0.01 이하	0.2 이하
7	벤질알코올	100-51-6	13 이하	65 이하	3 이하	- ⁴⁾
8	에틸렌글리콜	107-21-1	35 이하	- ⁴⁾	20 이하	- ⁴⁾
9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11-30-8	0.02 이하	6 이하	0.002 이하	15 이하
10	살리실산메틸	119-36-8	20 이하	20 이하	- ⁴⁾	- ⁴⁾
11	벤조산벤질	120-51-4	0.1 이하	0.1 이하	20 이하	- ⁴⁾
12	에탄올아민	141-43-5	0.04 이하	0.4 이하	0.04 이하	0.4 이하
13	자일렌(o-,m-,p-총합)	108-38-3 106-42-3 95-47-6	3 이하	8 이하	2 이하	20 이하
14	1,2-벤즈아이스티아졸-3(2H)-온 (BIT)	2634-33-5	8 이하	16 이하	- ⁴⁾	- ⁴⁾
15	트리클로산	3380-34-5	2 이하	2 이하	2 이하	-
16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7173-51-5	0.1 이하	0.4 이하	1 이하	15 이하
17	은	7440-22-4 etc	7 이하	5 이하	- ⁴⁾	- ⁴⁾
18	구리	7440-50-8 etc	12 이하	23 이하	- ⁴⁾	- ⁴⁾
19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0.05 이하	- ⁴⁾	3.5 이하	60 이하
20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0.1 이하	0.3 이하	0.3 이하	5.8 이하
2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45 이하	- ⁴⁾	10 이하	- ⁴⁾
22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111-76-2	4 이하	14 이하	3 이하	25 이하
23	에탄올	64-17-5	- ⁴⁾	- ⁴⁾	45 이하	- ⁴⁾
24	3-요오드-2-프로필일 뷰틸 카바민산 (IPBC)	55406-53-6	- ⁴⁾	- ⁴⁾	10 이하	65 이하
25	펜에탄올	60-12-8	10 이하	- ⁴⁾	55 이하	- ⁴⁾
26	2,6-다이-tert-부틸-p-크레졸	128-37-0	2 이하	2 이하	2 이하	40 이하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w/w)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¹⁾	자동차용 (외부용)	일반용 ¹⁾	자동차용 (외부용)
27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2 이하	- ⁴⁾	70 이하	- ⁴⁾
28	과산화수소	7722-84-1	0.3 이하	1 이하	0.1 이하	1 이하
29	모르폴린	110-91-8	5 이하	- ⁴⁾	1 이하	7 이하
30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60-00-4	- ⁴⁾	10 이하	- ⁴⁾	3 이하
31	글리옥살	107-22-2	0.01 이하	- ⁴⁾	0.002 이하	15 이하
32	산화에틸렌	75-21-8	3 이하	- ⁴⁾	0.4 이하	- ⁴⁾
33	벤조산	65-85-0	1 이하	- ⁴⁾	20 이하	65 이하
34	플루오르화 수소	7664-39-3	10 이하	- ⁴⁾		- ⁴⁾
35	소듐 피리싸이온	3811-73-2	15 이하	0.3 이하	0.02 이하	15 이하
36	아연 피리싸이온	13463-41-7	0.1 이하	- ⁴⁾	55 이하	- ⁴⁾
37	클로로벤젠	108-90-7	1 이하	- ⁴⁾	2 이하	10이하
38	2-메톡시에탄올	109-86-4	0.4	7이하	0.05 이하	0.3 이하
39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2682-20-4 26172-55-4 55965-84-9 etc	함유금지	함유금지	0.02 이하	0.2 이하
40	아크릴산	79-10-7	0.02 이하	0.07 이하	0.02 이하	- ⁴⁾
41	이산화염소	10049-04-4	40 이하 ³⁾	40 이하 ³⁾	10 이하 ³⁾	2,000이하 ³⁾

주¹⁾ 실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외관 전용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³⁾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⁴⁾ 함량 제한 없음

⑤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1)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벤조산나트륨(532-32-1), 차아염소산류(7790-92-3, 7778-54-3, 7681-52-9), 리날로올(78-70-6), 제라니올(106-24-1), 탄산나트륨(497-19-8), 2-페녹시에탄올(122-99-6), 프로필알코올(71-23-8)

<비분사형 제품>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제거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2 제거제(Remover)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의류 등 섬유의 얼룩을 제거하는 제품 등은 제외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3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4	디클로로메탄	75-09-2	전 제형	~ ¹⁾
5	납	7439-92-1 etc	전 제형	1 이하
6	비소	7440-38-2 etc	전 제형	5 이하
7	브롬화에틸	74-96-4	전 제형	~ ¹⁾
8	노닐페놀류	-	전 제형	~ ¹⁾
9	미세플라스틱 ²⁾	-	전 제형	~ ¹⁾
10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11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12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1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4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5	염화벤잘코늄류 ³⁾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16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²⁾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³⁾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mg/kg)			
			일반용 ¹⁾		자동차용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1	폼알데하이드	50-00-0	60 이하 ²⁾	60 이하 ²⁾	60 이하 ²⁾	170 이하 ²⁾
2	벤젠	71-43-2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90 이하
3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³⁾	1310-73-2 1310-58-3	NaOH로써 5%(w/w)미만	NaOH로써 5%(w/w)미만	NaOH로써 5%(w/w)미만	NaOH로써 5%(w/w)미만

주¹⁾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²⁾ 접촉제거제용에 한해 1,000 mg/kg 이하 적용

³⁾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제거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농도임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w/w)	
			분사형	비분사형
1	프로필렌글리콜	57-55-6	~ ¹⁾	65 이하
2	개미산	64-18-6	20 이하	8 이하
3	나프탈렌	91-20-3	0.2 이하	0.1 이하
4	벤질알코올	100-51-6	65 이하	20 이하
5	에틸렌글리콜	107-21-1	~ ¹⁾	30 이하
6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11-30-8	0.03 이하	0.01 이하
7	에탄올아민	141-43-5	1 이하	0.2 이하
8	자일렌(o-, m-, p-총합)	108-38-3 106-42-3 95-47-6	40 이하	15 이하
9	트리클로산	3380-34-5	15 이하	20 이하
10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7173-51-5	5 이하	9 이하
11	은	7440-22-4 etc	70 이하	~ ¹⁾
12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2 이하	~ ¹⁾
13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4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45 이하	45 이하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w/w)	
			분사형	비분사형
14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 ¹⁾	75 이하
15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111-76-2	55 이하	20 이하
16	3-요오드-2-프로판일 뷰틸 카바민산(IPBC)	55406-53-6	65 이하	- ¹⁾
17	2,6-다이-tert-부틸-p-크레졸	128-37-0	15 이하	20 이하
18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55 이하	- ¹⁾
19	과산화 수소	7722-84-1	2 이하	1 이하
20	모르폴린	110-91-8	15 이하	5 이하
21	글리옥살	107-22-2	0.03 이하	0.01 이하
22	산화에틸렌	75-21-8	7 이하	2 이하
23	벤조산	65-85-0	- ¹⁾	50 이하
24	소듐 피리싸이온	3811-73-2	75 이하	- ¹⁾
25	클로로벤젠	108-90-7	40 이하	15 이하
26	2-메톡시에탄올	109-86-4	1 이하	0.3 이하
27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2682-20-4 26172-55-4 55965-84-9 etc	함유금지	함유금지
28	산 또는 황산 ³⁾	7647-01-0 7664-93-9	HCl로써 1 이하	HCl로써 0.4 이하

주¹⁾ 함량 제한 없음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³⁾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⑤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1)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리날로올(78-70-6), 2-페녹시에탄올(122-99-6), 프로필알코올(71-23-8),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2634-33-5)

<비분사형 제품>

-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제거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3 세탁세제(Laundry detergent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의류 등 섬유의 얼룩을 제거하는 제품 등은 제외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3	비소	7440-38-2 etc	전 제형	5 이하
4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5	브롬화에틸	74-96-4	전 제형	- ¹⁾
6	미세플라스틱 ²⁾	-	전 제형	- ¹⁾
7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8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9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10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1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2	염화벤잘코늄류 ³⁾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13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1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 한계 미만

²⁾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³⁾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구분	CAS No.	적용 제형	함량 기준(mg/kg)
1	전인산염	14265-44-2	전제형	10,000 이하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함량 기준%(w/w)
1	머스크 케톤	81-14-1	전제형	6 이하
2	1,2-이염화에탄	107-06-2	전제형	60 이하
3	모노에탄올아민	141-43-5	전제형	40 이하
4	트리클로산	3380-34-5	전제형	10 이하
5	염화디옥틸디메틸암모늄	5538-94-3	전제형	12 이하
6	은	7440-22-4 etc	전제형	80 이하
7	과산화수소	7722-84-1	전제형	25 이하
8	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10543-57-4	전제형	45 이하
9	소듐 피리싸이온	3811-73-2	전제형	8 이하

⑤ 생분해도

* 제품 내 합성계면활성제가 포함된 경우 다음 규격중 하나에 적합해야 함

No	구분	KS I ISO 9439	KS I ISO 7827
1	생분해도	60% 이상	70% 이상

⑥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1)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벤조산나트륨(532-32-1), 에탄올(64-17-5)

<비분사형 제품>

-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세탁세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4 표백제(Bleaching agent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의류 등에 묻은 때를 없애고 변색된 상태를 희게 하거나 원색을 선명하게하기 위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2	비소	7440-38-2 etc	전 제형	5 이하
3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4	브롬화에틸	74-96-4	전 제형	- ¹⁾
5	미세플라스틱 ²⁾	-	전 제형	- ¹⁾
6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7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8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9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0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1	염화벤잘코늄류 ³⁾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12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 (NaDCC)	2893-78-9	분사형	- ¹⁾
1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 한계 미만

²⁾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³⁾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수소이온농도	CAS No.	적용 제형	함량 기준(mg/kg)
1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¹⁾	1310-73-2 1310-58-3	전제형	NaOH로써 5% (w/w) 미만
2	전인산염	14265-44-2	전제형	10,000 이하
3	과산화수소 ²⁾	7722-84-1	전제형	15 %(w/w) 이하

주¹⁾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표백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²⁾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표백제에 대하여 적용

1.5 섬유유연제(Fabric softener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의류 등을 세탁 또는 건조할 때 섬유를 부드럽게 하거나,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2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3	카드뮴	7440-43-9 etc	전 제형	1 이하
4	수은	7439-97-6 etc	전 제형	1 이하
5	비소	7440-38-2 etc	전 제형	5 이하
6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APEOs;alkylphenol ethoxylates)계 및 알킬페놀(alkylphenol)계	-	전 제형	- ¹⁾
7	디알킬(C12-C18)디메틸염화암모늄계	68391-05-9	전 제형	- ¹⁾
8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9	브롬화에틸	74-96-4	전 제형	- ¹⁾
10	2,2'-이미노다이에탄올	111-42-2	전 제형	- ¹⁾
11	형광증백제	-	전 제형	- ¹⁾
12	미세플라스틱 ²⁾	-	전 제형	- ¹⁾
13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14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15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16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7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8	염화벤잘코늄류 ³⁾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9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2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²⁾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³⁾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함량 기준(mg/kg)
1	폼알데하이드	50-00-0	전제형	75 이하
2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11-30-8	전제형	1,000 이하
3	파라벤류 ¹⁾	99-76-3 94-26-8 120-47-8 857-25-9 94-13-3 4191-73-5	전제형	단일물질 4,000 이하, 혼합물질 8,000 이하
4	2-페녹시에탄올	122-99-6	전제형	10,000 이하
5	트리클로산	3380-34-5	전제형	1,000 이하
6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²⁾	2682-20-4 55965-84-9 etc	전제형	100 이하
7	5-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 ²⁾	26172-55-4 55965-84-9 etc	전제형	15 이하
8	벤즈이소치아졸리논	2634-33-5	전제형	500 이하
9	벤조산	65-85-0	전제형	5,000 이하
10	벤질알코올	100-51-6	전제형	10,000 이하
11	납	7439-92-1 etc	전제형	20 이하
12	리모넨 ³⁾	138-86-3 5989-27-5 5989-54-8	전제형	10,000 이하
13	1,4-다이옥세인	123-91-1	전제형	100 이하

주¹⁾ 파라벤류 : 메틸파라벤, 부틸파라벤, 에틸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²⁾ 분사형을 제외한 비분사형 섬유유연제에 대하여 적용

³⁾ D-리모넨 및 L-리모넨 포함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함량 기준 %(w/w)
1	개미산	64-18-6	전제형	10 이하
2	모노에탄올아민	141-43-5	전제형	10 이하
3	은	7440-22-4 etc	전제형	9 이하
4	염산 또는 황산 ¹⁾	7647-01-0 7664-93-9	전제형	HCl로써 0.4 미만 (농축형 HCl로써 1.2 이하)
5	과산화수소	7722-84-1	전제형	4 이하

주¹⁾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⑤ 생분해도

* 제품 내 합성계면활성제가 포함된 경우 다음 규격중 하나에 적합해야 함

No	구분	KS I ISO 9439	KS I ISO 7827
1	생분해도	60% 이상	70% 이상

*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⑥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1)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에탄올(64-17-5)

<비분사형 제품>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 3), 4)에 해당하는 섬유유연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6 광택코팅제(Gloss coating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물체에 광택효과를 내기 위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페닐주석화합물	-	전 제형	_ ¹⁾
3	트리부틸주석화합물	-	전 제형	_ ¹⁾
4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6	디메틸포름아미드	68-12-2	전 제형	_ ¹⁾
7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_ ¹⁾
8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_ ¹⁾
9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_ ¹⁾
10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_ ¹⁾
11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_ ¹⁾
12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_ ¹⁾
13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_ ¹⁾
1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주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mg/kg)			
			일반용 ¹⁾		자동차용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1	폼알데하이드	50-00-0	70 이하	120 이하	20 이하	17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90 이하	150 이하	20 이하	300 이하
3	벤젠	71-43-2	20 이하	60 이하	10 이하	90 이하
4	나프탈렌	91-20-3	20 이하	100 이하	20 이하	200 이하
5	망간*	7439-96-5 etc	100 이하	_ ²⁾	_ ²⁾	_ ²⁾
6	지르코늄*	7440-67-7 etc	400 이하	320 이하	1,800 이하	3,500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함

주¹⁾ 자동차용 전용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주²⁾ 함량 제한 없음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¹⁾	실외용	실내용 ¹⁾	실외용
1	에탄올	64-17-5	30 이하	_ ³⁾	_ ³⁾	_ ³⁾
2	벤조산벤질	120-51-4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3	프로필렌글리콜	57-55-6	8 이하	_ ³⁾	_ ³⁾	_ ³⁾
4	펜에탄올	60-12-8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_ ³⁾
5	다이프로필렌 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10 이하	55 이하	40 이하	60 이하
6	1,2-벤즈아이스티졸 -3(2H)-온(BIT)	2634-33-5	1 이하	_ ³⁾	_ ³⁾	_ ³⁾
7	2,6-다이-터트 -뷰틸-P-크레졸	128-37-0	2 이하	2 이하	2 이하	5 이하
8	2-프로판올	67-63-0	15 이하	_ ³⁾	40 이하	_ ³⁾
9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30 이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10	에틸렌글리콜	107-21-1	4 이하	30 이하	_ ³⁾	_ ³⁾
11	벤질알코올	100-51-6	3 이하	35 이하	80 이하	45 이하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¹⁾	실외용	실내용 ¹⁾	실외용
12	2-부톡시에탄올 (부틸셀솔브)	111-76-2	2.5 이하	이하 23 이하	8 이하	15 이하
13	3-요오드-2-프로필인 뷰틸 카바민산(IPBC)	55406-53-6	5 이하	10 이하	10 이하	20 이하
14	메탄올	67-56-1	10 이하	— ³⁾	60 이하	— ³⁾
15	자일렌(o-,m-,p-총합)	108-38-3 106-42-3 95-47-6	2 이하	20 이하	5 이하	10 이하
16	개미산	64-18-6	1 이하	10 이하	1 이하	5 이하
17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8	염산 또는 황산 ²⁾	7647-01-0 7664-93-9	HCl로써 0.05 미만	HCl로써 1 미만	HCl로써 0.1 미만	HCl로써 0.3 미만
19	은	7440-22-4 etc	1 이하	— ³⁾	— ³⁾	— ³⁾
20	모르폴린	110-91-8	1 이하	7 이하	1 이하	4 이하
21	프로필알코올	71-23-8	65 이하	— ³⁾	85 이하	— ³⁾
22	살리실산메틸	119-36-8	20 이하	— ³⁾	30 이하	60 이하
23	1-헥사데칸올	36653-82-4	25 이하	— ³⁾	— ³⁾	— ³⁾
24	이산화규소	7631-86-9 etc	10 이하	— ³⁾	— ³⁾	— ³⁾
25	산화에틸렌	75-21-8	0.3 이하	4 이하	15 이하	5 이하
26	구리	7440-50-8 etc	6 이하	— ³⁾	— ³⁾	— ³⁾
27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111-77-3	9 이하	50 이하	85 이하	60 이하
28	1,4-디클로로벤젠	106-46-7	2 이하	20 이하	2 이하	10 이하
29	디클로로메탄	75-09-2	10 이하	— ³⁾	65 이하	— ³⁾
30	아연 피리싸이온	13463-41-7	4 이하	5 이하	55 이하	50 이하
3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 논(CMIT)의 합	2682-20-4 26172-55-4 55965-84-9 etc	함유금지	함유금지	0.1 이하	0.1 이하
32	염화벤잘코늄류 ⁴⁾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0.5 이하	10 이하	5 이하	20 이하
33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7173-51-5	0.07 이하	1.5 이하	3 이하	12 이하

⑤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1)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리날올(78-70-6), 제라니올(106-24-1), 탄산나트륨(497-19-8), 2-페녹시에탄올(122-99-6), 아세톤(67-64-1), 1,3-디클로로프로펜(205-531-3)

<비분사형 제품>

-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광택코팅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7 특수목적코팅제(Special purpose coating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물체의 표면에 도포하여 얇은 막을 생성함으로써 오염, 정전기, 김서림, 미끄럼, 물이 스며드는 것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 기능의 제품으로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

- 1) 「식품위생법」제2조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코팅제
- 2)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에 사용되는 방수, 발수제 등 보수용품
- 3) 자동차 내부 부품의 부식 및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제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염화비닐	75-01-4	전 제품(전 제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품(전 제형)	5 이하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품(전 제형)	5 이하
4	트리페닐주석화합물	-	전 제품(전 제형)	_ ¹⁾
5	트리부틸주석화합물	-	전 제품(전 제형)	_ ¹⁾
6	니켈	7440-02-0 etc	전 제품(분사형)	1 이하
7	디메틸포름아미드	68-12-2	전 제품(전 제형)	_ ¹⁾
8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계 및 알킬페놀 (alkylphenol)계	140-66-9 2315-67-5 2315-61-9 11066-49-2 140-35-8 20427-84-3 etc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_ ¹⁾
9	디알킬(C12-C18)디메틸염화암모늄계	68391-05-9	정전기방지용(전 제형)	_ ¹⁾
10	2,2'-이미노다이에탄올	111-42-2	정전기방지용(전 제형)	_ ¹⁾
11	납	7439-92-1 etc	정전기방지용(전 제형)	1 이하
12	카드뮴	7440-43-9 etc	정전기방지용(전 제형)	1 이하
13	수은	7439-97-6 etc	정전기방지용(전 제형)	1 이하
14	비소	7440-38-2 etc	정전기방지용(전 제형)	5 이하
15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_ ¹⁾
16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_ ¹⁾
17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_ ¹⁾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8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_ ¹⁾
19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_ ¹⁾
20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_ ¹⁾
21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_ ¹⁾
2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_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 한계 미만

주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mg/kg)			
			일반용 ¹⁾		자동차용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²⁾	외부용
1	폼알데하이드	50-00-0	70 이하	120 이하	20 이하	17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90 이하	150 이하	20 이하	300 이하
3	벤젠	71-43-2	30 이하	60 이하	10 이하	90 이하
4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117-81-7	500 이하	1,0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5	글루타르알데하이드 ³⁾	111-30-8	30 이하	150 이하	_ ⁴⁾	_ ⁴⁾
6	1,4-다이옥세인 ³⁾	123-91-1	20 이하	150 이하	_ ⁴⁾	_ ⁴⁾
7	나프탈렌	91-20-3	20 이하	100 이하	20 이하	200 이하

주¹⁾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주²⁾ 발수용 제품은 제외

주³⁾ 정전기방지용에 한함

주⁴⁾ 함량 제한 없음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¹⁾	실외용	실내용 ¹⁾	실외용
1	에탄올	64-17-5	30 이하	— ²⁾	— ²⁾	— ²⁾
2	자일렌(o-,m-,p-총합)	108-38-3 106-42-3 95-47-6	2 이하	20 이하	5 이하	10 이하
3	프로필렌글리콜	57-55-6	35 이하	35 이하	— ²⁾	— ²⁾
4	다이프로필렌 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45 이하	45 이하	— ²⁾	— ²⁾
5	2-프로판올	67-63-0	75 이하	75 이하	— ²⁾	— ²⁾
6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35 이하	35 이하	70 이하	70 이하
7	에틸렌글리콜	107-21-1	15 이하	15 이하	— ²⁾	— ²⁾
8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의 합	2682-20-4 26172-55-4 55965-84-9	함유금지	함유금지	0.7 이하	0.7 이하
9	염화디테실디메틸암모늄	7173-51-5	0.2 이하	0.8 이하	1 이하	2 이하
10	2-페녹시에탄올	122-99-6	15 이하	75 이하	30 이하	75 이하

주¹⁾ 외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²⁾ 함량 제한 없음

⑤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2634-33-5), 붕사(보락스)(1303-96-4)

<비분사형 제품>

-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특수목적코팅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8 녹 방지제(Anti-rust additive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막 형성을 통해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

- 1) 배관 및 보일러용 녹 방지제
- 2) 연마제 및 녹 방지 페인트류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4	니켈	7440-02-0 etc	전 제형	— ¹⁾
5	디클로로메탄	75-09-2	전 제형	— ¹⁾
6	에틸렌디클로라이드	107-06-2	전 제형	— ¹⁾
7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8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9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10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1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2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13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1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외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²⁾ 함량 제한 없음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함량 기준(mg/kg)
1	폼알데하이드	50-00-0	전제형	7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전제형	50 이하
3	벤젠	71-43-2	전제형	10 이하
4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117-81-7	전제형	1,000 이하
5	나프탈렌	91-20-3	전제형	100 이하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 ²⁾	7 이하
2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128-37-0	10 이하	5 이하
3	2-프로판올	67-63-0	- ²⁾	40 이하
4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34590-94-8	- ²⁾	25 이하
5	자일렌(o-,m-,p-총합)	108-38-3 106-42-3 95-47-6	- ²⁾	3 이하
6	에탄올아민	141-43-5	4 이하	1 이하
7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111-77-3	- ²⁾	6 이하
8	염산 또는 황산 ¹⁾	7647-01-0 7664-93-9	HCl로써 5 미만	HCl로써 5 미만
9	염화벤잘코늄류 ³⁾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8 이하	15 이하

주¹⁾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²⁾ 함량 제한 없음

³⁾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⑤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1)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리날로올(78-70-6), 트리에탄올아민(102-71-6), 아세톤(67-64-1), 구리(7440-50-8, etc.)

<비분사형 제품>

-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녹 방지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9 윤활제(Lubricant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고형물의 표면에 기름막을 형성하여 마찰력을 최소화시켜 마찰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윤활유 및 그리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브레이크액)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내연기관용 윤활유(자동차 엔진오일 등)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4	디클로로메탄	75-09-2	전 제형	_ ¹⁾
5	에틸렌디클로라이드	107-06-2	전 제형	_ ¹⁾
6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_ ¹⁾
7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_ ¹⁾
8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_ ¹⁾
9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_ ¹⁾
10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_ ¹⁾
11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_ ¹⁾
12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_ ¹⁾
1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_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함량 기준(mg/kg)
1	폼알데하이드	50-00-0	전제형	7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전제형	50 이하
3	벤젠	71-43-2	전제형	10 이하
4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117-81-7	전제형	800 이하
5	나프탈렌	91-20-3	전제형	100 이하
6	니켈	7440-02-0 etc	전제형	100 이하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_ ²⁾	7 이하
2	2,6-다이-tert-부틸-p-크레졸	128-37-0	10 이하	5 이하
3	2-프로판올	67-63-0	_ ²⁾	40 이하
4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111-76-2	_ ²⁾	25 이하
5	자일렌(o-,m-,p-총합)	108-38-3 106-42-3 95-47-6	_ ²⁾	3 이하
6	에탄올아민	141-43-5	4 이하	1 이하
7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111-77-3	_ ²⁾	6 이하
8	염산 또는 황산 ¹⁾	7647-01-0 7664-93-9	HCl로써 5 미만	HCl로써 5 미만
9	염화벤잘코늄류 ³⁾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8 이하	15 이하

주¹⁾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²⁾ 함량 제한 없음

³⁾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⑤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리날로올(78-70-6), 트리에탄올아민(102-71-6), 아세톤(67-64-1), 구리(7440-50-8, etc.)

<비분사형 제품>

-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 2),3),4)에 해당하는 유효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10 다림질 보조제(Ironing auxiliarie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섬유의 구김 제거 등을 위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전 제형	- ¹⁾
2	폼알데하이드	50-00-0	전 제형	- ¹⁾
3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11-30-8	전 제형	- ¹⁾
4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5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6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7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8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9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10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1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주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함량 기준(mg/kg)
1	3-요오드-2-프로필릴 뷰틸 카바민산(IPBC)	55406-53-6	전제형	10 이하
2	2-프로판올	67-63-0	전제형	60 이하
3	아세톤	67-64-1	전제형	20 이하

1.11 접착제(Adhesive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을 서로 접착하기 위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에 사용되는 접착제
- 2) 시멘트류, 실리케이트 염류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접착제
- 3) 문구용·도배용 풀, 테이프 형태의 접착제
- 4) 땀납, 은납 등 금속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접착제
- 5) 미용 또는 보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접착제(가발·체모용, 가속눈썹·쌍꺼풀용, 인조손톱용 등)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및 제품	검출허용한도(mg/kg)
1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	전 제형	¹⁾
2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	전 제형	¹⁾
3	유기수은화합물	-	전 제형	¹⁾
4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PVC용 접착제 제외)	¹⁾
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584-84-9	전 제형	¹⁾
6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전제형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제외)	¹⁾
7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8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9	비소	7440-38-2 etc	분사형	5 이하
10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¹⁾
11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¹⁾
12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¹⁾
1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¹⁾
14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¹⁾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및 제품	검출허용한도(mg/kg)
15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¹⁾
16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¹⁾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주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mg/kg)			
			일반용		순간·강력용	
			분사형	비분사형	분사형	비분사형
1	폼알데하이드	50-00-0	50 이하	100 이하	50 이하 ¹⁾	100 이하 ¹⁾
2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350 이하	1,000 이하	350 이하	⁴⁾
3	클로로포름	67-66-3	120 이하	1,000 이하	120 이하	1,000 이하
4	톨루엔	108-88-3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5	디메틸포름아미드	68-12-2	300 이하	1,000 이하	300 이하	⁴⁾
6	디클로로메탄	75-09-2	200 이하	800 이하	200 이하	800 이하
7	비소	7440-38-2 etc	⁴⁾	20 이하	⁴⁾	20 이하
8	벤젠	71-43-2	20 이하	60 이하	20 이하	60 이하
9	자일렌(o-,m-,p-총합)	108-38-3 106-42-3 95-47-6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⁴⁾
10	하이드로퀴논 ²⁾	123-31-9	⁴⁾	⁴⁾	⁴⁾	1,000 이하
11	아크릴로니트릴 ²⁾	107-13-1	⁴⁾	⁴⁾	200 이하	200 이하
12	염화비닐 ³⁾	75-01-4	200 이하	200 이하	⁴⁾	⁴⁾

주¹⁾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간·강력접착제는 1% 미만을 적용

주²⁾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간·강력접착제에 적용

주³⁾ PVC (Polyvinyl chloride) 고분자를 주성분으로 한 접착제 또는 PVC용 접착제에만 적용

주⁴⁾ 함량 제한 없음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1	2,6-다이-tert-부틸-p-크레졸	128-37-0	20 이하	50 이하
2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3 이하	7 이하
3	산화에틸렌	75-21-8	50 이하	- ¹⁾
4	염화벤잘코늄류 ²⁾ *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65 이하	- ¹⁾

*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함

주¹⁾ 함량 제한 없음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⑤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에탄올(64-17-5), 프로필렌글리콜(57-55-6),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34590-94-8),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2634-33-5), 탄산나트륨(497-19-8), 2-페녹시에탄올(122-99-6), 에틸렌글리콜(107-21-1), 벤질알코올(100-51-6),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111-76-2), 3-요오드-2-프로판일 부틸 카바민산(IPBC)(55406-53-6), 메탄올(67-56-1), 자일렌(108-38-3, 106-42-3, 95-47-6), 아세톤(67-64-1), 은(7440-22-4), 프로필알코올(71-23-8), 페놀(108-95-2), t-부탄올(75-65-0)

<비분사형 제품>

-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용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접착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12 접합제(Gap and crack filler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균열이나 틈새를 채우기 위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

- 1)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에 사용되는 접합제
- 2) 차량용 퍼티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4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117-81-7	전 제형	- ¹⁾
5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6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7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8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9	a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0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11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1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1	폼알데하이드	50-00-0	10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1,000 이하
3	나프탈렌	91-20-3	2,000 이하
4	알루미늄	7429-90-5 etc	3,000 이하
5	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아세테이트	108-65-6	9,000 이하
6	1-도데칸올	112-53-8	20,000 이하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1	1,2,4-트라이메틸벤젠	95-63-6	20 이하	1.5 이하
2	1,3,5-트라이메틸벤젠	108-67-8	20 이하	1 이하
3	리튬	7439-93-2 etc	- ¹⁾	10 이하

주¹⁾ 함량 제한 없음

⑤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1)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비분사형 제품>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 3), 4)에 해당하는 접합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13 방향제(Air freshener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공간 이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

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체취방지용 등)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향기 치료제 등)

3) 제레용 향 및 말린 꽃잎 등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4) 패치·목걸이형 등 인체에 착용하거나 의류에 부착하는 제품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2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4	붕소산 사나트륨염	1330-43-4 etc	전 제형	- ¹⁾
5	1,4-디클로로벤젠	106-46-7	전 제형	- ¹⁾
6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전 제형	- ¹⁾
7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전 제형	- ¹⁾
8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전 제형	- ¹⁾
9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전 제형	- ¹⁾
10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전 제형	- ¹⁾
11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전 제형	- ¹⁾
12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전 제형	- ¹⁾
1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분사형	비분사형
1	폼알데하이드	50-00-0	12 이하	25 이하
2	메탄올	67-56-1	2,000 이하	2,000 이하
3	글리옥살	107-22-2	30 이하	70 이하
4	3-요오드-2-프로필릴 뷰틸 카바민산(IPBC)	55406-53-6	8 이하	- ¹⁾
5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17-81-7	1,600 이하	- ¹⁾
6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60 이하	300 이하
7	4-메톡시벤질알코올*	105-13-5	100 이하	- ¹⁾

*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함

주¹⁾ 함량 제한 없음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1	프로필렌글리콜	57-55-6	- ¹⁾	47 이하	- ¹⁾	- ¹⁾
2	벤조산	65-85-0	3 이하	1 이하	- ¹⁾	- ¹⁾
3	2-프로판올	67-63-0	25 이하	12 이하	- ¹⁾	- ¹⁾
4	살리실산	69-72-7	88 이하	37 이하	- ¹⁾	- ¹⁾
5	벤질알코올	100-51-6	36 이하	17 이하	- ¹⁾	- ¹⁾
6	에틸렌글리콜	107-21-1	0.2 이하	0.2 이하	- ¹⁾	- ¹⁾
7	살리실산메틸	119-36-8	27 이하	13 이하	- ¹⁾	- ¹⁾
8	1,2-벤즈아이스티졸-3(2H)-온(BIT)	2634-33-5	1.5 이하	0.7 이하	- ¹⁾	- ¹⁾
9	트리클로산	3380-34-5	26 이하	16 이하	- ¹⁾	- ¹⁾
10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7173-51-5	0.01 이하	0.005 이하	- ¹⁾	- ¹⁾
11	은	7440-22-4 etc	0.04 이하	0.02 이하	- ¹⁾	- ¹⁾
12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0.06 이하	0.04 이하	- ¹⁾	- ¹⁾
13	피레트럼	8003-34-7	1 이하	0.7 이하	- ¹⁾	- ¹⁾
14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0.4 이하	0.12 이하	- ¹⁾	- ¹⁾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15	다이프로필렌글리콜 메틸에테르	34590-94-8	- ¹⁾	57 이하	- ¹⁾	- ¹⁾
16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2 이하	1 이하	- ¹⁾	- ¹⁾
17	알파-피넨	7785-26-4 7785-70-8 80-56-8	7 이하	3 이하	39 이하	30 이하
18	다이페닐 에테르	101-84-8	1 이하	0.6 이하	7 이하	6 이하
19	아세트산 비닐	108-05-4	5 이하	2 이하	26 이하	20 이하
20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 아세테이트	5413-60-5 2500-83-6 54830-99-8	6 이하	3 이하	35 이하	27 이하

주¹⁾ 함량 제한 없음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⑤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에탄올(64-17-5), 테르피네올(98-55-5), 3,7-디메틸노나-1,6-디엔-3-올(78-70-6), 아세톤(67-64-1), 4-(2,6,6-트라이메틸-1-싸이클로헥센-1-일)-3-부텐-2-온(17283-81-7), 프로페인(74-98-6), 9-아세틸-8-세드렌(32388-55-9), 에틸 2,3-에폭시-3-페닐뷰트레이트(77-83-8), 테트라하이드로-2-이소부틸-4-메틸피란-4-올과 혼합된 이성질체(63500-71-0), 3,7-다이메틸-3-옥탄올(78-69-3), 벤질벤조에이트(120-51-4)

<비분사형 제품>

-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방향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14 탈취제(Deodorizing agent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 제품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인체·동물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등은 제외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산화에틸렌	75-21-8	전 제형	- ¹⁾
2	나프탈렌	91-20-3	전 제형	- ¹⁾
3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4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5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 ¹⁾
6	붕소산 사나트륨염	1330-43-4 etc	전 제형	- ¹⁾
7	1,4-디클로로벤젠	106-46-7	전 제형	- ¹⁾
8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9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10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1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2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3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14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1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 한계 미만

주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mg/kg)	
			분사형	비분사형
1	폼알데하이드	50-00-0	12 이하	25 이하
2	메탄올	67-56-1	2,000 이하	2,000 이하
3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70 이하	300 이하
4	이산화염소	10049-04-4	2 ¹⁾ 이하	2 ¹⁾ 이하
5	3-요오드-2-프로필일 뷰틸 카바민산(IPBC)	55406-53-6	8 이하	- ²⁾
6	글리옥살	107-22-2	30 이하	70 이하

주¹⁾ 액상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주²⁾ 함량 제한 없음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 공간용 ¹⁾	물체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1	프로필렌글리콜	57-55-6	- ²⁾	- ²⁾	46 이하	- ²⁾	- ²⁾
2	벤조산	65-85-0	3 이하	10 이하	1 이하	- ²⁾	- ²⁾
3	2-프로판올	67-63-0	20 이하	24 이하	12 이하	- ²⁾	- ²⁾
4	살리실산	69-72-7	81 이하	19 이하	37 이하	- ²⁾	- ²⁾
5	벤질알코올	100-51-6	32 이하	34 이하	16 이하	- ²⁾	- ²⁾
6	에틸렌글리콜	107-21-1	0.2 이하	6 이하	0.2 이하	- ²⁾	- ²⁾
7	살리실산메틸	119-36-8	25 이하	26 이하	13 이하	- ²⁾	- ²⁾
8	벤조산벤질	120-51-4	75 이하	27 이하	75 이하	- ²⁾	- ²⁾
9	1,2-벤즈아이스티졸 -3(2H)-온(BIT)	2634-33-5	1.3 이하	1 이하	0.68 이하	- ²⁾	- ²⁾
10	트리클로산	3380-34-5	8 이하	3 이하	16 이하	- ²⁾	- ²⁾
11	염화디데실 디메틸암모늄	7173-51-5	0.01 이하	0.18 이하	0.0015 이하	- ²⁾	- ²⁾
12	은	7440-22-4 etc	0.04 이하	0.3 이하	0.02 이하	- ²⁾	- ²⁾
13	염화벤잘코늄류 ³⁾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0.06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 ²⁾	- ²⁾
15	피레트럼	8003-34-7	1 이하	1 이하	0.7 이하	- ²⁾	- ²⁾
16	2-옥틸-3(2H) -이소티아졸론	26530-20-1	0.3 이하	0.4 이하	0.1 이하	- ²⁾	- ²⁾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 공간용 ¹⁾	물체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17	다이프로필렌 글리콜메틸에테르	34590-94-8	— ²⁾	— ²⁾	56 이하	— ²⁾	— ²⁾
18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2 이하	10 이하	1 이하	— ²⁾	— ²⁾
19	에틸렌디아민 테트라아세트산염, 사나트륨염	64-02-8	0.9 이하	6 이하	0.5 이하	— ²⁾	— ²⁾
20	알파-피넨	7785-26-4 7785-70-8 80-56-8	6 이하	10 이하	4 이하	39 이하	30 이하
21	모르폴린	110-91-8	7 이하	10 이하	4 이하	39 이하	31 이하
22	트리에틸렌 글리콜	112-27-6	15 이하	23 이하	9 이하	92 이하	71 이하
23	모노에탄올아민	141-43-5	0.3 이하	0.5 이하	0.2 이하	2 이하	1 이하
24	트라이사이클로데 세닐아세테이트	5413-60-5 2500-83-6 54830-99-8	6 이하	9 이하	4 이하	35 이하	27 이하
25	염산	7647-01-0	0.5 미만	0.8 미만	함유금지	3 미만	2 미만
26	이산화규소	7631-86-9 etc	0.1 이하	1.0 이하	0.08 이하	— ²⁾	— ²⁾
27	산화아연	1314-13-2	0.4 이하	3.2 이하	0.2 이하	— ²⁾	— ²⁾

주¹⁾ 실내공간용은 의류·신발 등의 물체와 자동차 실내에 사용되는 제품 이외의 제품을 말함

²⁾ 함량 제한 없음

³⁾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⑤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에탄올(64-17-5), 1,3-비스(하이드록시메틸)-5,5-다이메틸-2,4-이미다졸리다이네디온(6440-58-0), 테르피네올(98-55-5), 아세톤(67-64-1), 9-아세틸-8-세드렌(32388-55-9), 프로펜인(74-98-6), 자일렌설포네이트 나트륨(1300-72-7)

<비분사형 제품>

-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탈취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15 물체 염색제(Dye agent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물체에 침투시켜 색을 입히기 위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

- 1) 「화장품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염색제와 그 외 인체용 염색제
-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 11(학용품)에 따른 그림물감
- 3) 미술품(일반 회화용 물감 등)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2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101-14-4	전 제형	— ¹⁾
3	납	7439-92-1 etc	전 제형	1 이하
4	카드뮴	7440-43-9 etc	전 제형	1 이하
5	수은	7439-97-6 etc	전 제형	1 이하
6	비스	7440-38-2 etc	전 제형	5 이하
7	6가 크로뮴	18540-29-9 etc	전 제형	— ¹⁾
8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10	아조염료 ²⁾	-	전 제형	— ¹⁾
1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12	염화에톡시메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1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1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6	염화벤잘코늄류 ³⁾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17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1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²⁾ 24종 : 4-아미노비페닐, 벤지딘, 4-클로로-o-톨루이딘, 2-나프틸아민, 0-아미노아조톨루엔, 5-나이트로-o-톨루딘, p-클로로아닐린, 2-4-디아미노아니솔, 4,4'-메틸렌디아닐린, 3,3'-디클로로벤지딘, 3,3'-디메톡시-[1,1'-비페닐]-4,4'-디아민, 3,3'-디메틸벤지딘, 4,4''-메틸렌비스(2-메틸아닐린), P-크레시딘,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옥시디아닐린, 4,4''-사이오디아닐린, o-톨루이딘, 톨루엔-2,4-디아민, 2,4,5-트리메틸아닐린, o-아니시딘, p-아미노아조벤젠, m-크실리딘, 2,6-크실리딘

³⁾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mg/kg)	
			분사형	비분사형
1	벤젠	71-43-2	30 이하	40 이하
2	1,4-다이옥세인	123-91-1	20 이하	20 이하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분사형	비분사형
1	부틸셀로솔브	111-76-2	75 이하	- ¹⁾
2	톨루엔	108-88-3	25 이하	20 이하
3	자일렌(o-,m-,p-총합)	108-38-3 106-42-3 95-47-6	55 이하	70 이하
4	개미산	64-18-6	30 이하	20 이하
5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2682-20-4 26172-55-4 55965-84-9 etc	함유금지	3 이하

주¹⁾ 함량 제한 없음

⑤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 1)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34590-94-8), 탄산나트륨(497-19-8)

<비분사형 제품>

-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3),4)에 해당하는 물체 염색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16 물체도색제(Colorant painting agent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 표면에 색을 입히기 위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료

2) 미술용품(일반 회화용 물감 등)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염화비닐	75-01-4	전 제형	5 이하
2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101-14-4	전 제형	- ¹⁾
3	납	7439-92-1 etc	전 제형	1 이하
4	카드뮴	7440-43-9 etc	전 제형	1 이하
5	수은	7439-97-6 etc	전 제형	1 이하
6	비스	7440-38-2 etc	전 제형	5 이하
7	6가 크로뮴	18540-29-9 etc	전 제형	- ¹⁾
8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전 제형	5 이하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10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11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12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1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4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5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16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주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mg/kg)		
			일반용 ¹⁾	자동차용	
			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1	벤젠	71-43-2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2	1,4-다이옥세인	123-91-1	30 이하	30 이하	800 이하
3	구리 ²⁾	7440-50-8 etc	2,000 이하	2,000 이하	50,000 이하

주¹⁾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주²⁾ 구리를 함유하는 물체 도색제에 대하여 적용

④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1) 에탄올(64-17-5), 2-프로판올(64-63-0), 아세톤(67-64-1)

<비분사형 제품>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2), 3), 4)에 해당하는 물체 도색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17 자동차용 워셔액(Windshield washer fluids for automobiles)

① 적용범위

자동차의 앞면, 뒷면 유리를 와이퍼로 세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6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7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 %(w/w)
			일반용·발수용
1	메탄올	67-56-1	0.6 이하

④ 안전요구사항*

* 자동차용 워셔액은 침전물 및 부유하는 이물질질을 함유하지 않는 균일하고 착색을 띄는 액체로 다음 용도별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시 험 항 목				일반용		발수성용	
어는점(원액), °C				- 25.0 이하			
pH값		원액		6.5 ~ 10.0		4.0 ~ 10.0	
		최저사용농도		6.5 ~ 10.0		4.0 ~ 10.0	
세정성(최저사용농도)				대조 비교액과 비교하여 세정성이 동등 이상일 것			
혼합성(원액, 시료:혼합성시험액=50:50)				분리, 침전물 및 석출물이 없을 것			
발수성(°)		원액		-		65 이상	
		최저사용농도					
금속에 대한 부식성 (최저사용농도) [(50 ± 2) °C, 48 h]	무게 변화 mg/cm ²	알루미늄		± 0.30			
		황동		± 0.15			
		아연도금 강판		± 0.80			
	시험후 시험편의 겉모양			시험편과 스페이서 접촉부 이외에 현저한 피팅 및 거침이 없을 것			
고무에 대한 영향 (원액) [(50 ± 2) °C, 120 h]	무게변화 %	천연고무		± 1.5			
		클로로프렌고무		± 2.0			
		에틸렌프로필렌고무		± 2.0			
	경도변화 IRHD 또는 HS	천연고무		± 3.0			
		클로로프렌고무		± 3.0			
		에틸렌프로필렌고무		± 3.0			
시험 후 시험편의 겉모양			표면의 점성, 카본 블랙의 이탈 및 균열 등이 없을 것				
도막에(도로 도포막) 대한 영향 (원액) [(50 ± 2) °C, 6 h]	시험 후 도막 (도로 도포막) 표면의 겉모양	열처리 아크릴 수지 에나멜 도장판 (메탈릭색)		청	도막(도로 도포막)의 연화 및 부풀음 없고, 광택 및 색이 시험전·후에 현저한 변화가 없을 것. 또한, 워셔액에 함유된 색소의 정착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적을 것		
		아미노알키드 수지 에나멜 도장판 (솔리드색)		백			
				흑			
플라스틱에 대한 영향 [(50 ± 2) °C, 120h]	무게 변화 mg/cm ²	폴리에틸렌수지		± 1.0			
		폴리프로필렌수지		± 1.0			
		ABS 수지		± 4.0			
		연질 염화비닐수지		± 3.0			
		폴리아세탈수지		± 3.0			
	시험 후 시험편의 겉모양			현저한 변형이 없을 것			

시 험 항 목				일반용	발수성용
안정성	가열안정성 [(50 ± 2) °C, 8 h]	pH값	원액	6.5 ~ 10.0	4.0 ~ 10.0
			최저사용농도	6.5 ~ 10.0	4.0 ~ 10.0
		시험 후 액의 겉모양	결정성의 침전물이 없을 것		
	저온안정성 [(-15 ± 2) °C, 8 h]	원액	결정성의 침전물이 없을 것		
		최저사용농도	결정성의 침전물이 없을 것		
인화점(원액)				측정값을 기록한다.	

※ 신차 출고시 차량에 포함되는 워셔액의 안전요구사항은 차량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 가능함

1.18 자동차용 부동액(Engine antifreezes)

① 적용범위

액냉식 내연기관용 냉각수의 동결방지와 부식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6	염화벤잘코늄류2)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7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③ 안전요구사항

* 자동차용 부동액은 침전물 및 부유하는 이물질질을 함유하지 않는 균일하고 착색한 띄는 액체로써 다음 다음 각 항목의 용도별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1) 농축형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

항 목		에틸렌글리콜형	프로피렌글리콜형
어는점(°C)	50부피 % 수용액	-34.0 이하	-32.0 이하
	30부피 % 수용액	-14.5 이하	-
pH	30부피 % 수용액	7.0 ~ 11.0	-
	50부피 % 수용액	-	7.5~11.0
예비 알칼리도		원 액	보 고

항 목				에틸렌글리콜형	프로피렌글리콜형
금 속 부식성 30부피% 혼합수용액 (88±2℃, 336±2h)	금 속 시 험 편	무게의 변화량 (mg/cm ²)	알루미늄주물	±0.30	±0.30
			주 철	±0.15	±0.15
			강	±0.15	±0.10
			황 동	±0.15	±0.10
			땜 납	±0.30	±0.30
			구 리	±0.15	±0.10
	결 모 양			시험편과 스페이서와의 접촉부 이외에 맨눈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다만, 변색은 지장 없다.	
	시험 중의 기포			냉각기에서 거품이 넘치지 않을 것	
	시험 후의 액의 성상	pH		6.5 ~ 11.0	
		pH의 변화		±1.0	
		예비알칼리도의 변화(%)		보 고	
액 상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겔의 발생 등 심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침전량(부피 %)			0.5 이하		
비 중 에틸렌글리콜 (20/20℃) 프로피렌글리콜 (15.5/15.5℃)			원 액	1.114 이상	1.030 ~ 1.065
끓는점(℃)			원 액	155 이상	152 이상
거품성(mL)			30부피 %수용액	4 이하	
수 분(%)			원 액	5.0 이하	
순환부식성 30부피% 혼합수용 액 (88±3)℃ (1000±2)h	금 속 시 험 편	무게의 변화량 (mg/cm ²)	알루미늄주물	±0.60	
			주 철	±0.30	±0.20
			강	±0.30	±0.20
			황 동	±0.30	±0.20
			땜 납	±0.60	
			구 리	±0.30	±0.20
	결 모 양			시험편과 스페이서의 접촉부 이외에 맨눈으 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다만, 변색은 지장 없음	
	시험 후의 액의 성상	pH		6.5 ~ 11.0	
		pH의 변화		±1.0	
		예비알칼리도의 변화(%)		보 고	
		액 상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겔의 발생 등 심한 변화가 없을 것	
	부품의 상태	펌프 실부		운전 중 작동불량을 일으키지 않고, 액의 누출과 이상음이 없을 것	
		펌프게이싱의 내면과 펌프날개		심한 변화가 없을 것	

※ 신차 출고시 차량에 포함되는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은 차량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 가능함

2) 50부피 % 희석형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

항 목			에틸렌글리콜형	프로피렌글리콜형	
어는점(℃)			원 액	-34.0 이하	-32.0 이하
pH			원 액	7.0 ~ 11.0	7.5~11.0
예비 알칼리도 ²⁾			원 액	보 고	
금 속 부식성 30부피% 혼합수용액 (88±2℃, 336±2h)	금 속 시 험 편	무게의 변화량 (mg/cm ²)	알루미늄주물	±0.30	±0.30
			주 철	±0.15	±0.15
			강	±0.15	±0.10
			황 동	±0.15	±0.10
			땜 납	±0.30	±0.30
			구 리	±0.15	±0.10
			결 모 양	시험편과 스페이서와의 접촉부 이외에 맨눈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다만, 변색은 지장 없다.	
			시험 중의 기포	냉각기에서 거품이 넘치지 않을 것	
	시험 후의 액의 성상	pH		6.5 ~ 11.0	
		pH의 변화		±1.0	
		예비알칼리도의 변화(%)		보 고	
		액 상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겔의 발 생 등 심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침전량(부피 %)	0.5 이하		
비 중 에틸렌글리콜 (20/20℃) 프로피렌글리콜 (15.5/15.5℃)			원 액	1.065 이상	1.025 이상
끓는점(℃)			원 액	108 이상	104 이상
거품성(mL)			60부피 %수용액	4 이하	

항 목			에틸렌글리콜형	프로피렌글리콜형
순환부식성 30부피% 혼합수용 액 (88±3)°C (1000±2)h	금속 시험편	무게의 변화량 (mg/cm ²)	알루미늄주물	±0.60
			주 철	±0.30
			강	±0.30
			황 동	±0.30
			땀 납	±0.60
			구 리	±0.30
		결 모 양	시험편과 스페이스의 접촉부 이외에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다만, 변색은 지장 없음	
	시험 후의 액의 성상	pH	6.5~11.0	
		pH의 변화	±1.0	
		예비알칼리도의 변화(%)	보 고	
		액 상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겔의 발생 등 심한 변화가 없을 것	
	부품의 상태	펌프 실부	운전 중 작동불량을 일으키지 않고, 액의 누출과 이상음이 없을 것	
		펌프케이싱의 내면과 펌프날개	심한 변화가 없을 것	

※ 신차 출고시 차량에 포함되는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은 차량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 가능함

1.19 인쇄용 잉크·토너(Ink cartridges and toner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는 액체 형태 등의 소모품과 레이저 프린터 또는 복사기에 사용되는 분말 형태 등의 소모품으로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납	7439-92-1 etc	전 제형	1 이하
2	카드뮴	7440-43-9 etc	전 제형	1 이하
3	수은	7439-97-6 etc	전 제형	1 이하
4	비소	7440-38-2 etc	전 제형	5 이하
5	6가 크로뮴	18540-29-9 etc	전 제형	— ¹⁾
6	노닐페놀류	-	전 제형	— ¹⁾
7	아조염료 ²⁾	-	전 제형	— ¹⁾
8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9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10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1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2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3	염화벤잘코늄류 ³⁾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14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1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²⁾ 24종 : 4-아미노비페닐, 벤지딘, 4-클로로-o-톨루이딘, 2-나프틸아민, 0-아미노아조톨루엔, 5-나이트로-o-톨루딘, p-클로로아닐린, 2,4-디아미노아니솔, 4,4'-메틸렌디아닐린, 3,3'-디클로로벤지딘, 3,3'-디메톡시-[1,1'-비페닐]-4,4'-디아민, 3,3'-디메틸벤지딘, 4,4''-메틸렌비스(2-메틸아닐린), p-크레시딘,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옥시디아닐린, 4,4''-싸이오다디아닐린, o-톨루이딘, 톨루엔-2,4-디아민, 2,4,5-트리메틸아닐린, o-아니시딘, p-아미노아조벤젠, m-크실리딘, 2,6-크실리딘

³⁾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1	벤젠	71-43-2	17 이하	5 이하

1.20 인주(Red seal ink pad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솜·톱밥과 같은 섬유에 기름과 레이크안료 등을 넣어 사무용 등으로 도장·인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붉은 계열 색료 제품으로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스펀지에 잉크를 넣거나 함침시켜 사용하는 스탬프 잉크 및 서화 등에 사용되는 낙관용 인주는 제외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비소	7440-38-2 etc	전 제형	5 이하
2	카드뮴	7440-43-9 etc	전 제형	1 이하
3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_ ¹⁾
4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_ ¹⁾
5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_ ¹⁾
6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_ ¹⁾
7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_ ¹⁾
8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_ ¹⁾
9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_ ¹⁾
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_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1	수은	7439-97-6 etc	500 이하
2	납	7439-92-1 etc	500 이하

1.21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Correction fluids and tape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볼펜 등으로 써서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글씨 등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나 테이프 형태의 제품으로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3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4	염화에톡시메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5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6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7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8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9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주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1.22 미용 접착제(Adhesives for beauty)

① 적용범위

미용 혹은 분장을 목적으로 신체부위에 두발·체모·속눈썹·손톱·발톱 대용물을 부착하거나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

- 1) 미용 접착제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테이프 또는 스티커 형태의 제품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부속서 11(어린이용 장신구)에 해당하는 제품용 접착제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1979-01-06	전 제형	5 이하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4	염화비닐	1975-01-04	전 제형	5 이하
5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	전 제형	_ ¹⁾
6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	전 제형	_ ¹⁾
7	트리부틸주석산화물	56-35-9 etc	전 제형	_ ¹⁾
8	유기수은화합물	-	전 제형	_ ¹⁾
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584-84-9	전 제형	_ ¹⁾
10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전 제형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제외)	_ ¹⁾
11	디클로로메탄	1975-09-02	전 제형	_ ¹⁾
12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111-76-2	전 제형	_ ¹⁾
13	나프탈렌	91-20-3	전 제형	_ ¹⁾
14	납	7439-92-1 etc	전 제형	1 이하
15	비소	7440-38-2 etc	전 제형	5 이하
16	삼산화안티몬	1309-64-4 etc	전 제형	2 이하 (안티몬으로)
17	클로로포름	67-66-3	전 제형	_ ¹⁾
18	디메틸포름아미드	1968-12-02	전 제형	_ ¹⁾
19	메틸메타크릴레이트	80-62-6	전 제형	_ ¹⁾
20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_ ¹⁾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21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_ ¹⁾
22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_ ¹⁾
2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_ ¹⁾
24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_ ¹⁾
25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_ ¹⁾
26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_ ¹⁾
2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_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주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함량 기준 (mg/kg)
1	폼알데하이드	50-00-0	전제형	20 이하 ¹⁾
2	톨루엔	108-88-3	전제형	1,000 이하
3	자일렌(o-,m-,p-총합)	108-38-3 106-42-3 95-47-6	전제형	500 이하
4	아크릴로니트릴 ²⁾	107-13-1	전제형	200 이하
5	하이드로퀴논 ²⁾	123-31-9	전제형	1,000 이하

주¹⁾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는 1% 미만 적용

주²⁾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에만 적용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 제품 제조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1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128-37-0	50 이하
2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6530-20-1	7 이하
3	디부틸프탈레이트	84-74-2	0.1 이하

⑤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형 제품>

1)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비분사형 제품>

- 1) 분사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2) 법 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4)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 * 2),3),4)에 해당하는 제거제 안전기준 물질이 있는 경우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

1.23 문신용 염료(Tattoo inks)

① 적용범위

신체부위(피부)에 지정된 용도로 시술하는 염료로서 피부 속까지 침투하여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지는 화학제품

단,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체용 염료 제품 등은 제외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2-아미노-6-에토실나프탈린	293733-21-8	전 제형	-
2	4-아미노-3-플루오로페놀	399-95-1	전 제형	-
3	4-아미노아조벤젠	1960-09-03	전 제형	-
4	o-아미노아조톨루엔	97-56-3	전 제형	-
5	벤지딘	92-87-5	전 제형	-
6	바이페닐-4-일아민	92-67-1	전 제형	-
7	p-클로로아닐린	106-47-8	전 제형	-
8	4-클로로-o-톨루이딘	95-69-2	전 제형	-
9	3,3'-디클로로벤지딘	91-94-1	전 제형	-
10	3,3'-디메톡시벤지딘	119-90-4	전 제형	-
11	3,3'-디메틸벤지딘	119-93-7	전 제형	-
12	P-크레시딘	120-71-8	전 제형	-
13	2,4-디아미노아니솔	615-05-4	전 제형	-
14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101-14-4	전 제형	-
15	4,4'-메틸렌다이아닐린	101-77-9	전 제형	-
16	4,4'-메틸렌비스(2-메틸아닐린)	838-88-0	전 제형	-
17	톨루엔-2,4-디아민	95-80-7	전 제형	-
18	2-나프틸아민	91-59-8	전 제형	-
19	5-나이트로-o-톨루딘	99-55-8	전 제형	-
20	1,2-벤즈페난트렌	218-01-9	전 제형	-
21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117-81-7	전 제형	-
22	베릴륨	7440-41-7 etc	전 제형	-
23	클로로포름	67-66-3	전 제형	-
24	디부틸프탈레이트	84-74-2	전 제형	-
25	안트라센	120-12-7	전 제형	-
26	o-아니시딘	90-04-0	전 제형	-
27	니켈	7440-02-0 etc	전 제형	-
28	비소	7440-38-2 etc	전 제형	5 이하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29	카드뮴	7440-43-9 etc	전 제형	1 이하
30	수은	7439-97-6 etc	전 제형	1 이하
31	납	7439-92-1 etc	전 제형	1 이하
32	6가 크로뮴	18540-29-9 etc	전 제형	-
33	염화비닐	1975-01-04	전 제형	-
34	1,2-벤즈안트라센	56-55-3	전 제형	-
35	나프탈렌	91-20-3	전 제형	-
36	트리클로로에틸렌	1979-01-06	전 제형	5 이하
37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형	5 이하
38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39	염화에톡시메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40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4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42	5-클로로메 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43	염화벤잘코늄류 ¹⁾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44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4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주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제품 내 함유 금지색명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색명(Color Index)	색번호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Acid Green 16	44025	전 제형	-
2	Acid Red 26	16150	전 제형	-
3	Acid Violet 17	42650	전 제형	-
4	Acid Violet 49	42640	전 제형	-
5	Acid Yellow 36	13065	전 제형	-
6	Basic Blue 7	42595	전 제형	-
7	Basic Green 1	42040	전 제형	-
8	Basic Red 1	45160	전 제형	-
9	Basic Red 9	42500	전 제형	-
10	Basic Violet 1	42535	전 제형	-
11	Basic Violet 10	45170	전 제형	-
12	Basic Violet 3	42555	전 제형	-
13	Disperse Blue 1	64500	전 제형	-
14	Disperse Blue 106	-	전 제형	-
15	Disperse Blue 124	-	전 제형	-
16	Disperse Blue 3	61505	전 제형	-
17	Disperse Blue 35	-	전 제형	-
18	Disperse Orange 3	11005	전 제형	-
19	Disperse Orange 37	-	전 제형	-
20	Disperse Red 1	11110	전 제형	-
21	Disperse Red 17	11210	전 제형	-
22	Disperse Yellow 3	11855	전 제형	-
23	Disperse Yellow 9	10375	전 제형	-
24	Pigment Orange 5	12075	전 제형	-
25	Pigment Red 53	15585	전 제형	-
26	Pigment Violet 3	42535:2	전 제형	-
27	Pigment Violet 39	42555:2	전 제형	-
28	Solvent Blue 35	61554	전 제형	-
29	Solvent Orange 7	12140	전 제형	-
30	Solvent Red 24	26105	전 제형	-
31	Solvent Red 49	45170:1	전 제형	-
32	Solvent Violet 9	42555:1	전 제형	-
33	Solvent Yellow 1	11000	전 제형	-
34	Solvent Yellow 2	11020	전 제형	-
35	Solvent Yellow 3	11160	전 제형	-

④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검출허용한도(mg/kg)
1	바륨	7440-39-3 etc	50 이하
2	코발트	7440-48-4	25 이하
3	구리	7440-50-8 etc	25 이하
4	셀레늄	7782-49-2 etc	2 이하
5	안티몬	7440-36-0 etc	2 이하
6	주석	7440-31-5 etc	50 이하
7	아연	7440-66-6 etc	50 이하
8	파라벤류	99-76-3 94-26-8 120-47-8 857-25-9 94-13-3 4191-73-5	단일물질 4,000 이하, 혼합물 8,000 이하
9	폼알데하이드	50-00-0	20 이하
10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	총합으로 0.5 이하 (단, 벤조-a-피렌의 함유량은 0.005 이하)

⑤ 무균

* 문신용 염료의 내용물은 무균이어야 한다. 무균시험방법은 대한민국 약전 일반시험법의 무균시험법에 따른다.

1.24 살균제(Disinfectant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살균, 항균, 소독 등을 위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

- 1) 「위생용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물수건, 물티슈 등)
- 2)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소독·항균제품
-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등 살생물처리제품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2	염화비닐	1975-01-04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3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112-34-5	전 제품 (전 제형)	- ¹⁾
4	수은	7439-97-6 etc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
5	산화에틸렌	75-21-8	전 제품 (전 제형)	- ¹⁾
6	아크릴산	1979-10-07	전 제품 (전 제형)	- ¹⁾
7	차아염소산계	7790-92-3 7778-54-3 7681-52-9 etc	특수목적용 (전 제형)	유효염소로써 10 이하
8	붕산	10043-35-3 etc	어린이용품용 (전 제형)	붕소(B)로써 10 이하
9	납	7439-92-1 etc	칫솔·혀크리너용 (전 제형)	1 이하
10	카드뮴	7440-43-9 etc	칫솔·혀크리너용 (전 제형)	1 이하
11	비소	7440-38-2 etc	칫솔·혀크리너용 (전 제형)	1 이하
12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13	염화에톡시메틸렌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14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 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15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6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7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18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1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주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일반용 및 특수목적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다음 물질이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
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일반용 ¹⁾	
			분사형	비분사형
1	폼알데하이드	50-00-0	40 이하	10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100 이하	200 이하
3	클로로포름	67-66-3	30 이하	30 이하
4	1,2-디클로로프로판*	78-87-5	50 이하	200 이하
5	산화세륨*	1306-38-3	세륨으로써 1,000 이하	세륨으로써 1,500 이하
6	1-메톡시-2-프로판올*	1589-47-5	8,000 이하	10,000 이하
7	아질산나트륨 ¹⁾	7632-00-0	아질산 이온으로써 80 이하	아질산 이온으로써 80 이하
8	과황산화합물 ²⁾	-	과황산염으로써 800 이하	과황산염으로써 800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주¹⁾ 어린이용품 전용제한함

주²⁾ 칫솔·허클리너 살균용에 한함

④ 사용가능 주성분(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제품(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다시 받아
야 하는 제품 포함)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함

* 살균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음

* 다만,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 18조 3항에 따라 고시된 살균제에 사용될수 있는 기존살
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1) 아래 표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법 제12조에 따라 살균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살균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기준>

단위 : %(w/w)

구 분	No	물질명	CAS No.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1	염산	7647-01-0	HCL로써 0.07 이하	HCL로써 0.1 이하
	2	구리	7440-50-8	5 이하	- ¹⁾
	3	황산구리(II)	7758-98-7	구리로써 5 이하	- ¹⁾
	4	황산구리(III), 오산화물	7758-99-8	구리로써 5 이하	- ¹⁾
	5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 세트산, 사나트륨염	1964-02-08	20 이하	- ¹⁾
	6	수산화 칼륨 또는 수산화 나트륨	1310-58-3 1310-73-2	NaOH로써 5 미만	NaOH로써 5 미만
	7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2-프로판올	67-63-0	50 이하	50 이하
	8	과산화수소	7722-84-1	0.5 이하	0.5 이하
	9	차아염소산	7790-92-3	유효염소로써 5 이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10	차아염소산칼슘	7778-54-3	유효염소로써 5 이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11	차아염소산나트륨	7681-52-9	유효염소로써 5 이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12	이산화염소 ¹⁾	10049-04-4	10 이하	10 이하
	13	모노에탄올아민	141-43-5	0.3 이하	0.3 이하
	14	개미산	64-18-6	1.5 이하	1.5 이하
	15	벤조산	65-85-0	15 이하	-
	16	산화아연	1314-13-2	10 이하	- ¹⁾
	17	1,2-벤즈아이스티아 졸-3(2H)-온(BIT)	2634-33-5	30 이하	35 이하
	18	소듐 피리싸이온	3811-73-2	3.0 이하	- ¹⁾
	19	은	7440-22-4	1 이하	- ¹⁾
	20	아연 피리싸이온	13463-41-7	4 이하	- ¹⁾
	21	2-옥틸-3(2H)-이소티 아졸론(OIT)	26530-20-1	8 이하	15 이하
	22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55406-53-6	8 이하	- ¹⁾
	23	염화디데실디페틸암모늄	7173-51-5	0.2이하	50 이하
	24	염화옥틸다이메틸 암모늄	5538-94-3	0.2이하	20 이하
	25	염화옥틸데실다이메틸 암모늄	32426-11-2	0.2이하	50 이하
구 분	No	물질명	CAS No.	분사형	비분사형
특수목적용 중 어린이용품용	1	2-페녹시에탄올	122-99-6	2 이하	1.3 이하

주¹⁾ 함량 제한 없음

주²⁾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3,4) 살균제 사용가능 주성분(함량기준 없음)

<살균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기준>

단위 : %(w/w)

구분	물질명	CAS No.	물질명	CAS No.
일반용	O-벤질-p-클로로페놀	120-32-1	벤질알코올	100-51-6
	탄산나트륨	497-19-8	산화칼슘	1305-78-8
	클로록실레놀;4-클로로-3,5-다이메틸페놀	88-04-0	트리클로산	3380-34-5
	2-페녹시에탄올	122-99-6	붕산	10043-35-3
	탄산칼륨	584-08-7	프로피코나졸	60207-90-1
	황산아연	7733-02-0	심클로센; 트라이클로로아이스시아누르산	87-90-1
	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10543-57-4	4-클로로-m-크레졸	59-50-7
	글리세롤	56-81-5	구연산	77-92-9
	프로필렌글리콜	57-55-6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112-02-7
	살리실산	69-72-7	이산화티타늄	13463-67-7
	프로필알코올	71-23-8	에탄올	64-17-5
일반용	2-페닐페놀	90-43-7	하이드록시아세트산	79-14-1
	제올라이트	1318-02-1	염화알킬(C12-C14) [(에틸페닐)메틸]디메틸암모늄	85409-23-0
비분사형	트리클로센나트륨	2893-78-9	벤질알킬(C12-C16)디메틸 암모늄	68424-85-1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 이수화물	51580-86-0	(C12-C18)알킬벤질디메틸 암모늄염화물	68391-01-5
	알킬디메틸벤질 암모늄클로라이드	8001-54-5	염화알킬(C12-C18) 다이메틸에틸벤질암모늄	68956-79-6
	벤질(C12-C14)알킬디메틸 암모늄염화물	85409-22-9	과산화모노황산 칼륨 황산	70693-62-8

5) 에탄올(64-17-5), 글리세롤(56-81-5) (어린이용품용에 한함)

6) 에탄올(64-17-5), 탄산수소나트륨(144-55-8), 글리세롤(56-81-5)(치솔·허크리너용에 한함)

7) 2)부터 6)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물질

⑤ 제품내 미생물한도

* 수목적용(어린이용품 전용, 치솔·허크리너살균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수가 500 개/g(mL)이하, 대장균(*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따름

1.25 살조제(Algicide)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외 물놀이시설 및 어항 등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시키기 위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수은	7439-97-6 etc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
2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3	염화에톡시메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4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 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 ¹⁾
5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6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7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8	이염화이소시아놀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주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분사형	비분사형
1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600 이하	600 이하
2	클로로포름	67-66-3	100 이하	300 이하
4	과아세트산	79-21-0	1,400 이하	- ¹⁾

주¹⁾ 함량 제한 없음

④ 사용가능 주성분(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제품(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제품 포함)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함

* 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음

* 다만, 2)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 18조 3항에 따라 고시된 살균제에 사용될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1) 법 제12조에 따라 살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2) 아래 표에 제시된 물질)

No	물질명	CAS No.	분사형	비분사형
1	차아염소산칼슘	7778-54-3	유효염소로써 10 이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2	차아염소산나트륨	7681-52-9	유효염소로써 0.3 이하	유효염소로써 1 이하
3	이산화염소 ¹⁾	10049-04-4	20 이하	10 이하
5	황산구리(II), 오수화물	7758-99-8	구리로써 3 이하	구리로써 15 이하
7	과산화수소	7722-84-1	0.3 이하	0.3 이하

주¹⁾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3) 제올라이트(비분사형에 한함)

4) 2)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물질

1.26 기피제(Insect repellent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살균과 살충의 목적이 아닌 켄벌레 등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파리, 모기 등에 사용되는 보건용 기피제품,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기피제품 등은 제외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1979-01-06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3	염화비닐	1975-01-04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4	나프탈렌	91-20-3	날벌레용 제품 (전 제형)	- ¹⁾
5	1,4-디클로로벤젠	106-46-7	전 제품 (전 제형)	- ¹⁾
6	농약관리법(법률 제14980호)에 등록된 성분	-	전 제품 (전 제형)	- ¹⁾
7	가정용 살충제로 등록된 유효성분	-	전 제품 (전 제형)2)	- ¹⁾
8	감염병예방용 구제·방지 살충제로 등록된 성분	-	전 제품 (전 제형)	- ¹⁾
9	수은	7439-97-6 etc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
10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11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12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1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4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5	염화벤잘코늄류 ³⁾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16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 한계 미만

²⁾ 증발레용은 제외함

³⁾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mg/kg)	
			샤벌레·증발레용	날벌레용
1	폼알데하이드	50-00-0	5 이하	5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75-07-0	40 이하	- ¹⁾
3	디메틸포름아미드	68-12-2	- ¹⁾	300 이하

주¹⁾ 함량 제한 없음

④ 사용가능 주성분(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제품(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제품 포함)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함

* 기피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음

* 다만,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피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1) 법 제12조에 따라 살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2) 아래 표에 제시된 물질

단위 : %(w/w)

구 분	No	물질명	CAS No.	분사형	비분사형
샤벌레용· 증발레용	1	트란스플루트린 ¹⁾	118712-89-3	30 이하	- ²⁾
	2	에탄올	64-17-5	- ²⁾	30 이하
	3	살리실산메틸	119-36-8	45 이하	- ²⁾
	4	피레트럼 ¹⁾	8003-34-7	2.5 이하	- ²⁾
	5	이산화염소 ³⁾	10049-04-4	100 이하	500 이하
	6	3-메톡시-3-메틸-1-부탄올	56539-66-3	6.5 이하	- ²⁾
날벌레용	1	에탄올	64-17-5	- ²⁾	25 이하

주¹⁾ 증발레용에 한함

²⁾ 함량 제한 없음

³⁾ 액상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3) 다이에틸-메타-톨루아마이드(134-62-3), 겨자씨 오일(8007-40-7), 벤질벤조에이트(120-51-4),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34590-94-8) (샤벌레용에 한함)

4) 시트로넬라 오일(8000-29-1), 다이에틸-메타-톨루아마이드(134-62-3), 겨자씨 오일(8007-40-7),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34590-94-8) (증발레용에 한함)

5) 시트로넬라 오일(8000-29-1), 삼나무(cedarwood) 오일(8000-27-9), 오렌지껍질 오일(8008-57-9), 디에틸톨루아미드(134-62-3) (날벌레 분사형에 한함)

6) 2)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물질

1.27 목재용 보존제(Wood Preservatives)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목재가 부패,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료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1979-01-06	전 제형	5 이하
3	염화비닐	1975-01-04	전 제형	5 이하
4	무수 크롬산	1332-82-0 etc	전 제형	~ ¹⁾
5	중크롬산나트륨	10588-01-9	전 제형	~ ¹⁾
6	나트륨 펜타클로로페네이트	131-52-2	전 제형	~ ¹⁾
7	트리부틸주석산화물	-	전 제형	~ ¹⁾
8	수은	7439-97-6 etc	전 제형	1 이하
9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10	염화에톡시메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11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 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12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3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4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15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1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 별 정량한계 미만

주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 기준 %(w/w)
1	에틸벤젠	100-41-4	700 이하
2	(1-메틸에틸)벤젠	98-82-8	700 이하
3	자일렌(o-,m-,p-총합)	108-38-3 106-42-3 95-47-6	60 이하
4	톨루엔	108-88-3	70 이하

④ 사용가능 주성분(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제품(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제품 포함)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함

* 목재용 보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음

* 다만,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용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1) 법 제12조에 따라 목재용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2) 아래 표에 제시된 물질

단위 : %(w/w)

No	물질명	CAS No.	분사형	비분사형
1	3-요오드-2-프로필일 뷰틸 카바민산(IPBC)	55406-53-6	10 이하	~ ¹⁾
2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2634-33-5	40 이하	~ ¹⁾
3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7173-51-5	0.3 이하	60 이하
4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26530-20-1	0.6 이하	~ ¹⁾

주¹⁾ 함량 제한 없음

3) 붕산(10043-35-3), 프로피코나졸(60207-90-1), 에탄올(64-17-5), 붕사(보락스)(1330-43-4)

4) 산화 제2구리(1317-38-0), 제타 싸이퍼메트린(52315-07-8)(비분사형에 한함)

5) 2) 및 4)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물질

1.28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Preservative-treated filter product)

① 적용범위

가정, 자동차 등 실내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장치에 장착된 필터 자체의 항균·멸균·살균·보존 등을 위하여 필터의 표면 또는 내부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
단, 건물 내 공조용 필터, 수질정화용 필터 등은 제외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6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7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주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방출량 제한물질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항균처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래 제시된 방출량 기준치에 적합 하여야 함

* 공기청정기·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필터에서 탈락된 해당 물질의 양

No	물질명	CAS No.	방출량 기준 (mg)
1	이산화티타늄	13463-67-7 etc	1,000 이하
2	이산화규소	7631-86-9 etc	40 이하
3	구리 및 그 화합물	7440-50-8 etc	구리로써 70 이하
4	산화아연	1314-13-2 etc	50 이하
5	질산은	-	15 이하
6	아연 피리싸이온	13463-41-7	70 이하
7	옥타데실디메틸(3-트리하이드록시실일프로필) 암모늄 클로라이드 (Octadecyldimethyl(3-trihydroxysilyl propyl) ammonium chloride, OTPA)	7761-88-8 etc	2 이하

④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만을 사용하여야만 함. 다만, 항목 중 2) 3)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와 유해성 자료 및 물질별 방출량에 따른 유해성 평가자료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 법 제 8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받아야 함

1) ③ 방출량 제한물질 단, 물질별 방출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2) 법 제12조에 따라 제품 섬유·가죽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단, 유해성 평가 결과,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방출량 이하인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함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섬유·가죽용 보존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유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방출량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해당 물질별 승인유효기간 이내에 사용 가능

1.29 초(Candle)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면사 또는 면과 화학 섬유와의 혼방사, 나무 등을 심지로 하여 파라핀, 소이왁스, 팜왁스, 비즈왁스(밀랍) 등 또는 파라핀 등에 소량의 지방산이나 기타 경화제를 혼합하여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벤젠	71-43-2	방향용	5 이하
2	염화비닐	1975-01-04	방향용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1979-01-06	방향용	5 이하
4	붕소산 사나트륨염	1330-43-4 etc	방향용	- ¹⁾
5	1,4-디클로로벤젠	106-46-7	방향용	- ¹⁾
6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7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8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9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0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11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12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1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mg/kg)	
			발광용	방향용
1	납 ¹⁾	7439-92-1 etc	600 이하	600 이하
2	폼알데하이드	50-00-0	- ³⁾	12 이하
3	글리옥살	107-22-2	- ³⁾	30 이하
4	메탄올 ²⁾	67-56-1	- ³⁾	2,000 이하

주¹⁾ 심지 및 몸통의 총 함유량을 말함

²⁾ 액상 제품에 한함

³⁾ 함량 제한 없음

1.30 습기제거제(Dehumidifying agent)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벽장, 장롱 등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제습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단, 상품 포장용인 것 및 식품이나 인체에 사용하는 것 등은 제외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6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7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량기준(mg/kg)	
			발광용	방향용
1	납	7439-92-1 etc	전제형	3.0 이하
2	카드뮴	7440-43-9 etc	전제형	0.3 이하
3	비스	7440-38-2 etc	전제형	1.5 이하
4	수은	7439-97-6 etc	전제형	0.005 이하
5	6가 크롬	18540-29-9 etc	전제형	1.5 이하
6	다이메틸푸마레이트 ¹⁾	624-49-7	전제형	0.1 mg/kg 이하

주¹⁾ 실리카겔을 주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1.31 인공 눈 스프레이(Artificial snow spray)

① 적용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생일, 결혼 등의 행사에 인공적인 눈(雪)모양을 만들어 분사하는 형태의 화학제품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염화비닐	1975-01-04	분사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1979-01-06	분사형	5 이하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분사형	5 이하
4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5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6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7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8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9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10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1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함량기준(mg/kg)
1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Sodium Laureth Sulfate; SLES)	9004-82-4	분사형	1,000 이하

1.32 공연용 포그액(Fog fluid for performance)

① 적용범위

공연 또는 행사 시 연무장치를 이용하여 연기·안개와 같은 효과를 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②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

* 검출허용한도는 제품 내 비의도적 함유로 기술적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허용한도 이내만 인정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mg/kg)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57028-96-3 31961-54-3 89697-78-9 etc	분사형	- ¹⁾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374572-91-5 etc	분사형	- ¹⁾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32289-58-0 27083-27-8 57029-18-2 etc	분사형	- ¹⁾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2682-20-4 55965-84-9 etc	분사형	- ¹⁾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6172-55-4 55965-84-9 etc	분사형	- ¹⁾
6	염화벤잘코늄류 ²⁾	8001-54-5 85409-22-9 68424-85-1 68391-01-5 85409-23-0	분사형	- ¹⁾
7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2893-78-9	분사형	- ¹⁾
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 제형	- ¹⁾

주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③ 함량제한물질(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다음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적용 제형	함량기준(%(w/w))
1	에틸렌글리콜	107-21-1	전 제형	10 이하
2	디에틸렌글리콜	111-46-6	전 제형	10 이하

1.3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① 용기 및 포장

1) 안전기준

가. 겉모양

- 1) 외관은 깨끗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부위가 없어야 한다.
- 2) 구조는 변형·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 3) 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 후 흐름 현상이 없어야 한다.

나. 강도 및 누수

- 1) 용기 강도 시험을 실시할 때 마개 또는 몸체 등 용기의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 2) 누수 시험을 실시할 때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한다.
- 3) 캡슐형 세탁세제의 포장으로 사용되는 물에 녹는 포장재는 다음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 가) 20 °C의 물에서 30초 이상 내용물이 유지되어야 한다.
 - 나) 표준시험조건[온도 (23 ± 2) °C, 상대습도 (50 ± 5) %] 하에서 최소한 300 N의 기계적 압축강도를 견뎌야 한다.

2) 안전기준 적용 범위

가. 겉모양 및 강도에 대한 안전기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전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용기강도의 안전기준을 제외 한다.

-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 2) 방항제, 탈취제 등에 사용되는 장식기능이 있는 유리용기를 포함한 깨질 가능성이 있는 유리용기
- 3) 다른 재질의 용기에 담았을 때 제품 내용물이 용기와 반응하거나 변질될 우려 등의 사유로 사용한 유리용기
- 4) 초 등 별도 용기가 필요 없는 고형의 완제품

나. 누수시험에 대한 안전기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내용물이 액체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 1) 개봉 후 재잠금이 불가능한 1회용 포장 용기
-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 3) 상온에서 5분 동안 거꾸로 세워 흘러내리지 않는 페이스트 제품 등

다. 재생용 잉크·토너의 경우에 원료 제조·유통업자가 납품하는 원료제품에 대한 용기강도 및 누수시험은 제외한다.

② 중량 또는 용량

중량 또는 용량 시험을 했을 때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계량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34 어린이보호포장

①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기준

* 다음의 품목은 '②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 기준' 및 '③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함

No	품목 및 제형
1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2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3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4	캡슐형 세탁제품

②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

* 제품 내 함유된 물질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함

No	물질명	CAS No.	함유 기준	적용제외기준
1	에틸렌글리콜	107-21-1	10 % (W/W) 이상	-
2	메탄올	67-56-1	3 % (W/W) 이상	-
3	디클로로메탄	1975-09-02	1 % (W/W) 이상	-
4	1,2-디클로로에탄	107-06-2	10 % (W/W) 이상	-
5	살리실산메틸	119-36-8	5 % (W/W) 이상	-
6	수산화나트륨 ¹⁾	1310-73-2	제품내 NaOH로써,	-
7	수산화칼륨 ¹⁾	1310-58-3	2%(W/W)이상	
8	메타크릴산	79-41-4	5 % (W/W) 이상	펜 마커와 같이 용기 내 흡수제로 쓰인 경우
9	개미산(포름산)	64-18-6	5 % (W/W) 이상	-
10	하이포(차아)염소산염	7681-52-9 etc	2 % (W/W) 이상	-
11	과산화수소	7722-84-1	5 % (W/W) 이상	-
12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105-36-2	모든 농도	-
13	모르폴린	110-91-8	5 % (W/W) 이상	-
14	아세트오니트릴 ²⁾	1975-05-08	500 mg 초과	-

No	물질명	CAS No.	함유 기준	적용제외기준
15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1-프로판올	10 % (W/W) 이상이고 40°C에서 동점도 20.5mm ² /s 이하	-
16		1-부탄올		-
17		1-펜탄올		-
18		1-헥산올		-
19		1-헵탄올		-
20		1-옥탄올		-
21		1-노난올		-
22		1-데칸올		-
23		1-운데칸올		-
24		1-도데칸올		-
25		1-트리데칸올		-
26	이소부틸 알코올	78-83-1		-
27	테르펜 알코올	98-55-5		-
28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		-
29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		-
30	제품 내 최종 함유물이 pH 2.0 이하 또는 pH 11.5 이상의 액상제품이고, 40°C에서 동점도 20.5mm ² /s 이하인 경우			-

주¹⁾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함유한 제품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염기 농도임

²⁾ 접착제 제거제에 함유된 경우에 한함

③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 기준

* 제품과 제형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②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포장을 적용하지 아니함

- 1)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할 수 있는 용기
- 2)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 3)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 4) 개봉 후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용기(예: 카트리지형, 티슈형, 팔찌형, 패치형, 거치형 탱크형 제품 등)
- 5) 실제 중량 15 kg 이상의 제품
- 6)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에 어려운 제품(예: 함침물형 석고 방향제, 초 등)

④ 어린이보호포장 자체 안전기준

* 어린이보호포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적합한 용기 또는 포장이어야 함

- 1) 재봉합이 가능한 포장의 안전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KS T ISO 8317, 16 CFR 1700, CSA-Z76 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름
- 2) 재봉합이 불가능한 포장의 안전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N 862, 16 CFR 1700 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름

2. 부록(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원부자재 규제물질 확인)

1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접속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대표제품 신고

① <http://ncis.nier.go.kr> 홈페이지 접속



2) 원부자재 정보 검색

① 원부자재 CAS number(카스번호), 물질명(국문, 영문) 등 확인

② 검색창에 카스번호, 물질명 등 입력 후 검색

* 물질명 등의 정보로 검색할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원부자재의 카스번호로 검색하십시오.



3) 원부자재 제도 적용 여부 확인

① 영문명, 국문명 확인

② 기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유독·제한·금지), 중점관리물질, 사고대비물질

* 고유번호가 있는 물질은 제도에 해당하는 물질임을 뜻함. 예) 50-00-0 물질은 기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유독, 금지), 중점관리물질,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됨.

*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와 검색결과가 있어도 “대량생산화학물질”에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로 판단

* 비교의 “등록유예기간 없음”은 2015년 7월 고시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며, 그 수화물·무수화물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포함됨

화학물질통합 검색

전체 ☒ 50-00-0

검색결과-총 3건 결과 내 재 검색

CAS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유번호					함량 및 규제정보	비고
			기존화학 물질	유해화학 물질	중점관리 물질	암, 돌연변이성 물질	사고대비 물질		
68650-00-0	Fatty acids, tall oil polymers with pentaerythritol, phthalic anhydride and tung oil, oxidized		KE-16170						
50-00-0	Formalin [이명 : Formaldehyde;]	포르말린 [이명 :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알데히드; 포름올; 메탄알; 포르말리트; 포름알데히드용액;]	KE-17074	97-1-345 06-5-5	별표1-1		1	정보보기	등록 유예 기간 없음
13150-00-0	Sodium 2-[2-[2-(dodecyloxy)ethoxy]ethoxy]ethylsulfate		KE-31442						

4) 원부자재 규제사항 확인

① 유해화학물질(유독·제한·금지), 중점관리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제품내 규제함량 및 규제사항 확인

② 정보보기 클릭

화학물질통합 검색

전체 ☒ 50-00-0

검색결과-총 3건 결과 내 재 검색

CAS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유번호					함량 및 규제정보	비고
			기존화학 물질	유해화학 물질	중점관리 물질	암, 돌연변이성 물질	사고대비 물질		
68650-00-0	Fatty acids, tall oil polymers with pentaerythritol, phthalic anhydride and tung oil, oxidized		KE-16170						
50-00-0	Formalin [이명 : Formaldehyde;]	포르말린 [이명 :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알데히드; 포름올; 메탄알; 포르말리트; 포름알데히드용액;]	KE-17074	97-1-345 06-5-5	별표1-1		1	정보보기	등록 유예 기간 없음
13150-00-0	Sodium 2-[2-[2-(dodecyloxy)ethoxy]ethoxy]ethylsulfate		KE-31442						

5) 원부자재 규제사항 세부정보 확인

- ① 규제별 혼합물(제품) 함량정보 확인
- ② 규제별 혼합물(제품) 금지 또는 제한내용 확인
 - * 예) 특정물질 및 그 물질이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해당 원부자재가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경우 그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분류
 - * 제한물질 비교의 경우 해당 용도로의 물질 취급을 제한함을 의미

○ 물질번호 및 함량정보			
물질구분	고유번호	혼합물(제품)함량정보	비고
기존화학물질	KE-17074		
유독물질	97-1-345	포름알린 및 포름알데히드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제한물질	06-5-5	폼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사고대비물질	1	포름알린 또는 포름알데히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대량생산화학물질	V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		
중점관리물질	별표1-1		

2 안전보건공단(KOSHA)

1) 안전보건공단(KOSHA) 접속

- ① <https://msds.kosha.or.kr/MSDSInfo/홈페이지 접속>



2) 원부자재 정보 검색

- ① 원부자재 CAS number(카스번호), 물질명(국문, 영문) 등 확인
- ② 검색창에 카스번호, 물질명 등 입력 후 검색
 - * 물질명 등의 정보로 검색할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원부자재의 카스번호로 검색하십시오.

HOME > 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통합검색

통합검색

■ CAS No. 등 화학물질 관련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예) 71-43-2, 벤젠, KE-02150 등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원부자재 제도 적용 여부 확인

- ① 물질명, 카스번호 확인
- ② 법규정보 클릭

HOME

> 화학물질정보검색

> 화학물질정보검색

> 통합검색

통합검색

50-00-0

검색하기

CAS No. 등 화학물질 관련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예) 71-43-2, 벤젠, KE-02150 등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어 '50-00-0'에 대한 검색결과

공단 MSDS

No.	물질명	CAS No.	개정일
	포름알데히드	50-00-0	
	Sodium 2-[2-[2-(dodecyloxy)ethoxy]ethoxy]ethyl sulfate	13150-00-0	2018-04-02

더보기 >

공단 MSDS

No.	물질명	CAS No.	개정일
1	포름알데히드	50-00-0	
2	Sodium 2-[2-[2-(dodecyloxy)ethoxy]ethoxy]ethyl sulfate	13150-00-0	2018-04-02
3	Fatty acids, tall oil polymers with pentaerythritol, phthalic anhydride and tung oil, oxidized	68650-00-0	

더보기 >

4) 원부자재 규제사항 확인

-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제 확인
- ② 화학물질관리법 상 규제 확인
-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규제 확인

물질규제정보									
법규정보 상세정보									
포름알데히드									
• CAS No. 50-00-0		• UN No. 3161		• KE No. KE-17074 • EU No. 200-001-8					
국내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지					
		✓	✓	6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영업비밀인정 제외 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12개월	✓	✓	✓	✓					
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	금지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		✓		✓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				지정수량					
제4류 : 제3석유류(수용성)				4000ℓ					

II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218
2. 표시사항 작성 방법	220
3. 표시사항 표시 위치	232
4. 표시면적에 따른 표시사례	235
5. 기타 표시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237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



[그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항목

■ 전품목 필수 표시항목 및 조건부 표시항목

<표> 생활화학제품 필수·조건부 표시사항

No	표시항목		필수*/조건부	비고
1	품목		필수	-
2	제품명		필수	-
3	용도		필수	표백제는 계열도 표시
4	제형		필수	-
5	제조연월		필수	-
6	유통기한		조건부	해당없는 제품 생략
7	중량·용량·매수		필수	-
8	어는점		조건부	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9	액성		조건부	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10	표준사용량		조건부	해당없는 제품 생략
11	효과·효능		조건부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에 한함
12	제조사, 주소, 연락처		조건부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13	판매자, 주소, 연락처		조건부	제조사 개발생산(ODM)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에 한함
14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		조건부	수입제품에 한함
15	수입자, 주소, 연락처		조건부	수입제품에 한함
16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비대상 제품의 표시		조건부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주요물질	필수	-
		보존제	조건부	보존제 기능 물질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알레르기 반응가능물질	조건부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계면활성제	조건부	계면활성제 기능 물질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형광증백제	조건부	형광증백제가 함유된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에 한함
		기타물질	조건부	국내관리규제에 해당하는 물질 등을 함유한 경우에 한함
18	신호어 및 그림문자		조건부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에 한함, 다만 산도조절제인 경우 제외
19	사용방법		조건부	해당없는 제품 생략
20	사용상 주의사항		필수	품목, 용도, 제형, 함유물질 등에 따라 표시
21	응급처치		필수	어린이보호포장, 알레르기반응물질 함유에 따라 표시
22	안전기준확인 마크		필수	-
23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필수	-

¹⁾ 필수: 모든 제품에 필수로 표시되는 항목

2. 표시사항 작성방법

1. 품목(필수 표시항목)

- 품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이하 “확인결과서”)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증명서(이하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품목을 동일하게 표시하며 이 때 표시는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이하 “눈에 띄는 방법”이라 함)으로 표시하여야 함 예) 품목 : 세정제, 세정제, **세정제** 등

2. 제품명(필수 표시항목)

- 제품명은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다만, 파생제품의 경우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 시 입력한 제품명을 표시하여야 함
 - * 파생제품명은 대표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음
 - 예) 제품명 : 솔루티스 세정제

3. 용도(필수 표시항목)

- 용도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다만, 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 * 표백제의 계열 : 과탄산나트륨계, 과붕산나트륨계, 과산화수소계, 염소계, 기타 등
 - 예) 용도 : 섬유용(과탄산나트륨계) 또는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목재용)

4. 제형(필수 표시항목)

- 제형은 확인결과서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 예) 제형 : 액체형 또는 분무기형

5. 제조연월(필수 표시항목)

- 제조연월은 “19년 11월”, “2019년 11월”, “19. 11.(연. 월.)”, “2019. 11(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제조연월의 표시위치가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기재된 위치를 문구로 표시하거나 “별도표시” 등의 안내문구로 표시 하여야 함. 다만, 수입 제품에 기 표시된 제조연월의 형식이 국내와 달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읽는법에 대한 설명을 표시하여야 함
 - 예) 제조연월 : 별도표시 또는 제품 하단 별도표시 또는 제품 상단 별도표시

6. 유통기한(조건부 표시항목 : 해당없는 제품 생략 가능)

- 유통기한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 직접 판단하여 작성하며 해당 없는 제품은 생략 가능
 - 예) 유통기한 : 2020년 11월까지 또는 2020년 11월
 - *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7. 중량·용량·매수(필수 표시항목)

- 중량·용량·매수의 표시는 확인결과서에 기재된 사항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다만,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 시 중량·용량·매수를 다양하게 신고한 경우(예. 10, 20, 50g 또는 10~50g)에 한하여 해당 용기에 맞는 중량·용량·매수를 표시 할 수 있음
 - 표시 예) 중량 : 1kg 또는 용량 : 100ml 또는 매수 : 30매

8. 어는점(조건부 표시항목 : 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 어는점은 물과의 혼합비율과 혼합비율에 따른 어는점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 또는 그래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 표시 예)

원액	물	어는점	최저희석비율
100%	0%	-25°C	100%(원액그대로사용)

9. 액성(조건부 표시항목 : 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 액성은 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하며, 표준사용량이 있는 경우 표준사용량을 기재 할 수 있음. 다만, 액성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해당 되는 모든 액성을 표시하되, 수소이온 농도의 범위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수용성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유성” 등의 표시로 대신할 수 있음
 - 표시 예) 액성 : 원액(약산성) 또는 액성 : 원액(약산성), 표준사용량(중성)
 - 참고)

수소이온 농도(pH)	액성
11.0을 초과하는 것	알칼리성
8.0 초과 ~ 11.0 이하	약알칼리성
6.0 이상 ~ 8.0 이하	중성
3.0 이상 ~ 6.0 이하	약산성
3.0 미만	산성

10. 표준사용량(조건부 표시항목 : 해당없는 제품 생략 가능)

- 표준사용량은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의 효과적인 기능을 낼 수 있는 적정 사용량으로 7. 중량·용량·매수에서 사용한 단위로 표시하여야 함. 또한, 희석해서 사용하는 농축제품의 경우에는 희석비율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용량을 표시하여야 함
 - 표시 예) 표준사용량 : 물 1L에 5g 사용

11. 효과·효능(조건부 표시항목 : 승인 대상 제품에 한함)

- 효과·효능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12. 제조자, 주소, 연락처(조건부 표시항목 :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제조자, 주소, 연락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제조자, 주소, 연락처 : 주식회사 한국기업,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1호, 02-0000-0000

13. 판매자, 주소, 연락처(조건부 표시항목 : 제조자개발생산방식의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판매자, 주소, 연락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판매자, 주소, 연락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2-0000-0000

14.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조건부 표시항목 : 수입제품에 한함)

-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는 수입제품을 최종 제조한 국가와 상호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이 때 표시는 한글 또는 한글(영문)으로 병행할 수 있으며, 영문의 활자크기는 한글활자의 크기보다 작아야 함
표시 예)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명: 미국(U.S.A), 아메리칸&코리아(American & Korea)

15. 수입자, 주소, 연락처(조건부 표시항목 : 수입제품에 한함)

- 수입자, 주소, 연락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수입자, 주소, 연락처 : 주식회사 한국기업,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1호, 02-0000-0000

16. 어린이보호포장대상 / 비대상 제품의 표시

(조건부 표시항목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제품에 한함)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인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안내문을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이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안내문의 표시는 [그림 2]와 같이 적색테두리(선 굵기 0.5 mm이상), 흰배경 위의 적색 글씨(고딕체류)로 가운데 위치하도록 하며, 이 경우 도안의 모양은 바로 세워진 직사각형 형태여야 하며 활자의 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함

어린이보호포장

[그림]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도안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제품 중 가정용 이외의 목적으로만 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가정용 제품이 아님” 또는 특정 사용처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함

“가정용 제품이 아님”	
“본 제품은 가정용이 아닌 OO에서 사용하는 전문OO 제품입니다.”	
	카센터용
	세척업소용

[그림]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제품의 표시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필수 / 조건부 표시항목)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반응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⑰-① ~ ⑤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주요물질 : 파라핀왁스, 향료(d-리모넨 등) · 보존제 : 에탄올
· 계면활성제 : 알킬벤젠술포산염(음이온계) · 알레르기물질 : 아밀신남알 · 기타물질 : 수산화나트륨

17-1. 주요물질(필수 표시항목)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주요물질(최대함량), 주요물질(주요기능)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최대함량물질이 물인 경우 그 다음으로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을 추가로 기재해야하며, 향료와 같은 두 개 이상의 혼합물로 구성된 경우 향료(대표물질명 등)으로 기재하여야 함
표시 예) 주요물질 : 파라핀왁스, 향료(d-리모넨 등)

17-2. 보존제(조건부 표시항목 : 보존제 기능 물질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보존제로 기재하였던 모든 성분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보존제 : 에탄올
- 존제가 혼합물질일 경우, 혼합물질 중에서 보존제의 역할을 하는 성분만을 표시도안에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보존제 : 보존제(에탄올 등) (x), 보존제 : 에탄올(o)

17-3.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조건부 표시항목 : 알레르기물질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은 알레르기가능물질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알레르기물질 : 아밀산남알 또는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 아밀산남알

<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목록

물질명	CAS No.	물질명	CAS No.
아밀산남알	122-40-7	파네솔	4602-84-0
벤질알코올	100-51-6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80-54-6
신나밀알코올	104-54-1	리날로올	78-70-6
시트랄	5392-40-5	벤질벤조에이트	120-51-4
유제놀	97-53-0	시트로넬롤	106-22-9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107-75-5	헥실산남알	101-86-0
이소유제놀	97-54-1	리모넨	138-86-3 5989-27-5 5989-54-8
아밀신나밀알코올	101-85-9	메칠2-옥티노에이트	111-12-6
벤질살리실레이트	118-58-1	알파-이소메칠이오논	127-51-5
신남알	104-55-2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31906-04-4
쿠마린	91-64-5	참나무이끼추출물 ¹⁾	90028-68-5
제라니올	106-24-1	나무이끼추출물 ¹⁾	90028-67-4
아니스에탄올	105-13-5	-	-
벤질신나메이트	103-41-3	-	-

¹⁾ 아트라놀(CAS No 526-37-4)과 클로로아트라놀(CAS No 57074-21-2)은 참나무이끼추출물과 나무이끼추출물의 구성성분임

17-4. 계면활성제(조건부 표시항목 : 계면활성제 기능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 제품 내 계면활성제의 기능으로 사용된 모든 물질은 “물질명(계열)”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계면활성제 : 알킬벤젠술포산염(음이온계)

* 계면활성제의 계열 : 음이온계, 비이온계, 양쪽성 이온계, 양이온계, 기타 등

- 계면활성제가 혼합물질일 경우, 혼합물질 중에서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하는 성분만을 표시도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 예) 계면활성제 : 계면활성제(아주까리기름, 수소첨가, 에톡실레이트 등) (x),

계면활성제 : 아주까리기름, 수소첨가, 에톡실레이트(o)

17-5. 형광증백제(조건부 표시항목 :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에 한함)

- 제품 내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2,2'-(1,2-에탄디다-4,1-페닐렌)비스벤조옥사조일

17-6. 기타물질(조건부 표시항목 : 국내 관리규제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 등)

- 제품에 아래의 구분에 따른 물질이 사용된 경우 물질명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해당물질이 ⑰-① ~ ④ 중 어느 하나의 구분에서 그 물질의 명칭이 표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¹⁾

2)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¹⁾

3)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4)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5) 문신염료에 사용된 모든 물질²⁾

¹⁾ 유해화학물질 및 중점관리물질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모두 표시하여야 함. 확인 방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매뉴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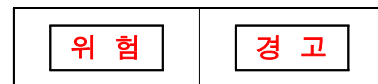
²⁾ 문신용 염료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물질 순서로 표시하며, 1% 이하로 사용된 물질은 순서에 상관없음.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수소이온농도(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그 물질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표시할 수 있음

표시 예) 기타물질 : 수산화나트륨, 이소프로필벤젠

18. 신호어 및 그림문자(조건부 표시항목 :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 다만 산도조절제는 제외)

- 제품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 혼합물 기준 이상으로 사용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혼합물 분류기준에 따른 신호어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호어의 표시는 눈에 띄는 방법으로,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면적이 1 cm²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참고) 신호어란 유해성의 상대적 척도를 제품에 표시하여 제품의 잠재적 유해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것임. 고시에서 사용하는 신호어는 '위험' 및 '경고'이며, '위험'은 '경고'보다 유해성의 척도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적용함



[그림] 신호어의 종류

* 참고) 그림문자란 제품의 유해·위험성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임. 이러한 그림문자는 정사각형 안에 표시되어야 하며, 흰색 배경에 검정색으로 상징을 표기하고 빨간색 테두리를 갖추어야 함



[그림] 그림문자의 종류 및 의미

19. 사용방법(조건부 표시항목: 해당없는 제품 생략 가능)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여는 방법(필요 시 닫는 방법 포함)'에 대한 문구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이 경우, 표시면이 아닌 용기의 외면 덮개 등에 문구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용법을 표시하여야 함. 그 외 제품은 특정 용법이 적용되는 등 소비자의 사전 숙지가 필요한 경우 표시할 수 있음

20. 사용상 주의사항(필수 표시항목)

-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와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일반표시) 문구를 아래의 표에서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함. 다만 중복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로 조합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음.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에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예)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구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세정제, 살균제 ¹⁾	·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마시오 ·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세정제 (염산 또는 황산이 사용된 제품에 한함. 다만, 산도조절제로 사용된 경우 제외)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 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탄올 중 어느 하나의 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에 한함)	· 직접흡입 등 오·남용을 하지 마시오.
자동차용 부동액	· 보관 시에는 부동액임을 알 수 있도록 기존의 용기 또는 부동액 표시가 된 별도의 용기를 사용하고, 밀봉하십시오. · 에틸렌글리콜형의 부동액과 프로필렌글리콜형의 부동액을 섞어 쓰면 어는점 등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혼용하지 마시오.
자동차용 워셔액	· 알코올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내기 순환모드에서 사용하십시오. · 워셔액을 사용 후에는 창문을 1~2분간 내려 환기를 하시오.
인쇄용 잉크·토너	· 제품을 교체·제거할 때 내용물의 누출에 주의하십시오. · 내용물 누출시 분진·미스트·증기의 흡입 또는 피부 접촉에 주의하십시오. · 가정용 진공청소기로 토너를 청소하지 말고, 젖은 천으로 닦아내시오. ²⁾
초 (전용 받침대가 없는 제품에 한함)	· 불에 타지 않는 초 받침대를 사용하십시오.
습기제거제	· 투습막을 찢거나 벗기지 마시오. ³⁾ · 흡습제는 물과 닿으면 발열 반응이 나타나 위험하니, 흡습제를 꺼내지 마시오. · 흡습제나 조해액이 누출되어 닿으면 식물의 생장이나 금속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습기제거제를 불에 대고 건조시키지 마시오.
제품의 용도가 자동차 외부용인 경우	· 자동차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시오.

구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살균제 ¹⁾	·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 · 실내공간에 분사하지 말고 물체 표면에 사용하십시오 ⁴⁾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내용물을 마시거나, 내용물이 눈 또는 피부에 닿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제품의 용도가 칫솔 살균용인 경우	· 제품 사용 후 칫솔을 반드시 행구시오.
제품의 제형이 캡슐형인 경우	· 어린이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품의 제형이 액체형인 경우	· 제품의 내용물을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시오.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제품	· 주변에 불꽃(spark)이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량을 분사한 후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십시오. ·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억지로 벗기지 마시오.
특정조건(전문가용 등)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예외 제품	·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별표 6에 따른 알레르기반응가능 물질 사용 제품	·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강도시험 대상에서 제외된 유리용기 사용 제품	· 용기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시오.
일회성 전량 소모 제품	· 개봉 후 내용물을 즉시 사용하십시오.
공연용 포그액	· 공연 등을 위해 직접 사용 시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주 ¹⁾ 모든 용도의 제품에 적용함

²⁾ 제품의 제형이 분말형인 제품에 한함

³⁾ 투습막이 있는 제품에 한하며, 투습막에 직접 표시할 수 있음

⁴⁾ 제품의 제형이 분사형인 제품에 한함

<표> 제품별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구분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일반 사항	· 사용하기 전에 표시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표시된 사용방법, 표준사용량, 유통기한 등을 지켜 사용하십시오.
인체 노출 관련 사항	·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흡입하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십시오. · 다량 흡입시 위험이 우려되니 사람이나 동물, 공기중에 분사하지 마십시오. · 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사람에게 직접 뿌리거나 분사되는 내용물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 눈보다 높은 곳에서 사용하면 분사액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용도 관련 사항	·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용기를 임의로 바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변색, 탈색이 우려될 경우에는 먼저 눈에 띄지 않는 부위를 정해 소량으로 시험해 본 후 사용하십시오. · 섬유 변색 및 금속표면 부식에 주의하십시오.
화재·폭발 관련 사항	·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화재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내용물 누출 관련 사항	· 넘어진 채로 두면 액이 흘러나올 수 있으니 방치하지 마십시오. · 용기를 떨어뜨리는 등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넘어지거나 기울어진 상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의 용기를 억지로 분리하거나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내용물이 잔류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보관·저장 관련 사항	· 화기 또는 열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사용 후 잔량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21. 응급처치(필수 표시항목)

- 응급처치 문구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필수문구(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와 권장문구(일반표시)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함. 다만 중복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로 조합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음

예)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표> 제품별 필수 응급처치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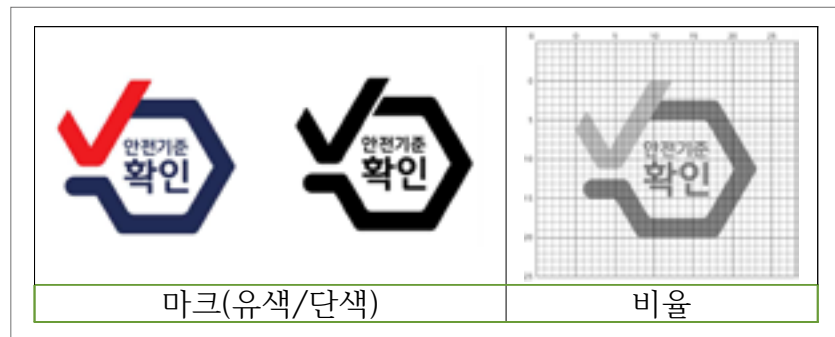
구분	권장 응급처치 문구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십시오.
별표 6에 따른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사용 제품	·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표> 제품별 권장 응급처치 문구

구분	권장 응급처치 문구
일반 사항	·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십시오. ·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십시오.
경구노출 사항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경피·안구노출 사항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시오. ·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흡입노출 사항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22. 안전기준확인 마크

- 안전기준확인 마크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함. 이 경우, 마크의 색상은 유색 또는 단색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마크의 크기는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함. 다만,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림] 안전기준확인 마크 도안

23.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 신고번호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신고번호를, 승인번호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승인번호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예) 신고번호 : AA19-01-0001, AA19-01-0001, AA19-01-0001

24. 기타(그림기호 표시)

- 그림기호는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의 문구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함
 - ▶ 그림기호를 표시할 때는 아래와 같이 "©A.I.S.E."를 표시하여야 하며, 관련 웹주소(www.cleanright.eu)는 같이 표시할 수 있음
 - ▶ 그림기호는 제품 겉면 또는 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브랜드나 상표 등의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 그림기호의 색상은 검정색 대신 다른 어두운 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X 표시의 경우 항상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그림기호의 크기는 1cm² 이상이어야 함
 - ▶ 그림기호는 아래 표에서 정한 문구로만 연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하고 있지 않는 다른 어느 문구와 혼용하여 표시할 수 없음
 -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그림기호와 연계된 문구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그림] 안전기준확인 마크 도안

<표> 표시사항 문구별 그림기호 도안

그림기호	표시사항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사용상 주의사항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응급처치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십시오. · 눈에 들어갔을 때는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응급처치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장갑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응급처치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 후 잔량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3. 표시사항 표시 위치

■ 표시면

- 표시사항은 제품의 “표시면”(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을 제외하고 글자나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수 있는 표면)에 표시하여야 함. 표시면 중에서도 제품의 광고 또는 디자인 등 가장 먼저 보이는 면을 주표시면이라고 함



[그림] 안전기준확인 마크 도안

■ 제품 겉면에 표시

- 표시사항은 제품의 겉면에 우선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용기가 구성품으로 있는 경우에도 그 용기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제품을 둘러싼 포장에 있지만 제품 겉면의 표시가 보이는 경우에는 포장에 추가로 표시할 필요는 없음

표시 위치	예시
제품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	
별도의 전용용기가 있는 경우, 내용물이 담긴 용기와 전용용기의 표시면 모두 표시	
포장이 있지만 제품 겉면의 표시가 보이는 경우, 제품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	

[그림] 제품의 형태별 제품 겉면의 표시 위치

■ 제품 겉면 이외의 표시

- 표시사항은 제품의 겉면에 우선으로 표시하여야 하지만,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가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에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고시에 따른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 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제품¹⁾의 경우, 표시를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하거나, 표시가 기재된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등을 사용하여 표시면 이외에 표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음

주 ¹⁾ · 제품이 고형으로써 그 자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훼손될 경우 제품의 상품성에 영향을 주는 수입제품
- 제품 사용 시 제품 겉면에 부착된 라벨의 연소 등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제품 : 초 등의 제품(전용대가 있는 제품 포함)
-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제조되는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등의 제품
- 제품 겉면에 제2조제8호(표시면)에 따른 표시면이 없는 제품

→ 제2조제8호 :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시 위치	예시
제품 겉면이 포장 ²⁾ 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 제품 겉면과 포장의 표시면 모두 표시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경우, 포장에 표시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경우, 첨부문서에 표시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경우, 표시가 기재된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부착	

주 ²⁾ 포장이란 제품 겉면을 보호하거나 둘러싸는 것으로서 운송·보관 등의 취급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인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판매 또는 유통 시 보여지는 포장을 말함

[그림] 제품의 형태별 제품 겉면의 표시 위치

4. 표시면적에 따른 표시사례

■ 표시면의 면적이 100 cm² 초과인 경우

-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등의 표시면이 100 c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면에 기재하여야 함. 다만,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아 포장의 표시면에도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사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림] 표시면적 100 cm² 초과 생활화학제품 표시 사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 AA00-00-0000 / •품목 : 세정제, 살균제 / •제품명 : ○○○세정살균제	
•용도 : 세정제[일반용(욕실용, 렌지후드용, 오븐용)], 살균제[일반용(배수관용, 일반물체용)] •제형 : 분무기형 / •용량 : 150mL / •제조 연월 : 제품 하단 별도표시 / •액성 : 원액(약산성)	
•제조자, 주소, 연락처 : 한국기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02-0000-0000	
•사용 물질 주요물질 : 정제수, 향료(디옥틸아디페이트 등), 차아염소산 / 알레르기물질: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시트로넬롤, 유제놀, 제라니올, 리모넨, 리날로올 / 계면활성제: 아주까리기름,수소첨가,에톡실레이티드(비이온계)	
•사용방법 : ① 사용 전 용기를 충분히 흔들어 줍니다. / ② 제품 사용 전, 굵은 오염 물질은 간단한 제거 후 이용해 줍니다. / ③ 본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좀더 깨끗한 세정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 ①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마시오. / ②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 ③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 / ④ 실내공간에 분사하지 말고 물체 표면에 사용하십시오. / 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⑥ 내용물을 마시거나, 내용물이 눈 또는 피부에 닿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⑦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 ⑧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응급처치 : ①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 ②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 ③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그림] 표시면적 100 cm² 초과 생활화학제품 표시 사례(다기능 제품)

■ 표시면의 면적이 100 cm² 이하인 경우

-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등의 표시면이 100 cm²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최소 정보를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 또는 제품 겉면 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제품 겉면에 표시된 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 포장에 모두 표시하여야 함

표시면의 면적이 50 cm² ~100 cm²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표시면> 어린이보호포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AA00-00-0000 품목: 세정제, 살균제 제품명: ○○○ 세정살균제 주요물질: 정제수, 향료(디옥틸아디페이트 등), 차아염소산 제조자·연락처: 한국기업, 02-0000-0000
--	--

표시면의 면적이 50 cm² 미만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품목: **세정제, 살균제**
 제품명: ○○○ 세정살균제
 신고번호: **AA00-00-0000**

[그림] 표시면적 100 cm² 이하 생활화학제품 표시 도안

5. 기타 표시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 표시사항 활자의 크기 및 스타일

- 표시사항 활자의 크기는 고시에 따라 8포인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표시면의 면적이 200cm² 미만인 경우 6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활자의 종류(글자체)는 어린이보호포장과 신호어의 표시를 제외하고 고시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흘림체 등 기울어진 활자보다는 신명조, 고딕체류 등 명확하고 글자의 장식이나 기울임이 없는 글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표시사항 활자의 크기 및 스타일

- 눈에 띄는 표시는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말하며, △품목, △신고번호, △신호어, △사용상주의사항(필수문구), △응급처치(필수문구), △사용방법(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여는 방법)은 눈에 띄는 표시를 하여야 함. 눈에 띄는 표시 대상 외 표시항목 및 내용은 작성자 임의대로 눈에 띄는 표시를 할 수 없음

■ 표시광고 제한 문구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고를 포함한 제품의 라벨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한”, “인체·동물친화적”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

■ 제품 신고정보와 표시정보의 동일성

- 표시사항은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기재·제출된 정보와 동일하여야 함. 향후 제품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변경신고를 한 후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야 함

■ 기타

- 화학물질명을 포함하여 표시사항에 기재되는 모든 정보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외국어를 표시하게 되는 경우 “한글(English)”와 같이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여서는 안됨
- 제품에 함유된 전성분 등 필수 표시 대상 물질 외 성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표시도안에는 표기하지 않고 제품의 광고면에 추가로 표시하면 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

발행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행일	2022년 11월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전화번호	1800-0490
홈페이지	http://www.keiti.re.kr https://chemp.me.go.kr